

동행·매력
특별시 서울

서울시보

시보는 공문서의 효력을 갖습니다.

www.seoul.go.kr

제3989호
2024. 7. 4.(목)



목 차

◆ 자치법규 등

[조 례]

제9291호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 폐지조례 4

[규 칙]

제4646호 서울특별시 공공주택 건설 및 공급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6

[입법예고]

제2024-2006호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8

제2024-2007호 서울특별시 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22

◆ 고 시

제2024-320호 삼익맨션아파트 재건축 정비구역 해제기한 연장 고시 26

제2024-321호 서울역 일대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 고시 27

제2024-322호 홍제재정비촉진지구 변경 지정,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39

제2024-323호 봉래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제3지구 정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51

제2024-325호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부분실효) 및 지형도면 고시 69

제2024-326호 2024년 제1회 서울특별시 추가경정예산 71

제2024-327호 서울특별시무형유산 명예보유자 인정 고시 72

제2024-328호 보행자우선도로 지정 고시 73

제2024-330호 서울특별시 개발제한구역 외의 지목별 평균 개별공시지가 고시 75

제2024-335호 영등포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76

제2024-336호 도시계획시설(전기공급설비)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108

제2024-337호 신정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신정4재정비촉진구역)(경미한)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110

제2024-338호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135

제2024-339호 세운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경미한)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141

◆ 공 고

제2024-1668호	「2024년 서울특별시 봉사상」 수상후보자 추천공고	151
제2024-1916호	과학관 변경등록 공고(아쿠아플라넷63)	164
제2024-1924호	차량운행제한위반과태료 부과고지 및 독촉고지 공시송달 공고	165
제2024-1932호	차량운행제한 위반 과태료 부과고지 공시송달 공고	167
제2024-1933호	회계직인 등록 및 폐기 공고	169
제2024-1936호	정보통신공사업 신규 등록 공고	171
제2024-1939호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정보 현행화 요청	172
제2024-1940호	서울특별시무형유산 전승교육사 인정 계획 예고	173
제2024-1942호	회계직인 등록 및 폐기 공고	174
제2024-1943호	과학관 등록말소 공고(아쿠아플라넷63)	176
제2024-1944호	회계직인 폐기 공고	177
제2024-1947호	수도요금 체납에 따른 재산압류예고 공시송달 공고	178
제2024-1949호	종합공사시공업 행정처분(등록말소) 공시송달 공고	179
제2024-1979호	회계직인 등록 및 폐기 공고	180
제2024-1980호	회계관계공무원 직인 폐기 및 등록 공고	182

◆ 서울특별시교육청

[공 고]

제2024-245호	서울특별시교육청 금고지정 공고	184
------------	------------------	-----

◆ 구 고 시

제2024-43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변 경인가 고시(중구)	185
제2024-92호	도시계획시설(철도)사업 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성북구)	187
제2024-53호	도시관리계획(가양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정정고시(강서구)	198
제2024-134호	청계산근린공원2 조성사업(토지보상 및 조성) 실시계획(변경) 고시 (서초구)	201

◆ 구 공 고

제2024-1276호	도시계획시설(불광근린공원)사업 실시계획인가를 위한 열람공고 (은평구)	203
-------------	---	-----

◆ 사업소고시

제2024-166호	하천점용허가 고시(미래한강본부)	205
제2024-167호	하천점용허가 고시(미래한강본부)	205
제2024-173호	하천점용허가 고시(미래한강본부)	206
제2024-174호	하천점용허가 고시(미래한강본부)	206
제2024-175호	하천점용허가 고시(미래한강본부)	207
제2024-176호	하천점용허가 고시(미래한강본부)	207
제2024-177호	하천점용허가 고시(미래한강본부)	208
제2024-178호	하천점용허가 고시(미래한강본부)	208
제2024-179호	하천점용허가 고시(미래한강본부)	209
제2024-180호	하천점용허가 고시(미래한강본부)	209

◆ 사업소공고

제2024-171호	자연환경보전법 위반 과태료 부과 고지서 공시송달 공고 (미래한강본부)	210
------------	---	-----

◆ 기 타

제2024-240호	하천점용(변경)허가 및 실시설계(변경) 인가 고시(한강유역환경청)	211
제2024-241호	하천점용허가 고시(한강유역환경청)	212

자치법규 등

[조 례]

◆ 서울특별시조례 제9291호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 폐지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재의결된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 폐지조례를 「지방자치법」 제32조제6항 후단의 규정에 따라 공포한다.

서울특별시회의장 최호정 인

2024년 7월 4일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를 폐지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폐지이유와 주요내용 >

1. 제안이유

- 최근 일선 교육 현장에서 교권 추락의 주된 원인으로 학생인권조례가 지목되는 등 현행 학생인권조례의 폐해와 문제점에 대한 비판이 전국적으로 쏟아지고 있음.
- 또한, 현행 학생인권조례는 성적 지향·성별 정체성 등 사회적으로 합의되지 않은 항목들을 차별받지 않을 권리에 포함하고 있고, 학생들이 특정 권리를 남용하게 될 경우 견제 장치도 미비하여 학생의 권리와 책임에 대한 그릇된 인식을 조성한다는 비판 여론을 반영하여 주민조례 청구로 폐지조례안이 발의(2023.3.13.)된 바 있음.
- 그러나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해당 안건 처리가 지연되며 갈등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임.
- 이에 교육부는 지역 여건과 상황에 맞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학교생활과 관련한 학생, 교원, 보호자의 권리와 책임을 균형 있게 담은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 예시안’을 제시(2023.11.29.)하였고, 서울시의회에서도 이를 반영한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안」이 발의되어 교육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현재 본회의에 부의되어 있음.
- 해당 조례안은 서울특별시교육청이 관할하는 학교구성원이 학교생활을 함에 있어 각 주체의 권리와 권한을 보장하고, 의무와 책임을 명확히 하며, 학교구성원 간에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의 중재 및 해소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현행 학생인권 조례가 갖고 있는 문제점 등을 보완하고,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안」과의 중복, 충돌되는 문제점 등을 개선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를 폐지함.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 다. 기타: 해당사항 없음

[규 칙]

◆ 서울특별시규칙 제4646호

**서울특별시 공공주택 건설 및 공급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서울특별시 공공주택 건설 및 공급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4년 7월 4일

서울특별시 공공주택 건설 및 공급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4”를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4”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장기전세주택을 신혼부부(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혼인신고를 한 날부터 7년 이내인 사람) 또는 예비신혼부부(혼인예정자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부터 6개월 이내 혼인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에게 공급하는 경우 별도의 입주자 자격 및 선정기준을 정할 수 있다.

제18조제3호 중 “시장 등 공공주택사업자”를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시장 등 공공주택사업자(이하 “시장 등 공공주택사업자”라 한다)”로 한다.

별표 1을 삭제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

1. 제안이유

신혼부부 및 예비신혼부부에게 장기전세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입주자자격 기준을 별도로 정하여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주거안정 도모 및 저출생 문제를 극복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한 장기전세주택 공급 시 별도의 입주자자격 및 입주자 선정기준 마련 근거 신설(제3조제2항)

나. ‘매입형 장기전세주택 입주자자격 및 선정기준’ 인 별표 1 삭제

[입법예고]**◆ 서울특별시공고 제2024-2006호****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년 7월 4일
서울특별시장

1. 개정이유

대학 대내외 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하여 서울시립대학교의 조직을 개편하고, 기획조정실 내 사무분장 조정 및 서울기록원 개방형 직위 변경사항 반영을 위하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대학 경쟁력 제고 및 혁신역량 강화를 위한 서울시립대학교 개편

- － ‘미래혁신원(직속기관)’ 폐지 및 대학혁신·성과관리 기능을 ‘기획처(대학본부)’로 이관하여 기획조정 역할 강화
- － ‘학생처(대학본부)’ 개편을 통한 진로·취업역량 강화
- － 국제화 역량 강화를 위해 ‘국제교육원(부속기관)’ 폐지 및 ‘국제처(대학본부)’ 신설
- － 창업역량 강화를 위해 ‘창업지원단(부속기관)’ 내 부단장(교수) 신설
- － ‘교육혁신원(부속기관)’ 신설을 통한 대학 교육혁신 및 교육의 질 향상
- － 대학 사회공헌활동의 종합적 추진을 위해 ‘글로벌서울사회공헌단(부속기관)’ 신설

나. 기획조정실 내 사무분장 조정

- － 기획담당관 소관 도시경쟁력 평가 관련 사무 분장 조정
(→창의행정담당관)
- － 창의행정담당관 소관 사무 명칭 변경(서울창의상→창의행정상)

다. 서울기록원 개방형 직위 관련 변경사항 반영

- － 보존서비스과장 개방형 직위 해제

3. 의견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7월 24일까지 아래와 같이 의견서를 서울특별시장(참조: 조직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조직담당관(전화: 02-2133-6729)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의견서에 기재할 사항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2) 의견서 보내실 곳

－ 우 편 :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특별시 조직담당관

－ 이메일 : syg1108@seoul.go.kr－ 온라인 :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

※ 이 입법예고문 및 규칙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서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규칙 제 호

이 규칙의 개정안은 확정된 입법안이 아니므로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결과 등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5항제20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21호를 제20호로 하며, 같은 조 제8항제4호 중 “서울창의상”을 “창의행정상”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도시경쟁력 평가에 관한 사항

제10조제9항제10호 중 “대한 심사”를 “관한 사항”으로 한다.

제27조를 삭제하고, 제27조의2를 제27조로 한다.

제27조(중전의 제27조의2) 제2항제1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제1호부터 제3호까지로 한다.

제28조제1항 중 “교무처·입학처·학생처·기획처·연구처”를 “교무처·입학처·학생처·기획처·연구처·국제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연구처장”을 “연구처장·국제처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교무처·입학처·학생처·기획처 및 연구처”를 “교무처·입학처·학생처·기획처·연구처 및 국제처”로 한다.

제30조제2항제5호 및 제9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학생병무에 관한 사항

9. 학생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심리상담 지원

10. 비교과교육에 관한 사항

제31조제1항 중 “기획과를 두고, 기획과장”을 “기획과 및 대외협력과를 두고, 기획과장 및 대외협력과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대학혁신 관련 사업 총괄

5. 대학평가, 혁신전략 수립 및 성과관리

6. 대학통계 및 정보공시

③ 대외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대학홍보 종합계획 수립, 협약체결 등 대외협력지원

2. 재정지원사업 총괄

3. 발전기금 모금 및 관리, 강촌수련원 운영

제31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1조의3(국제처) ① 국제처에 국제교류과를 두고, 국제교류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② 국제교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제교류 협정 체결 및 국제교류지원
2. 외국 학생 선발 및 입학전형관리
3. 해외 교환유학생 선발 및 지원관리
4. 외국인 입시설명회 개최, 기획 및 홍보
5. 외국 학생 및 교원 지원 관리
6. 외국인 대상 한국어 교육 프로그램 개발·운영
7. 해외대학생 초청 프로그램 개발·운영

제37조를 삭제한다.

제38조의3제1항 중 “창업교육센터 및 창업보육센터를 두고, 센터장”을 “창업지원단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부단장을 두고, 부단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창업활성화를 위한 조사·연구
7. 기타 정부지원사업 기획 및 발굴 지원 등

제38조의4부터 제38조의10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8조의4(교육혁신원) 교육혁신원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교육혁신 관련 전략 및 연구 개발 지원
2. 교양 교과목 교육과정 관련 총괄 운영, 개편 및 학사행정
3. 외국어 교과목 개발 운영 및 관련 비교과 프로그램 운영
4.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한 교수·학습 역량 강화 및 관련 연구개발
5. 교육 및 교수학습 관련 소통 및 홍보 활동

제38조의5(글로벌서울사회공헌단) ① 글로벌서울사회공헌단에 글로벌서울사회공헌단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부단장을 두고 부단장은 교수·부교수 또는 조교수로 겸보한다.

② 글로벌서울사회공헌단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학내 사회공헌사업 총괄 추진
2. 국내·해외 사회공헌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3. 사회공헌 소양 교육 개발 및 운영
4. 사회공헌 단체 및 활동자 연계

제38조의6(박물관) 박물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고고학·미술사학·역사학 및 인류학 분야에 속하는 국가유산에 관련된 자료의 수집 및 발

굴에 관한 사항

2. 수집 및 발굴된 자료의 보존·조사·연구·전시·교육 및 교류에 관한 사무 등

제38조의7(대학보건소) 대학보건소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학생 및 교직원의 건강관리, 건강상담, 집단검진 및 진료에 관한 사항
2. 기타 학생 및 교직원 건강증진 활동에 관한 사항 등

제38조의8(체육관) 체육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체육시설 이용 및 프로그램 운영 수칙 등의 제·개정
2. 체육시설 및 장비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등
3. 체육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등

제38조의9(출판부) 출판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대학의 학술연구 문헌 및 간행물 출판
2. 대학과 연구소 논문집 발간 등

제38조의10(대학언론사) 대학언론사 주간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대학신문사 운영 및 관리
2. 대학방송국 운영 및 관리
3. 영자신문사 운영 및 관리

제139조제1항 단서 중 “기록정책과장 및 보존서비스과장” 을 “기록정책과장” 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24년 8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0조(기획조정실) ① ~ ④ (생략)	제10조(기획조정실)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기획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⑤ ----- -----.
1. ~ 19. (생략)	1. ~ 19. (현행과 같음)
<u>20. 도시경쟁력 평가에 관한 사항</u>	<u><삭 제></u>
<u>21. (생략)</u>	<u>20. (현행 제21호와 같음)</u>
⑥·⑦ (생략)	⑥·⑦ (현행과 같음)
⑧ 창의행정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⑧ ----- -----.
1. ~ 3. (생략)	1. ~ 3. (현행과 같음)
4. <u>서울창의상 운영</u>	4. <u>창의행정상 --</u>
5. ~ 8. (생략)	5. ~ 8. (현행과 같음)
<u><신 설></u>	<u>9. 도시경쟁력 평가에 관한 사항</u>
⑨ 법무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⑨ ----- -----.
1. ~ 9. (생략)	1. ~ 9. (현행과 같음)
10. 자치구 조례에 대한 재의요구 및 제소에 <u>대한 심사</u>	10. ----- ----- <u>관한 사항</u>
11. (생략)	11. (현행과 같음)
⑩ ~ ⑭ (생략)	⑩ ~ ⑭ (현행과 같음)
<u>제27조(미래혁신원) ① 미래혁신원장은 교수 또는 부교수로 겸보한다.</u>	<u><삭 제></u>

현행	개정안
<u>② 미래혁신원에 대학혁신과를 두고 대학혁신과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u> <u>③ 대학혁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u> <u>1. 미래혁신전략 수립 및 성과관리</u> <u>2. 산관학 혁신 지원</u> <u>3. 대학종합평가 및 학문분야 평가</u> <u>4. 대학 통계 및 정보 공시</u> <u>5. 대학혁신 관련 사업 총괄</u> <u>④ 미래혁신원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부원장을 둘 수 있으며, 부원장은 교수 또는 부교수로 겸보한다.</u> <u>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총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교수를 미래혁신원 부원장에 겸보할 수 있다.</u> 제27조의2(인권센터) ① (생략) <u>② 인권센터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u> <u>1.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심리상담 지원</u> <u>2. ~ 4. (생략)</u>	제27조(인권센터) ① (현행과 같음) ② ----- -----. <삭제> 1. ~ 3. (현행 제2호부터 제4호까지와 같음)

현행	개정안
제28조(하부조직) ① 시립대학교에 <u>교무처·입학처·학생처·기획처·연구처</u> 및 행정처를 둔다.	제28조(하부조직) ① ----- <u>교무처·입학처·학생처·기획처·연구처·국제처</u> -----.
② 교무처장·입학처장·학생처장·기획처장 및 <u>연구처장</u> 은 교수 또는 부교수로 겸보하고, 행정처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보한다.	② ----- ----- <u>연구처장·국제처장</u> ----- -----.
③ <u>교무처·입학처·학생처·기획처 및 연구처</u> 에 처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부처장을 둘 수 있으며, 부처장은 교수 또는 부교수로 겸보한다. 다만, 총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교수도 겸보할 수 있다.	③ <u>교무처·입학처·학생처·기획처·연구처 및 국제처</u> ----- ----- ----- ---, ----- ----- -----.
제30조(학생처) ① (생략)	제30조(학생처) ① (현행과 같음)
② 학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② ----- --.
1. ~ 4. (생략)	1. ~ 4. (현행과 같음)
5. <u>학생병사 동원 및 지원</u>	5. <u>학생병무에 관한 사항</u>
6. ~ 8. (생략)	6. ~ 8. (현행과 같음)
9. <u>학생의 사회공헌활동에 관한 사항</u>	9. <u>학생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심리상담 지원</u>
<신설>	10. <u>비교과교육에 관한 사항</u>
제31조(기획처) ① 기획처에 <u>기획과</u> 를 두고, <u>기획과장</u> 은 지방서기관	제31조(기획처) ① ----- <u>기획과</u> 및 <u>대외협력과</u> 를 두고, <u>기획과장</u>

현행	개정안
또는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및 대외협력과장-----.
② 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② ----- --.
1. ~ 3. (생략)	1. ~ 3. (현행과 같음)
4. 대학홍보 기본계획 수립	4. 대학혁신 관련 사업 총괄
5. 발전기금 등 대외협력지원	5. 대학평가, 혁신전략 수립 및 성과관리
<신설>	6. 대학통계 및 정보공시
<신설>	③ 대외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대학홍보 종합계획 수립, 협약 체결 등 대외협력지원
	2. 재정지원사업 총괄
	3. 발전기금 모금 및 관리, 강촌수련원 운영
<신설>	제31조의3(국제처) ① 국제처에 국제교류과를 두고, 국제교류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② 국제교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제교류 협정 체결 및 국제교류지원
	2. 외국 학생 선발 및 입학전형관리
	3. 해외 교환유학생 선발 및 지원

현행	개정안
제37조(국제교육원) ① 국제교육원에 국제교류과를 두고, 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하며, 국제교육원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외국인 학생지원센터장·한국학교육센터장·국제교류센터장 및 공무원교육센터장을 두고, 센터장은 교수·부교수 또는 조교수로 겸보한다. ② 국제교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제교류 협정 체결 및 국제교류 지원 2. 해외 교환유학생 선발 및 지원 관리 3. 외국인 대상 한국학 교육 프로그램 개발·운영 4. 해외대학생 초청 프로그램 개발	<u>관리</u> 4. <u>외국인 입시설명회 개최, 기획 및 홍보</u> 5. <u>외국 학생 및 교원 지원 관리</u> 6. <u>외국인 대상 한국어 교육 프로그램 개발·운영</u> 7. <u>해외대학생 초청 프로그램 개발·운영</u> <u><삭 제></u>

현행	개정안
<u>운영</u> 5. <u>외국 학생 및 교원 지원 관리</u> 6. <u>공무원 교육 프로그램 개발·운영</u> 제38조의3(창업지원단) ① 창업지원단에 <u>창업교육센터 및 창업보육센터</u>를 두고, 센터장은 교수·부교수 또는 조교수로 겸보한다. ② 창업지원단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5. (생략) 6. <u>창업교육센터 및 창업보육센터 운영 등</u> <u><신설></u> <u><신설></u>	제38조의3(창업지원단) ① ----- -- <u>창업지원단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부단장을 두고, 부단장-----</u> -----. ② ----- -----. 1. ~ 5. (현행과 같음) 6. <u>창업활성화를 위한 조사·연구</u> 7. <u>기타 정부지원사업 기획 및 발굴 지원 등</u> 제38조의4(교육혁신원) <u>교육혁신원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u> 1. <u>교육혁신 관련 전략 및 연구 개발 지원</u> 2. <u>교양 교과목 교육과정 관련 총괄 운영, 개편 및 학사행정</u> 3. <u>외국어 교과목 개발·운영 및 관련 비교과 프로그램 운영</u> 4. <u>교육의 질 향상을 위한 교수·학습 역량 강화 및 관련 연구개발</u>

현행	개정안
<신 설>	5. 교육 및 교수학습 관련 소통 및 홍보 활동 제38조의5(글로벌서울사회공헌단) ① 글로벌서울사회공헌단에 글로벌서울사회공헌단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부단장을 두고 부단장은 교수·부교수 또는 조교수로 겸보한다. ② 글로벌서울사회공헌단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학내 사회공헌사업 총괄 추진 2. 국내·해외 사회공헌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3. 사회공헌 소양 교육 개발 및 운영 4. 사회공헌 단체 및 활동자 연계
<신 설>	제38조의6(박물관) 박물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고고학·미술사학·역사학 및 인류학 분야에 속하는 국가유산에 관련된 자료의 수집 및 발굴에 관한 사항 2. 수집 및 발굴된 자료의 보존·조사·연구·전시·교육 및 교류에 관한 사무 등

현행	개정안
<u><신 설></u>	제38조의7(대학보건소) 대학보건소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학생 및 교직원의 건강관리, 건강상담, 집단검진 및 진료에 관한 사항 2. 기타 학생 및 교직원 건강증진 활동에 관한 사항 등
<u><신 설></u>	제38조의8(체육관) 체육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체육시설 이용 및 프로그램 운영 수칙 등의 제·개정 2. 체육시설 및 장비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등 3. 체육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등
<u><신 설></u>	제38조의9(출판부) 출판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대학의 학술연구 문헌 및 간행물 출판 2. 대학과 연구소 논문집 발간 등
<u><신 설></u>	제38조의10(대학언론사) 대학언론사주간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대학신문사 운영 및 관리 2. 대학방송국 운영 및 관리 3. 영자신문사 운영 및 관리

현행	개정안
제139조(하부조직) ① 서울기록원에 기록정책과, 보존서비스과, 운영지원과를 두고, 기록정책과장·보존서비스과장은 지방기록연구관으로, 운영지원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다만, <u>기록정책과장 및 보존서비스과장은 지방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u>	제139조(하부조직) ① ----- ----- ----- ----- -----, ----- <u>기록정책과장</u> ----- -----.
② ~ ④ (생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4-2007호

서울특별시 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년 7월 4일
서울특별시

1. 개정이유

정원 관리기관별 신규 행정수요 대응을 위해 총정원 변동없이 직렬·직급 간 정원을 조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효율적인 정원 운용을 위한 정원의 관리기관별 조정 및 직급·직렬 조정

- (본 청) 6급 △5 (공업 △3, 행정·시설 △1, 녹지·시설 △1), 7급 △3 (간호 △1, 행정·시설 △2)
- (사업소) 6급 +4 (공업 +3, 행정·시설 +1, 녹지·시설 +1, 간호·보건 △1), 7급 +3 (간호 +1, 행정·시설 +2), 8급 +1 (사회복지 +1)

3. 의견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7월 24일까지 아래와 같이 의견서를 서울특별시(참조 : 조직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조직담당관(전화: 02-2133-6729)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의견서에 기재할 사항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2) 의견서 보내실 곳

- 우 편 :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특별시 조직담당관
- 이메일 : syg1108@seoul.go.kr
- 온라인 :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

※ 이 입법예고문 및 규칙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규칙 제 호

이 규칙의 개정안은 확정된 입법안이 아니므로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결과에 따라 내용이 변경
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서울특별시 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총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총 계	11,730	4,754	429	1,146	5,174	227
-----	--------	-------	-----	-------	-------	-----

같은 표 일반직 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일반직 계	10,700	4,700	420	368	4,987	225
-------	--------	-------	-----	-----	-------	-----

같은 표 6급 소계란, 공업란, 행정또는시설란, 녹지또는시설란, 간호또는보건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6급 소계	3,729	1,953	176	110	1,391	99
-------	-------	-------	-----	-----	-------	----

공업	353	105	6	5	235	2
----	-----	-----	---	---	-----	---

행정또는시설	48	45			3	
--------	----	----	--	--	---	--

녹지또는시설	2				2	
--------	---	--	--	--	---	--

간호또는보건	2	1			1	
--------	---	---	--	--	---	--

같은 표 7급 소계란, 간호란, 행정또는시설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7급 소계	3,267	1,299	123	131	1,657	57
간호	141	12		3	126	
행정또는시설	38	32			4	2

같은 표 8급 소계란, 사회복지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8급 소계	1,068	125	38	56	848	1
사회복지	10				10	

같은 표 아래 중 “7월 1일부터” 를 “8월 19일부터” 로 하고, “1,301” 을 “1,298” 로 하며, “33” 을 “31” 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24년 8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별표 1] 소방공무원과 경찰공무원을 제외한 공무원 직급별·직렬별 정원표(제2조제1항 관련)							[별표 1] 소방공무원과 경찰공무원을 제외한 공무원 직급별·직렬별 정원표(제2조제1항 관련)						
구분	총계	본청	의회사무처	직속기관	사업소	합의제행정기관	구분	총계	본청	의회사무처	직속기관	사업소	합의제행정기관
총계	11,730	4,762	429	1,146	5,166	227	총계	11,730	4,754	429	1,146	5,174	227
(생략)							(현행과 같음)						
일반직 계	10,700	4,708	420	368	4,979	225	일반직 계	10,700	4,700	420	368	4,987	225
(생략)							(현행과 같음)						
6급 소계	3,730	1,958	176	110	1,387	99	6급 소계	3,729	1,953	176	110	1,391	99
(생략)							(현행과 같음)						
공업	353	108	6	5	232	2	공업	353	105	6	5	235	2
(생략)							(현행과 같음)						
행정또는시설	48	46			2		행정또는시설	48	45			3	
(생략)							(현행과 같음)						
녹지또는시설	2	1			1		녹지또는시설	2				2	
(생략)							(현행과 같음)						
간호또는보건	3	1			2		간호또는보건	2	1			1	
(생략)							(현행과 같음)						
7급 소계	3,267	1,302	123	131	1,654	57	7급 소계	3,267	1,299	123	131	1,657	57
(생략)							(현행과 같음)						
간호	141	13		3	125		간호	141	12		3	126	
(생략)							(현행과 같음)						
행정또는시설	38	34			2	2	행정또는시설	38	32			4	2
(생략)							(현행과 같음)						
8급 소계	1,067	125	38	56	847	1	8급 소계	1,068	125	38	56	848	1
(생략)							(현행과 같음)						
사회복지	9				9		사회복지	10				10	
(생략)							(현행과 같음)						
※ 2024년 7월 1일부터 2024년 10월 12일까지 4급 소계 총계란은 270으로 하고 본청란은 165로 하며, 4급 기술서기관 총계란은 66으로 하고 본청란은 26으로 하며, 7급 소계 총계란은 3,266으로 하고 본청란은 1,301로 하며 7급 행정또는시설 총계란은 37로 하고 본청란은 33으로 한다.							※ 2024년 8월 19일부터 2024년 10월 12일까지 4급 소계 총계란은 270으로 하고 본청란은 165로 하며, 4급 기술서기관 총계란은 66으로 하고 본청란은 26으로 하며, 7급 소계 총계란은 3,266으로 하고 본청란은 1,298로 하며 7급 행정또는시설 총계란은 37로 하고 본청란은 31으로 한다.						

고 시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4-320호

삼익맨손아파트 재건축 정비구역 해제기한 연장 고시

강동구 명일동 270번지 일대 삼익맨손아파트 재건축 정비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0조제6항 규정에 따라 정비구역의 해제기한을 연장하고, 같은 조 제7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7월 4일
서울특별시장

1. 정비구역 해제기한 연장

가. 정비구역 현황

구역명	위 치	구역면적(㎡)	추진단계	비고 (최초결정고시)
삼익맨손아파트 재건축 정비구역	강동구 명일동 270번지 일대	49,502	조합설립인가 (인가일: 2021.7.12.)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0-62호 2020.2.13.

나. 해제기한 연장 : 2026.7.12.까지(2년)

2. 정비구역 해제기한 연장 사유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0조제6항제1호에 따라 정비구역 해제기한 연장

3. 관련 세부내용은 서울특별시 공동주택지원과(☎02-2133-7147) 및 강동구 재건축재개발과(☎02-3425-5984)에 관련도서를 비치하여 열람하고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4-321호

서울역 일대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19-361호(2019.11.07.) 「서울역 일대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 고시」로 고시된 「서울역 일대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대하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변경고시합니다.

2024년 7월 4일
서울특별시

①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개요

개요 및 범위	구분	사 업 명	사업유형	사업면적	총사업비 (마중물예산)	사업기간 (마중물사업)
	기정	서울역 일대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경제기반형	1,812,969㎡	499억원	2015~2020
			근린일반형	142,364㎡	100억원	2015~2020
	변경	서울역 일대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경제기반형	동일	477.0억원	2015~2022
			근린일반형	동일	98.6억원	2015~2022
	사업위치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405(서울역) 일대			
사업시행자 및 참여주체	서울시, 중구, 용산구, 연계부처, 도시재생지원센터, 주민 등					
사업 필요성	서울특별시고시 제2019호-361호(2019.11.07.)로 활성화계획 변경하여 사업을 진행해 왔으나, 2022년 12월까지 마중물사업 연장, 사업 수행과정에서 가감, 도시재생기반시설(공동이용시설) 조성 불가 사유로 기존용도 변경 및 폐지 등 환경 변화					
사업내용 및 효과	「2019 서울역 일대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2019.11.07.)에 따라 도시재생사업 추진 및 완료하였으며, 사업 수행과정에서 가감된 사업비 현행화, 도시재생기반시설(공동이용시설) 폐지 등을 포함하여 활성화계획을 변경하기 위해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					
재원조달방안 (계획)	상세 ⑤ 참조					
국가지원항목 및 필요성	상세 ⑥ 참조					

② 계획의 목표(변경없음)

비전	역사와 미래가 공존하는 「서울재생 1번지」
목표	유라시아 철도 시대 국가중앙역으로서 국가경제를 견인하는 재생특별지역으로 육성

③ 도시재생사업의 계획

가. 경제기반형 도시재생사업의 계획

○ 핵심사업

(단위 : 억원)

구분	사업명	사업비		사업내용
		기정	변경	
	합계	1085.7	1074.4	
	소계	499.4	477.1	
마중물 사업	에니타운 상점거리조성사업	16.0	15.0	재미로 등 에니타운 주요가로를 만화·애니 캐릭터 및 디자인을 활용한 상점거리 조성
	염천교 수제화 활성화 프로젝트	0.2	0.4	수제화 장인 육성, 신진인력 유입 등을 통한 경쟁력 향상
	남대문시장 진입광장 조성사업	11.9	14.4	광장조성을 통한 이벤트 및 휴식공간 조성
	남대문 지하보도 공간 개선사업	7.0	4.4	지하공간 활용을 통한 일자리 창출 공간 마련
	청파로(중림시장) 활성화사업	1.5	1.5	지역 맞춤형 노후건축물 리모델링 지원 및 중림시장 보행환경개선
	중림로 보행문화거리 조성사업	49.5	52.3	서울로와 충정로역의 연결성을 위한 보행환경개선
	성요셉 문화예술거리 조성사업	15.9	16.5	성요셉아파트 앞길 보행친화가로 정비
	서울로2단계 연결길 조성사업	17.8	11.9	서울로 7017과 연계한 보행친화가로 조성
	남산 옛 길조성사업(3~5)	19.3	6.1	통행방식 변경, 보도확보 및 시설정비를 통한 가로조성
	서울로~ 구서울역사 옥상 연결 사업	26.4	8.1	서울로와 구서울역사 연결 및 저활용 공간 재생을 통해 이동편의 및 활성화를 통해 서울역 공공성 강화
	남촌 탐방로 조성사업	2.9	15.6	남촌 내 자원들과 연계한 탐방로 조성
	약현성당 명소화	1.4	1.4	기존 전망대를 활용한 포토존 등 지역명소 조성
	손기정 기념 프로젝트	87.4	88.7	손기정 가치의 재발견 및 콘텐츠로 활용, 체육공원 리뉴얼, 리빙센터 신축, 어린이 도서관 도입 등
	건축자산 진흥구역 지정 및 관리계획 수립	0.9	1.5	근현대 건축자산 보존을 위한 지원
	계절별 축제	8.1	10.0	지역 역사문화자원 활용 축제 정례화
	한영 교류 재생 프로젝트	1.1	1.1	영국문화원과 연계한 문화 창작 콘텐츠 프로그램 추진

구분	사업명	사업비		사업내용
		기정	변경	
마중물 사업	우리동네 가꾸기 시범사업(중림동)	6.3	5.0	중림동 지역특성을 고려한 생활환경 개선
	우리동네 가꾸기 시범사업(회현동)	10.0	10.2	계단, 급경사 등 골목 환경개선
	우리동네 가꾸기 시범사업(명동)	2.7	2.7	명동 지역 회현권역 예정동 앵커시설 조성 사업과 연계한 골목환경정비 및 골목경관특화
	우리동네 가꾸기 시범사업(필동)	3.0	3.0	
	남촌놀이터 조성사업	5.2	5.2	저 활용 되고 있는 남산공원을 활용한 놀이공간 조성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28.5	21.7	도시재생의 체계적인 지원 및 안정적인 재생성장 목적 도모
	주민공모(아이디어 공모)	0.4	0.4	이웃만들기, 마을봉사단 등 주민이 주체가 되어 지역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사업내용 구체화
	주민공동체 형성사업(공모)	4.8	4.6	주민 아이디어 실현 및 주민참여사업 발굴
	도시재생기반시설 조성사업	133.1	140.6	지역 도시재생 활성화의 매개 공간 조성
	지역거점 공간 운영	2.6	4.0	지역 공동체 활성화 지원
	요리를 통한 도시재생 프로젝트	3.0	0.2	주민협의체 중심의 도시재생 공유 공간 조성
	노후상가 등 경관개선 지원	2.4	3.4	지역 맞춤형 노후 건축물 경관개선 지원
	활성화계획 수립 관련 용역 추진 등	30.1	27.2	활성화계획 관련 추진
소계		551.1	562.1	
시책 사업	서울로 7017 프로젝트 조성 등 관련사업	546.0	557	서울로 7017, 만리광장 조성 등 관련 사업 추진
	회현동 일대 지구단위계획	5.1	5.1	지구단위계획 수립
소계		35.2	35.2	
지자체 협업 사업	소월로 도로다이어트	5.2	5.2	보행환경개선
	서울로 연결가로	30.0	30.0	남대문시장~서울로~한양도성을 잇는 보행친화가로조성

○ 일반사업

(단위 : 억 원)

구분	사업명	사업비		사업내용
		기정	변경	
	합계	1,431.1	1410.5	
	소계	1,431.1	1410.5	
지자체 협업 사업	특화브랜드개발 및 on-line지원체계모색	0.5	0.5	On-line 지원체계 구축으로 시장 경쟁력 강화
	특정업종 DIY 체험프로그램 운영	1.0	1.0	방문객들이 직접 제작해 볼 수 있는 DIY 체험 프로그램 운영
	남대문시장 명물 관광코스화	0.5	0.5	시장의 우수한 콘텐츠를 활용한 지속가능한 관광상품 개발 및 운영
	남대문시장 출입구(Gate)개선사업	8.8	8.8	출입구 디자인 개선을 통한 시인성 강화 및 미관 개선
	애니타운 마스터플랜 조성사업	822.0	822.0	애니센터 재건축, 재미랑 확대 및 관련기업 집적화 유도를 통한 문화콘텐츠의 창작기지 조성
	회현제2시민아파트 예술문화복합공간 조성사업	0.7	0.7	노후된 공간을 재활용한 예술인들의 주거창작공간 마련
	남대문시장 축제 정례화	2.0	2.0	상인이 주도하여 하나되는 남대문축제
	서소문역사공원 기념공간 조성사업	595.6	575	역사문화공원 조성
	집수리 지원사업	-	-	임대주택 활성화 유도 및 집수리 지원 사업을 통한 주거환경개선
	남촌 주택 개량 지원	-	-	주민이 주도적으로 건축물 개량 및 활용할 수 있도록 종합적 정보 제공
	소계	-	-	
민간 투자 사업	북부역세권 개발사업	-	-	업무, 숙박, 판매, MICE사업 시설 등 역사도심지원 기능 도입
	남대문 7-2,9-2지구 도시환경정비사업	-	-	서울로 7017 연계 보행길 개선
	남대문로5가 도시환경정비사업	-	-	서울로 7017 연계 시민휴게공간 조성
	봉래구역 1,3지구 도시환경정비사업	-	-	남대문시장 일대 도시재생기반시설 지원
	양동구역 4-2·7,4-1지구 도시환경정비사업	-	-	서울로 7017 연계 보행길 연결
	회현 도시환경정비사업	-	-	은행나무 보행광장 조성 및 가로활성화
	마포로5구역 10지구 도시환경정비사업	-	-	중림동 일대 도시재생기반시설 지원
	서계동 도시환경정비사업 (서계동 지구단위계획 특별계획구역)	-	-	업무, 숙박, 판매, MICE사업 시설 등 역사도심지원 기능 도입

※ 향후 지자체, 민간 사업자의 사업계획 수립 및 사업시행과정 등에서 변경될 수 있음

나. 근린일반형 도시재생사업의 계획

○ 핵심사업

(단위 : 억원)

구분	사업명	사업비		사업내용
		기정	변경	
	합계	99.6	98.7	
마중물 사업	소계	99.6	98.7	
	서계동 코워킹 팩토리 조성	1.6	1.9	산·관·학 협력을 통해 숙련 봉제인 및 디자인 전문가 양성 등 지역산업 육성
	봉제·수제화 팝업 스토어 운영	1.8	2.1	민·관·학의 유기적 협력을 통해 서울역 일대 도심제조산업을 경쟁력있는 지역산업으로 육성
	국립극단길 조성 사업	6.7	6.9	국립극단과 연계한 문화예술가로 조성
	서울로2단계 연결길 조성사업	7.1	3.0	서울로 7017과 연계한 보행친화가로 조성
	계절별 축제	2.1	3.3	지역 역사문화자원 활용 축제 정례화(서계동)
	청파공원 조성사업(기본구상 수립)	2.7	3.3	문화거점공간 육성을 위한 설계 용역 추진
	우리동네 가꾸기 시범사업(서계동)	7.1	5.7	지역특성을 나타내는 안전하고 쾌적한 골목환경조성
	청파언덕 명소화 : 테마계단 조성사업	1.6	1.8	노후불량주택이 밀집된 구릉지 일대 계단정비를 통한 안전환경개선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7.1	9.8	도시재생의 체계적인 지원 및 안정적인 재생성장 목적 도모
	주민공모(아이디어 공모)	0.1	0.3	이웃만들기, 마을봉사단 등 주민이 주체가 되어 지역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사업내용 구체화
	주민공동체 형성사업(공모)	1.2	1.2	주민 아이디어 실현 및 주민참여사업 발굴
	도시재생기반시설 조성사업	54.2	53.2	지역 도시재생 활성화의 매개 공간 조성
	지역거점 공간 운영	1.9	0.3	지역 공동체 활성화 지원
	서계동 복합커뮤니티시설 조성사업(기본구상 수립)	2.7	3.2	구릉지 지형 단차를 활용하여 복합커뮤니티 시설 조성을 통한 건축물의 입체적 활용
	노후상가 등 경관개선 지원	0.6	0.6	지역 맞춤형 노후 건축물 경관개선 지원
	활성화계획 수립 관련 용역 추진 등	1.1	2.1	활성화계획 관련 추진

※ 향후 세부 사업계획 수립 및 사업시행 과정 등에서 변경될 수 있음

○ 일반사업

(단위 : 억 원)

구분	사업명	사업비		사업내용
		기정	변경	
	합계	1.5	1.5	
	소계	1.5	1.5	
지자체 협업 사업	봉제산업의 지속가능한 경쟁력 확보	1.0	1.0	On-line 지원체계 구축으로 시장 경쟁력 강화
	도심형 관광숙박 활성화	0.5	0.5	방문객들이 직접 제작해 볼 수 있는 DIY 체험 프로그램 운영
	집수리 지원사업	-	-	임대주택 활성화 유도 및 집수리 지원 사업을 통한 주거환경개선
	소계	-	-	
부처 협력 사업	복합문화거점조성 (국립극단 관광문화거점 육성)	-	-	업무, 숙박, 판매, MICE사업 시설 등 역사도심지원 기능 도입
	소계	-	-	
민간 투자 사업	만리시장 환경개선 및 봉제산업지원거점 조성사업	-	-	서울로 7017 연계 보행길 개선
	소계	-	-	

※ 향후 지자체, 민간 사업자의 사업계획 수립 및 사업시행과정 등에서 변경될 수 있음

④ 도시재생기반시설의 설치·정비에 관한 계획
가. 경제기반형 도시재생기반시설

(단위 : 억원)

기반시설종류	단위사업명	사업비	위치	면적(규모)	사업내용
주민 공동이용시설, 주차장	도시재생 기반시설 조성사업	133.0(기정) → 140.6(변경)	중림동 회현동	7개소(기정) → 6개소(변경)	- 유희공간 부지 매입을 통해 지역주민 커뮤니티 및 마을기업 운영 공간 마련 - 주차장 조성

연번	위 치	기정		변경	
		방향	시설명	변경 여부	변경 사유
1	중림동 441-1	• 방치된 공간을 특색 있게 조성 및 활용	중림창고	-	-
2	회현동1가 100-116	• 주민 커뮤니티 공간 (교육, 문화프로그램 등)조성	회현사랑채1	-	
3	회현동1가 100-172		회현사랑채2	-	
4	회현동1가 150-1	• 남촌브랜드 운영 거점 및 주택개량 시범 모델 조성	계단집	-	-
5	회현동1가 100-145	• 요식업을 통한 도시재생의 거점공간 조성	검벽돌집	-	-
6	예장동 7-24 외 2필지	• 주민 휴식공간 마련 및 커뮤니티 거점 조성	애니통집	변경 (주차장으로 사용)	조성 중 자연하천 발굴, 주차장 사업으로 변경
7	중림동 128-109 외1필지	• 중림동 문화거점시설 예정	미정	변경	부지의 장기간 소유권 분쟁으로 미실행

나. 근린일반형 도시재생기반시설

(단위 : 억원)

기반시설종류	단위사업명	사업비	위치	면적(규모)	사업내용
주민 공동이용시설	도시재생 기반시설 조성사업	54.2 → 53.2	서계동	5개소	주민휴게공간 제공 및 창업·예술인을 위한 활동공간 조성

연번	위 치	기정		변경	
		방향	시설명	변경 여부	변경 사유
1	서계동 33-202	• 지역 커뮤니티 공간	감나무집	-	-
2	서계동 33-283	• 소규모 영세 봉제산업의 지속적인 경쟁력 확보 및 청년 산업 장인 육성	은행나무집	-	-
3	서계동 33-218	• 지역 내 주민을 위한 휴게시설 등 마 련	빌라집	-	-
4	서계동 33-232 외 2필지	• 주변 도시재생사업과 연계 및 청년 창업 공간 조성	청파언덕집	-	-
5	서계동 260-1	• 지역산업 육성 및 지역재생을 위한 민관협력 임대형 거점공간 조성	코워킹스페이스	-	사업기간 중 임대 운영 후 종료

⑤ 공공 및 민간 재원 조달계획

가. 경제기반형 도시재생사업의 계획

○ 핵심사업

(단위: 억원)

구분	사업명	합계	국비	사업비		민간
				지방비		
				시비	구비	
	합계	1074.4	-	1044.4	30.0	-
	소계	477.1	-	477.1	-	-
마중물 사업	에니타운 상정거리조성사업	15.0	-	15.0	-	-
	염천교 수제화 활성화 프로젝트	0.4	-	0.4	-	-
	남대문시장 진입광장 조성사업	14.4	-	14.4	-	-
	남대문 지하보도 공간 개선사업	4.4	-	4.4	-	-
	청파로(중림시장) 활성화사업	1.5	-	1.5	-	-
	중림로 보행문화거리 조성사업	52.3	-	52.3	-	-
	성요셉 문화예술거리 조성사업	16.5	-	16.5	-	-
	서울로2단계 연결길 조성사업	11.9	-	11.9	-	-
	남산 옛 길조성사업(3~5)	6.1	-	6.1	-	-
	서울로~ 구서울역사 옥상 연결 사업	8.1	-	8.1	-	-
	남촌 탐방로 조성사업	15.6	-	15.6	-	-
	악현성당 명소화	1.4	-	1.4	-	-
	손기정 기념 프로젝트	88.7	-	88.7	-	-
	건축자산 진흥구역 지정 및 관리계획 수립	1.5	-	1.5	-	-
	계절별 축제	10.0	-	10.0	-	-
	한영 교류 재생 프로젝트	1.1	-	1.1	-	-
	우리동네 가꾸기 시범사업(중림동)	5.0	-	5.0	-	-
	우리동네 가꾸기 시범사업(회현동)	10.2	-	10.2	-	-
	우리동네 가꾸기 시범사업(명동)	2.7	-	2.7	-	-
	우리동네 가꾸기 시범사업(필동)	3.0	-	3.0	-	-
	남촌놀이터 조성사업	5.2	-	5.2	-	-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21.7	-	21.7	-	-
	주민공모(아이디어 공모)	0.4	-	0.4	-	-
	주민공동체 형성사업(공모)	4.6	-	4.6	-	-
	도시재생기반시설 조성사업	140.6	-	140.6	-	-
	지역거점 공간 운영	4.0	-	4.0	-	-
	요리를 통한 도시재생 프로젝트	0.2	-	0.2	-	-
	노후상가 등 경관개선 지원	3.4	-	3.4	-	-
	활성화계획 수립 관련 용역 추진 등	27.2	-	27.2	-	-
	소계	562.1	-	562.1	-	-
시책 사업	서울로 7017 프로젝트 조성 등 관련사업	557	-	557	-	-
	회현동 일대 지구단위계획	5.1	-	5.1	-	-
	소계	35.2	-	5.2	30.0	-
지자체 협업 사업	소월로 도로다이어트	5.2	-	5.2	-	-
	서울로 연결가로	30.0	-	-	30.0	-

※ 향후 세부 사업계획 수립 및 사업시행 과정 등에서 변경될 수 있음

○ 일반사업

(단위 : 억원)

구분	사업명	합계	사업비			
			국비	지방비		민간
				시비	구비	
	합계	1410.5	283.0	726.0	115.0	301.1
	소계	1410.5	288.0	706.4	115.0	301.1
자차제 협업 사업	특화브랜드개발 및 on-line지원체계모색	0.5	-	0.5	-	-
	특정업종 DIY 체험프로그램 운영	1.0	-	1.0	-	-
	남대문시장 명물 관광코스화	0.5	-	0.5	-	-
	남대문시장 출입구(Gate)개선사업	8.8	-	8.8	-	-
	에니타운 마스터플랜 조성사업	822.0	-	520.9	-	301.1
	회현제2시민아파트 예술문화복합공간 조성사업	0.7	-	0.7	-	-
	남대문시장 축제 정례화	2.0	-	2.0	-	-
	서소문역사공원 기념공간 조성사업	575	288.0	172.0	115.0	-
	집수리 지원사업	-	-	-	-	-
	남촌 주택 개량 지원	-	-	-	-	-
	소계	-	-	-	-	-
민간 투자 사업	북부역세권 개발사업	-	-	-	-	-
	남대문 7-2,9-2지구 도시환경정비사업	-	-	-	-	-
	남대문로5가 도시환경정비사업	-	-	-	-	-
	봉래구역 1,3지구 도시환경정비사업	-	-	-	-	-
	양동구역 4-2·7,4-1지구 도시환경정비사업	-	-	-	-	-
	회현 도시환경정비사업	-	-	-	-	-
	마포로5구역 10지구 도시환경정비사업	-	-	-	-	-
	서계동 도시환경정비사업 (서계동 지구단위계획 특별계획구역)	-	-	-	-	-

※ 향후 지자체, 민간 사업자의 사업계획 수립 및 사업시행과정 등에서 변경될 수 있음

나. 근린일반형 도시재생사업의 계획

○ 핵심사업

(단위 : 억원)

구분	사업명	사업비				
		합계	국비	지방비		민간
				시비	구비	
마중물 사업	합계	98.7	-	98.7	-	-
	소계	98.7	-	98.7	-	-
	서계동 코워킹 팩토리 조성	1.9	-	1.9	-	-
	봉제·수제화 팝업 스토어 운영	2.1	-	2.1	-	-

구분	사업명	합계	국비	사업비		민간
				지방비		
				시비	구비	
	국립극단길 조성 사업	6.9	-	6.9	-	-
	서울로2단계 연결길 조성사업	3.0	-	3.0	-	-
	계절별 축제	3.3	-	3.3	-	-
	청파공원 조성사업(기본구상 수립)	3.3	-	3.3	-	-
	우리동네 가꾸기 시범사업(서계동)	5.7	-	5.7	-	-
	청파언덕 명소화 : 테마계단 조성사업	1.8	-	1.8	-	-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9.8	-	9.8	-	-
	주민공모(아이디어 공모)	0.3	-	0.3	-	-
	주민공동체 형성사업(공모)	1.2	-	1.2	-	-
	도시재생기반시설 조성사업	53.2	-	53.2	-	-
	지역거점 공간 운영	0.3	-	0.3	-	-
	서계동 복합커뮤니티시설 조성사업(기본구상 수립)	3.2	-	3.2	-	-
	노후상가 등 경관개선 지원	0.6	-	0.6	-	-
	활성화계획 수립 관련 용역 추진 등	2.1	-	2.1	-	-

※ 향후 세부 사업계획 수립 및 사업시행 과정 등에서 변경될 수 있음

○ 일반사업

(단위 : 억원)

구분	사업명	합계	사업비			
			국비	지방비		민간
				시비	구비	
	합계	1.5	-	1.5	-	-
지자체 협업 사업	소계	1.5	-	1.5	-	-
	봉제산업의 지속가능한 경쟁력 확보	1.0	-	1.0	-	-
	도심형 관광숙박 활성화	0.5	-	0.5	-	-
	집수리 지원사업	-	-	-	-	-
부처 협력 사업	소계	-	-	-	-	-
	복합문화거점조성 (국립극단 관광문화거점 육성)	-	-	-	-	-
민간 투자 사업	소계	-	-	-	-	-
	만리시장 환경개선 및 봉제산업지원거점 조성사업	-	-	-	-	-

※ 향후 지자체, 민간 사업자의 사업계획 수립 및 사업시행과정 등에서 변경될 수 있음

⑥ 예산 집행 계획

가. 경제기반형 도시재생사업의 계획

○ 핵심사업

(단위: 억원)

구분	합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합계	1074.4	0.3	573.9	138.8	128.1	71.1	133.6	22.6	6.0
소계	477.1	0.3	11.8	133.6	98.1	71.1	133.6	22.6	6.0
마중물 사업	지방비(시비)	477.1	0.3	11.8	133.6	98.1	71.1	133.6	22.6
소계	562.1	-	562.1	-	-	-	-	-	-
시책 사업	지방비(시비)	562.1	-	562.1	-	-	-	-	-
소계	35.2	-	-	5.2	30.0	-	-	-	-
지자체 협업사업	지방비(시비)	5.2	-	-	5.2	-	-	-	-
	지방비(구비)	30.0	-	-	-	30.0	-	-	-

※ 향후 세부 사업계획 수립 및 사업시행 과정 등에서 변경될 수 있음

○ 일반사업

(단위 : 억원)

구분	합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합계	1,431.1	-	1.0	9.5	713.4	707.2	-	-	-
소계	1,431.1	-	1.0	9.5	713.4	707.2	-	-	-
지자체 협업사업	국비	283.0	-	-	-	283.0	-	-	-
	지방비(시비)	726.0	-	1.0	9.5	309.4	406.1	-	-
	지방비(구비)	422.1	-	-	-	121.0	301.1	-	-

※ 향후 지자체, 민간 사업자의 사업계획 수립 및 사업시행과정 등에서 변경될 수 있음

나. 근린일반형 도시재생사업의 계획

○ 핵심사업

(단위 : 억원)

구분	합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합계	98.7	-	2.1	36.3	27.0	20.0	9.5	2.6	1.2
소계	98.7	-	2.1	36.3	27.0	20.0	9.5	2.6	1.2
마중물 사업	지방비(시비)	98.7	-	2.1	36.3	27.0	20.0	9.5	1.2

※ 향후 세부 사업계획 수립 및 사업시행 과정 등에서 변경될 수 있음

○ 일반사업

(단위 : 억원)

구분		합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합계		1.5	-	-	-	-	1.5	-	-	-
소계		1.5	-	-	-	-	1.5	-	-	-
마중물 사업										
	지방비(시비)	1.5	-	-	-	-	1.5	-	-	-

※ 향후 지자체, 민간 사업자의 사업계획 수립 및 사업시행과정 등에서 변경될 수 있음

㉓ 도시재생사업의 평가 및 점검 계획 : 변경없음

㉔ 도시재생특별법 제23조에 따른 행위제한이 적용되는 지역 : 해당없음

㉕ 도시재생 관련 조직의 운영 및 활성화 방안에 관한 사항 : 변경없음

㉖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에 관한 결정 : 변경없음

㉗ 도시정비형 재개발예정구역 지정 : 변경없음

㉘ 리모델링 활성화구역 지정 : 변경없음

㉙ 관련 도면 : 변경없음

㉚ 관련서류 열람

-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균형발전본부 도시정비과(☎02-2133-8643)에 관련도서를 비치하여 열람하고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4-322호

홍제재정비촉진지구 변경 지정,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1. 서울특별시고시 제2010-452호(2010.12.16.)로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13-102호(2013.03.28.), 서울특별시고시 제2013-280호(2013.09.05.), 서울특별시고시 제2013-327호(2013.10.04.), 서울특별시고시 제2014-430호(2014.12.18.), 서울특별시고시 제2016-213호(2016.07.28.),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112호(2017.03.30.),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477호(2017.12.28.), 서울특별시고시 제2023-534호(2023.12.07.), 서울특별시고시 제2024-188호(2024.04.11.)로 재정비촉진지구 변경 지정 또는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된 홍제재정비촉진지구에 대하여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5조제1항, 및 제12조제1항 규정에 따라 재정비촉진지구 변경 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을 변경 결정하고,
2. 홍제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4년 7월 4일
서울특별시장

가. 재정비촉진지구의 명칭·유형·위치·면적(변경)

명칭	유형	위 치	면적(㎡)			비고
			기 정	증 감	변 경	
홍제재정비촉진지구	중심지형	서대문구 홍제동 330번지 일대	200,394	감) 42,085	158,309	최초지정일 (' 10.12.16)

□ 재정비촉진지구 지정(변경) 사유서

구 분	위 치	면적(㎡)	변경사유
홍제 재정비촉진지구	서대문구 홍제동 330번지 일대	· 면적감소 (감 42,085㎡) - 200,394㎡ → 158,309㎡	· 서울시고시 제2017-112호로 재정비촉진구역 해제된 홍제1구역이 2023. 11. 10. 역세권활성화사업 대상지로 선정됨에 따라 역세권활성화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촉진지구에서 제척함

나. 재정비촉진사업의 완료목표 연도 : 변경 없음

다. 재정비촉진지구 지정목적 및 정비의 기본방향·목표 : 변경 없음

라. 재정비촉진계획

1)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변경)

구 분		면적(㎡)			추진현황
		기정	변경	변경 후	
합 계		200,394.0	감) 42,085.0	158,309.0	
일반시설 용지	소 계	117,413.2	감) 29,538.0	87,875.2	
	공동주택	10,637.9	-	10,637.9	홍제1구역
	판매·업무·주거복합	106,703.7	감) 29,538.0	77,165.7	홍제1구역 내 판매·업무·주거복합 면적 감소
	유보지	71.6	-	71.6	
기반시설 용지	소 계	82,980.8	감) 12,547.0	70,433.8	
	도 로	59,607.7	-	59,607.7	
	공공공지	141.6	-	141.6	
	공공청사	2,349.0	-	2,349.0	
	시 장	9,976.8	감) 5,425.0	4,551.8	홍제1구역 내 시장용지(인왕시장) 면적 감소
	주차장	3,016.0	-	3,016.0	
	하천	7,889.7	감) 7,122.0	767.7	홍제1구역 내 하천용지면적 감소

※ 도로 및 하천시설 면적은 CAD상 구적면적이며, 측량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서울시고시 제2017-112호로 재정비촉진구역 해제된 홍제1구역을 재정비촉진지구에서 제척 반영

2) 인구·주택 수용계획(변경)

구 분		면 적(㎡)	인구수(인)	가구수	분양	임대
총 계	기 정	200,394	1,035	453	325	128
	변 경	158,309	1,035	453	325	128

구 분		면 적(㎡)	인구수(인)	가구수	분양	임대
홍제2구역		3,069	285	124	106	18
홍은1구역		11,571	750	329	219	110
지구단위계획구역		135,900	-	-	-	-
홍제3(준치정비구역)		7,769	-	-	-	-
홍제1구역 (해제)	기정	42,085	-	-	-	-
	변경	-				

※ 인구수는 홍제2동 세대당 인구수 평균 2.30인/세대(서울열린데이터광장, 2023년 4분기)를 가구수에 곱하여 개략추정

※ 서울시고시 제2017-112호로 재정비촉진구역 해제된 홍제1구역을 재정비촉진지구에서 제척 반영

3) 교육시설, 문화시설, 복지시설 등 기반시설 설치계획(변경)

구 분		면적(㎡)			비 고																
		기정	변경	변경 후																	
교통 시설	도로	59,607.7	-	59,607.7	-																
	주차장	3,016.0 (700.0)	-	3,016.0 (700.0)	• 홍은1구역 내 입체적 도시계획시설(주차장) 결정 <table><tr><th>구분</th><th>기정</th><th>변경</th><th>변경후</th></tr><tr><td>층수</td><td>지하1층일부</td><td>-</td><td>지하1층일부</td></tr><tr><td>수평투영 면적(㎡)</td><td>700</td><td>-</td><td>700</td></tr><tr><td>연면적(㎡)</td><td>700</td><td>-</td><td>700</td></tr></table>	구분	기정	변경	변경후	층수	지하1층일부	-	지하1층일부	수평투영 면적(㎡)	700	-	700	연면적(㎡)	700	-	700
	구분	기정	변경	변경후																	
	층수	지하1층일부	-	지하1층일부																	
	수평투영 면적(㎡)	700	-	700																	
연면적(㎡)	700	-	700																		
(고속철도 정차장)	(4,500.0)	-	(4,500.0)	-																	
소계	62,623.7 (700.0)	-	62,623.7 (700.0)	-																	

도시
공간
시설
등

공공공지	141.6	-	141.6	-																																
시장	9,976.8	감) 5,425.0	4,551.8	· 홍제1구역 내 인왕시장 면적 감소																																
공공청사	2,349.0	-	2,349.0	-																																
사회복지시설	- (1,083.0) <1,387.4>	-	- (1,083.0) <1,387.4>	• 홍제1구역 내 입체적 도시계획시설(사회복지시설) 결정 <table><tr><td>구분</td><td>기정</td><td>변경</td><td>변경후</td></tr><tr><td>층수</td><td>지하1층일부 ~ 지상1층일부</td><td>-</td><td>지하1층일부 ~ 지상1층일부</td></tr><tr><td>수평투영 면적(㎡)</td><td>1,083.0</td><td>-</td><td>1,083.0</td></tr><tr><td>연면적(㎡)</td><td>1,643.5</td><td>-</td><td>1,643.5</td></tr></table> • 홍제2구역 내 사회복지시설 계획 <table><tr><td>구분</td><td>기정</td><td>변경</td><td>변경 후</td></tr><tr><td>층수</td><td>지상2층일부 ~ 지상3층</td><td>-</td><td>지상2층일부 ~ 지상3층</td></tr><tr><td>전용면적 (㎡)</td><td>1,387.4</td><td>-</td><td>1,387.4</td></tr><tr><td>연면적(㎡)</td><td>3,309.5</td><td>-</td><td>3,309.5</td></tr></table>	구분	기정	변경	변경후	층수	지하1층일부 ~ 지상1층일부	-	지하1층일부 ~ 지상1층일부	수평투영 면적(㎡)	1,083.0	-	1,083.0	연면적(㎡)	1,643.5	-	1,643.5	구분	기정	변경	변경 후	층수	지상2층일부 ~ 지상3층	-	지상2층일부 ~ 지상3층	전용면적 (㎡)	1,387.4	-	1,387.4	연면적(㎡)	3,309.5	-	3,309.5
구분	기정	변경	변경후																																	
층수	지하1층일부 ~ 지상1층일부	-	지하1층일부 ~ 지상1층일부																																	
수평투영 면적(㎡)	1,083.0	-	1,083.0																																	
연면적(㎡)	1,643.5	-	1,643.5																																	
구분	기정	변경	변경 후																																	
층수	지상2층일부 ~ 지상3층	-	지상2층일부 ~ 지상3층																																	
전용면적 (㎡)	1,387.4	-	1,387.4																																	
연면적(㎡)	3,309.5	-	3,309.5																																	
하천	7,889.7	감) 7,122.0	767.7	· 홍제1구역 내 홍제천 면적 감소																																
(하수도)	(940.0)	-	(940.0)	-																																
소계	20,357.1 (1,083.0) <1387.4>	감) 12,547.0 (-) <->	7,810.1 (1,083.0) <1387.4>	-																																

※ ()안의 면적은 입체적 도시계획시설 결정, < >안의 면적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지 않는 기반시설임

※ 서울시고시 제2017-112호로 재정비촉진구역 해제된 홍제1구역을 재정비촉진지구에서 재적 반영

※ 서울시고시 제2024-188호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된 홍제2구역 사회복지시설<시설미결정> 오기 반영

4) 공원녹지 및 환경보전계획(변경없음)

5) 교통계획(변경없음)

6) 경관계획(변경없음)

7) 재정비촉진구역 지정에 관한 사항(변경)

구분	사업방식	구역명	위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 후	
총 계				200,394	감) 42,085	158,309	
촉진구 역	도시정비형 재개발	홍제2구역	홍제동 326-5 일대	3,069	-	3,069	재정비촉진계획 변경(2024.04.11.)
		홍은1구역	홍은동 48-163 일대	11,571	-	11,571	재정비 촉진구역 결정 (2023.12.07.)
존치정 비	도시정비형 재개발	홍제3구역	홍제동 306-2 일대	7,769	-	7,769	-
존치관 리	지구단위계획구역		홍제동 251 일대	135,900	-	135,900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2017.12.28.)
촉진구역 해제		홍제1구역	홍제동 298-9 일대	42,085	감) 42,085	-	재정비 촉진구역 해제 (2017.03.30.)

※ 서울시고시 제2017-112호로 재정비촉진구역 해제된 홍제1구역을 재정비촉진지구에서 재책 반영

8) 재정비촉진사업별 용도지역 변경계획(변경없음)

9) 재정비촉진사업별 용적률·건폐율 및 높이계획 등 건축계획(변경없음)

10) 기반시설의 비용부담계획(변경)

												순부담면적(㎡) (①+④+⑤)- (②+③)	
구분		계획기반시설 ①		계획기반시설내 국공유지②		기존기반시설내 국공유지③		공공시설 설치 대지환산④		대지지분⑤		면적 (㎡)	비율 (%)
		면적 (㎡)	비율 (%)	면적 (㎡)	비율 (%)	면적 (㎡)	비율 (%)	면적 (㎡)	비율 (%)	면적 (㎡)	비율 (%)		
총 면적	기정	200,394㎡											
	변경	158,309㎡											
기반시 설	기정	3,753.70	1.87	1,566.20	0.78	2,006.10	1.00	1,910.44	0.95	611.69	0.31	2,703.53	1.35
	변경	3,753.70	2.37	1,566.20	0.99	2,006.10	1.27	1,910.44	1.21	611.69	0.39	2,703.53	1.71
홍제 2	기정	715.20	0.36	304.40	0.15	331.40	0.17	1,187.40	0.59	277.00	0.14	1,543.80	0.77
	변경	715.20	0.45	304.40	0.19	331.40	0.21	1,187.40	0.75	277.00	0.17	1,543.80	0.98

구분		계획기반시설 ①		계획기반시설내 국공유지②		기존기반시설내 국공유지③		공공시설 설치 대지환산④		대지지분⑤		순부담면적(㎡) (①+④+⑤)- (②+③)	
		면적 (㎡)	비율 (%)	면적 (㎡)	비율 (%)	면적 (㎡)	비율 (%)	면적 (㎡)	비율 (%)	면적 (㎡)	비율 (%)	면적 (㎡)	비율 (%)
홍은 1	기정	3,038.50	1.51	1,261.8	0.63	1,674.7	0.83	723.04	0.36	334.69	0.17	1,159.73	0.58
	변경	3,038.50	1.92	1,261.8	0.80	1,674.7	1.06	723.04	0.46	334.69	0.21	1,159.73	0.73

※ 촉진구역별 기정 기반시설 면적은 서울특별시고시 제2014-430호(2014.12.18.)에 따른 홍제2구역 기반시설(도로, 공공공지등)면적 적용

※ 서울시고시 제2017-112호로 재정비촉진구역 해제된 홍제1구역을 재정비촉진지구에서 재적 반영에 의한 총 면적 변경에 대한 비율 변경임

11) 임대주택 건설 등 세입자 등의 주거대책(변경없음)

12) 재정비촉진사업 시행기간동안의 범죄예방대책(변경없음)

13) 단계적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14) 상가의 분포 및 수용계획(변경없음)

15) 재정비촉진구역별 정비계획(변경없음)

16)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변경없음)

17) 광고물 관리계획(변경없음)

18) 폐기물 처리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19) 친환경건축물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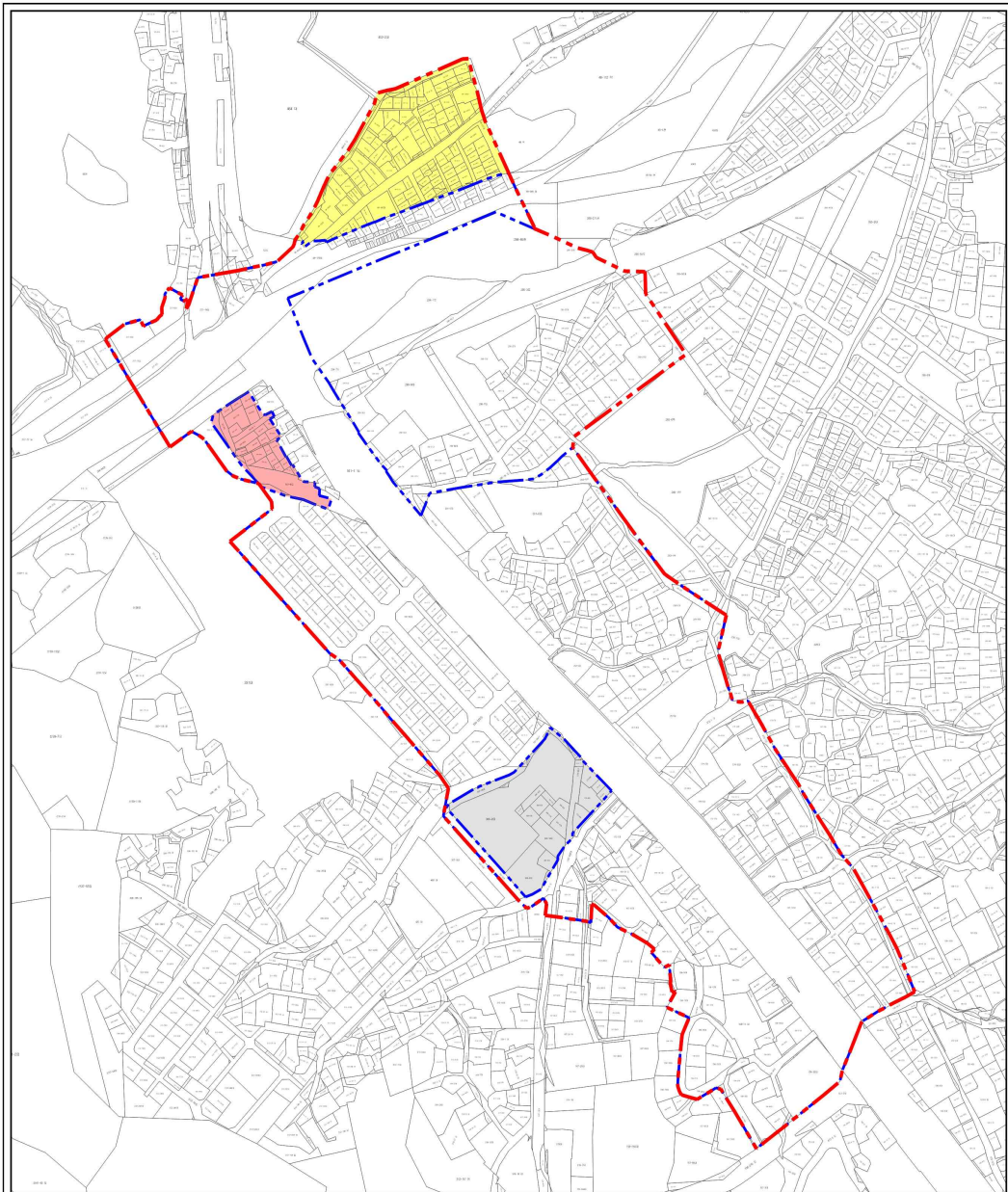
20)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 예방에 관한 계획 (변경없음)

21) 기존 수목의 현황 및 활용계획 (해당없음)

마. 2024년 제5차('24. 6. 18.)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 결과 : 원안가결

바. 관련도면 및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홍제재정비촉진지구 변경 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도서' 참조

사.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재정비촉진사업과(☎02-2133-7224) 및 서대문구
홍제지구활성화추진단(☎02-330-4316)에 관계도서를 각각 비치하고 있습니다.



홍제재정비촉진지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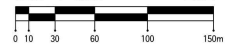
재정비촉진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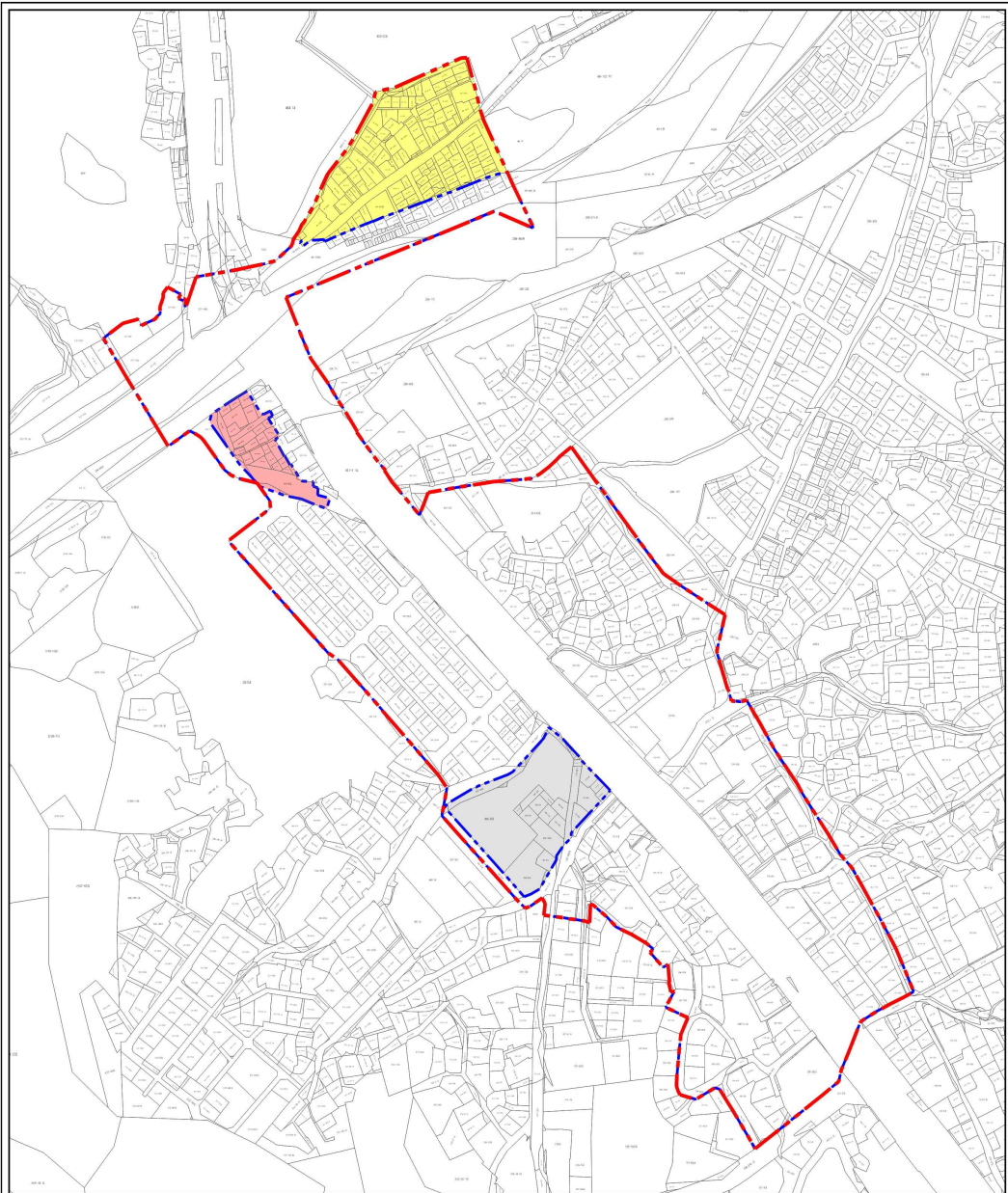
재정비촉진구역 결정(기정)도

범례

- 홍제재정비촉진지구
- 홍제지구단위계획구역
- 지적선
- 홍은1구역
- 홍제2구역
- 홍제3구역

Scale = 1 : 2,000





홍제재정비촉진지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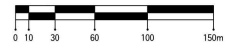
재정비촉진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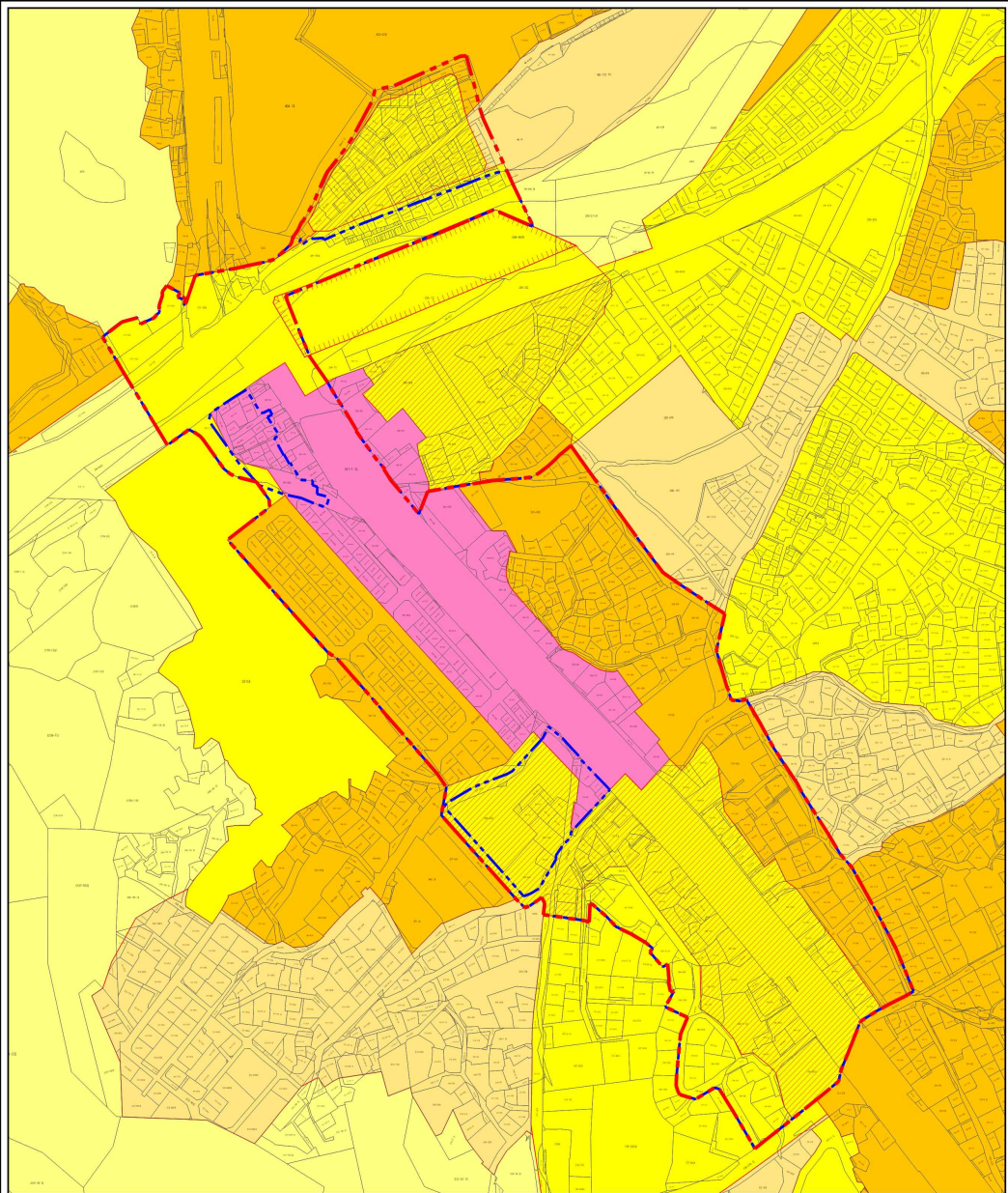
재정비촉진구역 결정(변경)도

범례

- 홍제재정비촉진지구
- 홍제지구단위계획구역
- 지적선
- 홍제2구역
- 홍제3구역
- 홍은1구역

Scale = 1 : 2,000





홍제재정비촉진지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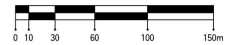
재정비촉진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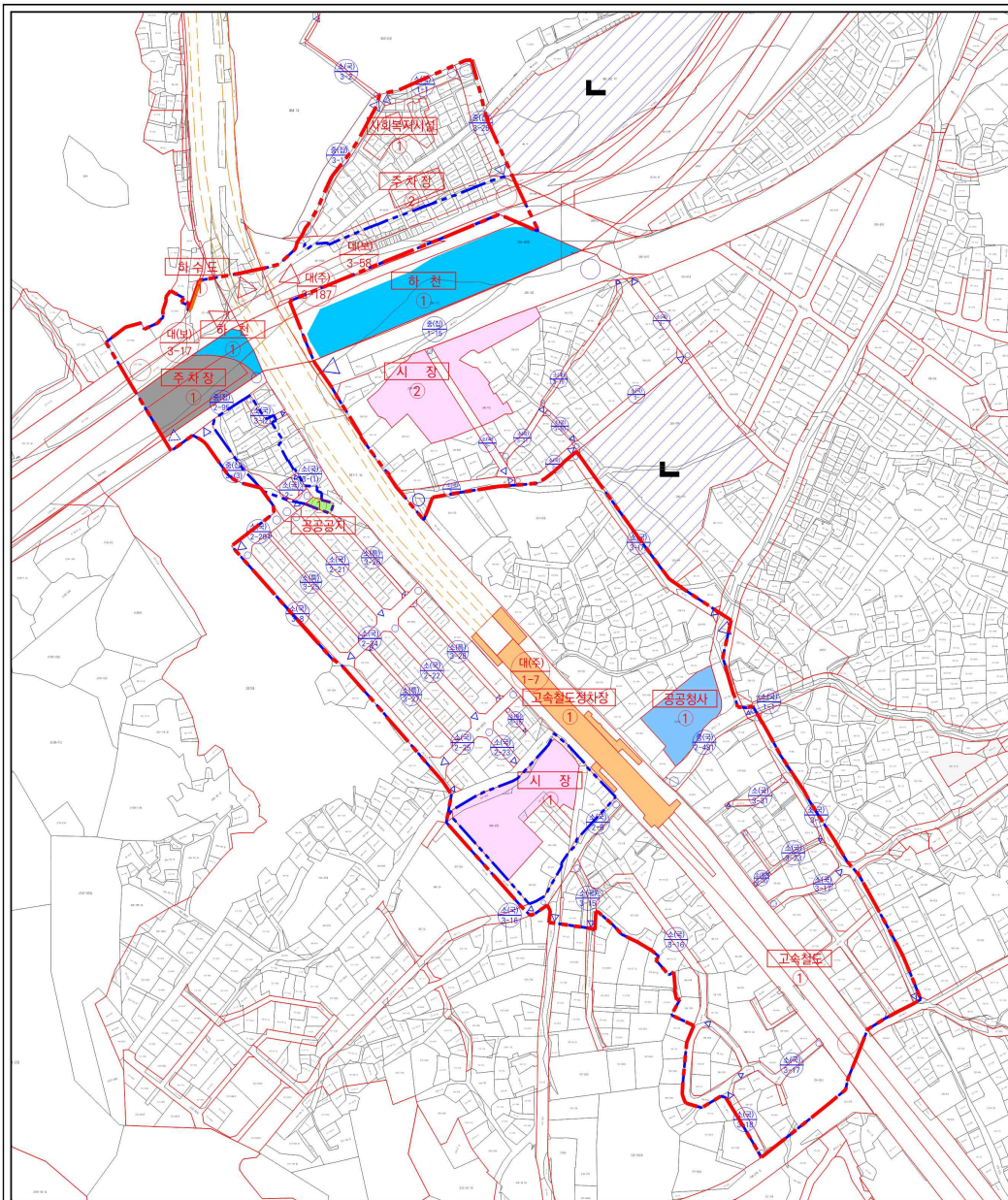
용도지역·지구에 관한 결정도
(변경없음)

범례

- | | |
|---------------|-----------|
| 홍제재정비촉진지구 | 제2종일반주거지역 |
| 홍제지구단위계획구역 | 제3종일반주거지역 |
| 지적선 | 준주거지역 |
| 제1종일반주거지역 | 일반상업지역 |
|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 | 방화지구 |

Scale = 1 : 2,000





홍제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도시계획시설에 관한 결정도
(변경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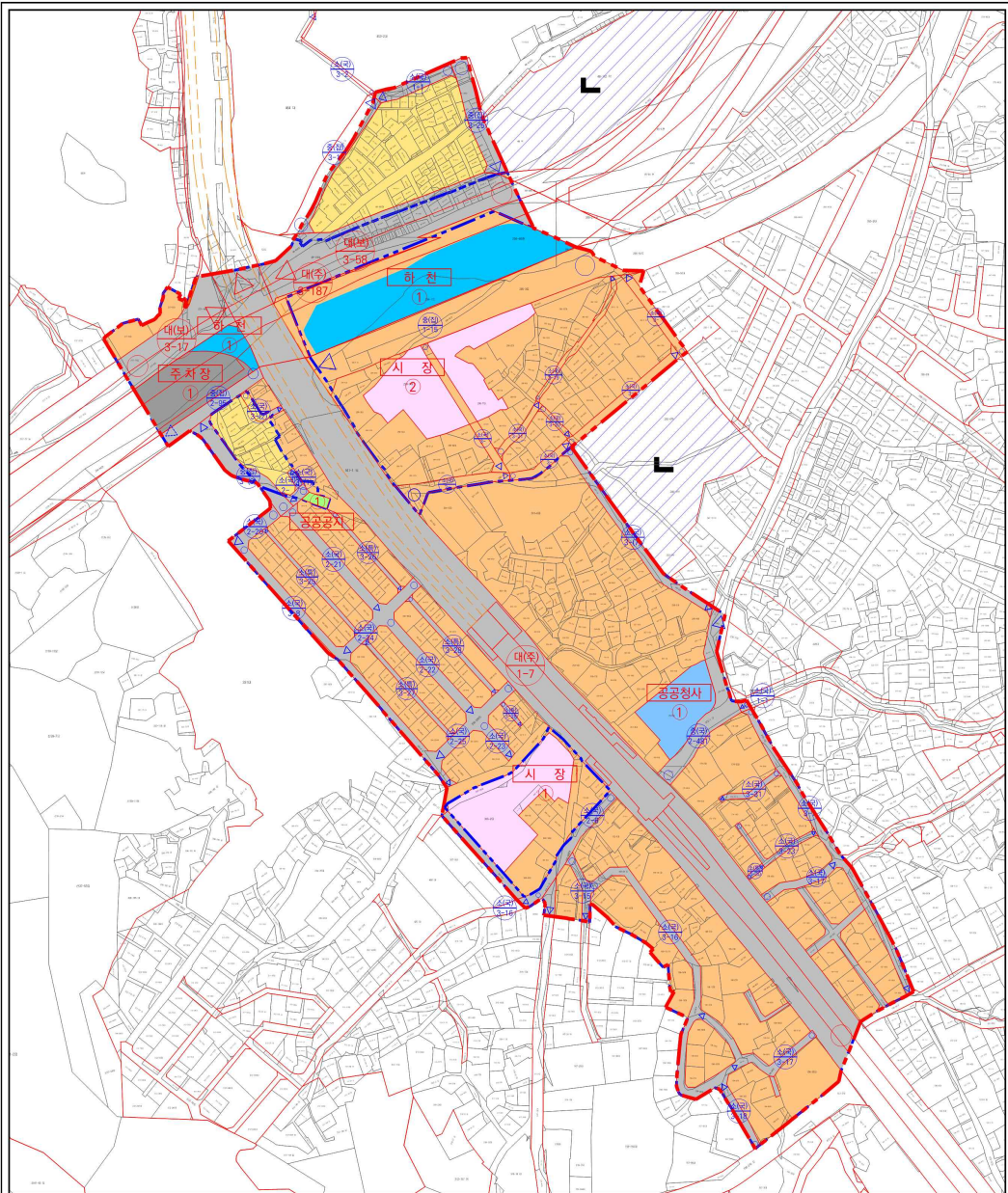
범례

- | | | |
|------------|------|------|
| 홍제재정비촉진지구 | 고속철도 | 주차장 |
| 홍제지구단위계획구역 | 학교 | 하수도 |
| 지적선 | 시장 | 공공공지 |
| 도시계획시설선 | 공공청사 | 하천 |
| 도시계획도로 | | |

Scale = 1 : 2,000



※ 홍제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서울특별시고시 제2023-534호)결정 내용 중 도시 계획시설 결정도상 도시계획시설 하수도 표기 정정함



홍제재정비촉진지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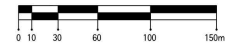
재정비촉진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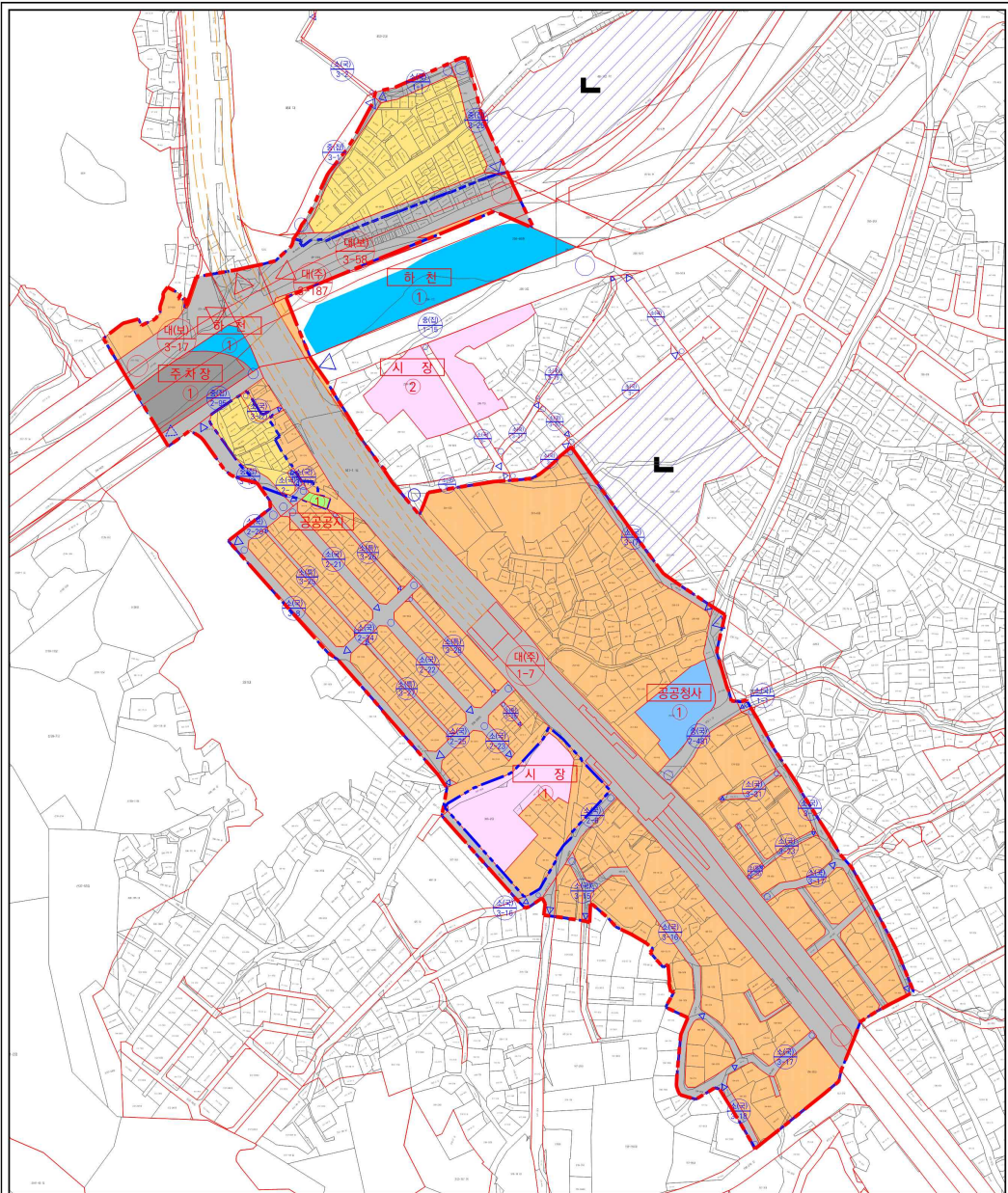
토지이용계획에 관한 결정(기정)도

범례

- | | |
|-------------|------|
| 홍제재정비촉진지구 | 주차장 |
| 홍제 지구단위계획구역 | 공공공지 |
| 공동주택 | 공공청사 |
| 판매·업무·주거복합 | 시장 |
| 도로 | 하천 |

Scale = 1 : 2,000





홍제재정비촉진지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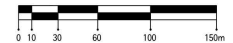
재정비촉진계획

토지이용계획에 관한 결정(변경)도

범례

- | | |
|-------------|------|
| 홍제재정비촉진지구 | 주차장 |
| 홍제 지구단위계획구역 | 공공공지 |
| 공동주택 | 공공청사 |
| 판매·업무·주거복합 | 시장 |
| 도로 | 하천 |

Scale = 1 : 2,000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4-323호

봉래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제3지구 정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311호(2017.08.24.)로 최초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된 봉래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제3지구에 대하여, 2024년 제3차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2024.03.20.) 심의 등을 거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 규정에 의하여 정비계획 결정(변경)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4년 7월 4일
서울특별시 장

I.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

1.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지정

가.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지정 조서 : 변경없음

구분	구역명	위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봉래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중구 봉래동1가 48-3 일원	30,725.0	-	30,725.0	중구고시 제2019-84호 ('19.07.04)

나. 지구 지정 조서 : 변경없음

구분	구역명	지구명	위치	시행지구 면적(㎡)	사업계획내역(㎡)		최초 결정일	비고
					획지면적	공공시설 부담면적		
기정	봉래	3지구	남대문로5가 63-1 일원	4,592.5	4,115.9	476.6	서울시고시 제2017-311호 ('17.08.24)	-

II. 도시정비형 재개발 정비계획 결정

1. 토지이용계획 : 변경없음

구분	명칭	면적(㎡)			구성비(%)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4,592.5	-	4,592.5	100.0	-
정비기반시설	소계	476.6	-	476.6	10.4	-
	도로	476.6	-	476.6	10.4	-
획지		4,115.9	-	4,115.9	89.6	-

2. 용도지역·지구에 관한 결정조서 : 변경없음

가. 용도지역 결정조서 : 변경없음

구분	면적(㎡)			구성비(%)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4,592.5	-	4,592.5	100.0	-
일반상업지역	4,592.5	-	4,592.5	100.0	-

나. 용도지구 결정조서 : 변경없음

1) 방화지구 : 변경없음

구분	도면표시번호	지구명	위치	면적(㎡)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①	방화지구	봉래동48-3일원	101,000 (4,592.5)	건설부고시 제317호('73.8.1.)	-

※ ()는 제3지구 면적임

3. 추정분담금 추산액 및 산출근거

추정 지분율	- 추정지분율산정방식 - 분양대상자투자금액(종전 토지 또는 건축물 평가액 +분양예정의 대지평가차액 + 비용부담액) ÷ 총사업비(분양예정의 대지평가액 +신축건축물시설평가액) - 분양예정의 대지평가차액(총 대지평가차액) - 분양예정의 대지평가액 - 대지조성비 - 총 종전 토지 또는 건축물 평가액 - 개별 분양예정의 대지평가차액(각 토지등소유자별) - 총 대지평가차액 × 분양대상자별 종전 토지 또는 건축물 평가액 비율 - 비용부담액(사업시행자 부담 원칙) - 대지조성비 + 신축건축물비(신축건축물시설평가액)
-----------	---

추정 지분율	[단위: 천원] - 추정지분율 : 100% - 분양대상자투자금액 ÷ 총사업비 = (280,133,000+14,065,260+502,428,740) ÷ 796,627,000 = 100% = 1 - 총 사업비(종후 평가금액 추산액) : 796,627,000 분양예정의 대지평가액 : 302,718,260 - 신축건물시설 평가액 : 493,908,740 - 대지조성비 : 8,520,000 - 총 종전 토지 및 건축물 평가액 : 280,133,000 - 총 대지평가차액 : 302,718,260 - 8,520,000 - 280,133,000 = 14,065,260 - 비용부담액 : 8,520,000 + 493,908,740 = 502,428,740 - 추정지분율 관련 - 종전 토지 또는 건축물(종전자산 추산액)은 약식 감정평가한 감정평가 금액 - 총사업비(종후 평가금액 추산액)는, 향후 관리처분계획을 위한 '분양대상자별 분양예정인 대지또는 건축물의 추산액(종후평가)' 이 나와 확정할 수 있지만, 분담금을 추산하기 위하여, 정비사업비(추산액)를 기준으로 작성														
개별 분양 대상자 투자금액	- 개별 분양대상자 투자금액(권리가액 상당액) - 임의산정 (A)의 종전 토지등소유자의 종전자산(토지 또는 건축물) : 500,000(가정) (A)의 개별 종전토지 또는 건물평가액 비율 = 500,000 ÷ 280,133,000 ≈ 0.178% (A)의 개별 대지평가차액 = 14,065,260 × 0.178% ≈ 25,105 (A)의 개별 분양대상자 투자금액(권리가액 상당액) = 500,000+25,105=525,105 (A)의 지분율 = 525,105 ÷ 796,627,000 ≈ 0.0659%														
추정분담금 산출	- 추정분담금(개략적인 개별 분담금) 산출방식 - 개별 분양예정인 대지 또는 건축물의 추산액 - 개별 분양대상자 투자금액 - 토지등소유자가 분양받는 물건에 비해 토지등소유자의 권리가액 상당액이 높을 경우 개별 분담금인 청산금을 사업시행자로부터 수령(사업시행자 지급), 그 반대인 경우 사업시행자에게 청산금을 지급(사업시행자 징수) (A)의 종전토지 또는 건물 평가액 5억원 가정에 따른 개략적인 개별 분담금(예시)<table><tr><th colspan="2">구분</th><th>토지등소유자 분양가(추산액) (3.3㎡당,천원)</th><th>토지등소유자 분양가 (추산액, 천원)</th><th>개별 분양대상자 투자금액(권리가액 상당액, 천원)</th><th>개별 분담금 (천원)</th><th>비고</th></tr><tr><td>업무 및 판매 일괄</td><td>전용 33㎡</td><td>68,849</td><td>688,493</td><td>525,105</td><td>163,389</td><td>청산금징 수</td></tr></table>	구분		토지등소유자 분양가(추산액) (3.3㎡당,천원)	토지등소유자 분양가 (추산액, 천원)	개별 분양대상자 투자금액(권리가액 상당액, 천원)	개별 분담금 (천원)	비고	업무 및 판매 일괄	전용 33㎡	68,849	688,493	525,105	163,389	청산금징 수
구분		토지등소유자 분양가(추산액) (3.3㎡당,천원)	토지등소유자 분양가 (추산액, 천원)	개별 분양대상자 투자금액(권리가액 상당액, 천원)	개별 분담금 (천원)	비고									
업무 및 판매 일괄	전용 33㎡	68,849	688,493	525,105	163,389	청산금징 수									

※ 관리처분계획인가 시 개별 물건에 대한 종전자산 감정평가 및 분양가격 확정 결과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청산금교부 : 시행자 → 토지등 소유자에게 지급 / 청산금 징수 : 토지등 소유자 → 시행자에게 납부)

4.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조서

가. 교통시설 : 변경

1) 도로 결정조서 : 변경없음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정	광로	2	4	50~53 (53)	주간선 도로	1,500 (62)	세종로 광장	서울역앞	일반 도로	-	1936.12.26 (총고722)	세종 대로
기정	광로	3	11	40~43 (43)	주간선 도로	1,150 (75)	서울역 광장	서대문 광장	일반 도로	-	1936.12.26 (총고722)	통일로
기정	소로	1	-	10	국지 도로	103	봉래동1가 6-23	봉래동1가 126-2	일반 도로	-	2017.8.24. (서고2017-311호)	세종 대로1길

※ ()는 구역 내의 폭원 및 연장임

2) 철도 결정조서 : 변경

구분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폭 (m)	연장 (m)	면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철도	도시 철도 (1호선 서울역)	서울역 광장 (봉래동2가 122-27일대)	11.4 ~32.4	288.2	8,932.7	71.3.26 (건고158호)	• 중복결정 - 도로 : 8,475.0㎡ - 광장 : 8,191.5㎡ • 입체 결정 - 봉래3지구내 : 880.2㎡
변경	철도	도시 철도 (1호선 서울역)	서울역 광장 (봉래동2가 122-27일대)	11.4 ~32.4	288.2	8,540.4	71.3.26 (건고158호)	• 중복결정 - 도로 : 8,475.0㎡ - 광장 : 8,191.5㎡ • 입체 결정 - 봉래3지구내 : 487.9㎡

■ 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비고
-	철도	• 지하철 출입구 선형변경에 따른 면적 변경 - 면적 : 8,932.7㎡→8,540.4㎡(감392.3㎡)	• 대상지 내 지하철 출입구 선형 변경에 따른 철도시설 면적 감소	-

3) 입체적 철도 결정조서(3지구 대지 내) : 변경

구분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입체적 결정규모		최초 결정일	비고	
				구분	규모			
기정	철도	도시철도 (1호선 서울역)	남대문로5가 63-11 일원	면적 (㎡)	지상부	359.4	17.8.24 (서고2017-311 호)	-
					지하부	520.8		
				길이(m)		42.6		
				폭(m)		9.3~17.6		
				높이(m)		18.5~44.9		
변경	철도	도시철도 (1호선 서울역)	남대문로5가 63-11 일원	면적 (㎡)	지상부	90.8	17.8.24 (서고2017-311 호)	-
					지하부	397.1		
				길이(m)		23.3		
				폭(m)		33.2 ~ 37.4		
				높이(m)		3.0~14.0		

■ 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비고
-	도시 철도 (1호선 서울역)	- 지하철 출입구 선형변경에 따른 면적 변경 - 면적 : 880.2㎡ → 487.9㎡ - 길이 : 42.6m → 23.3m - 폭 : 9.3~17.6m → 33.2~37.4m - 높이 : 18.5~44.9m → 3.0~14.0m	지하철출입구의 선형 조정 및 구분 지상권 설정을 통한 보행환경 개선	-

5. 정비기반시설 부담 및 설치에 관한 계획

가. 정비기반시설 부담 계획

구분	사업시행 면적 (㎡)	대지 면적 (㎡)	정비기반 시설면적 (㎡)	신설 정비 기반시설 내 기존 공공용지(㎡)	회지내 용도폐지 국공유지(㎡)	건축물 추가부담(토지환산부지)(㎡)	순부담율(%)			비고
							기반시설 (토지)	추가부담 (건축물)	합계	
기정	4,592.5	4,115.9	476.6	-	-	41.3	10.4	0.9	11.3	봉래구역 순부담율 11.3%
변경	4,592.5	4,115.9	476.6	11.9	275.2	882.7	3.6	17.0	20.6	

※ 순부담률 산출

= [(정비기반시설+추가기반시설부담)-기존국공유지]/[사업시행면적(대지+정비기반시설+추가기반시설부담)-기존국공유지]

= [(476.6㎡ + 882.7㎡) - 287.1㎡] / [(4,115.9㎡ + 476.6㎡ + 882.7㎡) - 287.1㎡] = 20.6%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전부개정('18.2)에 따른 무상양도 대상기준 변경으로 기존 국공유지 유상매입⇒무상양도로 변경

나. 기부채납시설 채납행정청(관리청) 지정조서

구분	시설명	위치	연면적(㎡)	비고(관리청)
기정	-	남대문로5가 63-1 일원	195.7	지상2층
변경	공공임대업무시설	남대문로5가 63-1 일원	5,249.8 내외	지상3~4층 (서울특별시장)

- ※ 공공임대업무시설은 서울특별시로 귀속되며, 서울특별시장이 운영 및 관리함
 ※ 향후 토지가격 및 건축계획 등에 따라 건축물의 면적·형태는 조정될 수 있음

6. 건축물의 정비·개량 및 건축시설계획

가. 기존 건축물의 정비·개량계획 : 변경없음

구분	구역구분		가구 또는 획지구분		위치	정비개량계획(등)					비고
	명칭	면적(㎡)	명칭	면적(㎡)		계	존치	개수	철거 후 신축	철거이주	
기정	봉래 제3지구	4,592.5	획지	4,115.9	남대문로5가 63-1 일원	29	-	-	29	-	-

나. 건축시설계획

결정 구분	구역구분		가구 또는 획지구분		위치	주된 용도	건폐율 (%)	용적률 (%)	높이(m) 최고층수	비고																															
	명칭	면적(㎡)	명칭	면적(㎡)																																					
기정	봉래구역 제3지구	4,592.5	획지1	4,115.9	남대문로5가 63-1 일원	업무 시설	60이하 (저층부65이하)	949.0 이하	90 이하	-																															
변경	봉래구역 제3지구	4,592.5	획지1	4,115.9	남대문로5가 63-1 일원	업무 시설	50이하	1,187.3 이하	139.2 이하	-																															
건축물 용적률 완화에 관한 계획	기정	• 용적률 : 949.0%이하 적용 ① 기준용적률 : 600.0% ② 허용용적률 : 200.0% <table><tr><th>목적</th><th>인센티브 완화 요건</th><th>산정방식</th><th>완화량</th></tr><tr><td rowspan="3">친환경 개발</td><td>녹색건축물 인증 (그린 1등급)</td><td rowspan="3">정량부여</td><td rowspan="3">100%</td></tr><tr><td>건축물에너지소비총량제(240kWh/㎡·y이하)</td></tr><tr><td>신재생에너지 이용시설 (11%이상)</td></tr><tr><td>기존도시조직보전</td><td>민간부문시행지침에 따라 기존 도시조직 보전시</td><td>정률부여</td><td>50%</td></tr><tr><td rowspan="2">보행가로활성화</td><td>재생관리지침에 따라 가로활성화 용도 도입시</td><td rowspan="2">정량부여</td><td rowspan="2">50%</td></tr><tr><td>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 최우수 등급시</td></tr></table> ③ 상한용적률 : 149.0% <table><tr><th>구분</th><th>인센티브 산식</th><th>적용내용</th><th>완화량</th></tr><tr><td>공공시설(도로)기부채납</td><td>허용용적률×1.3×α</td><td>800%×1.3×0.1158</td><td>120.4%</td></tr><tr><td>건축물 기부채납</td><td>허용용적률×1.3×α</td><td>800%×1.3×0.0102</td><td>10.6%</td></tr></table>									목적	인센티브 완화 요건	산정방식	완화량	친환경 개발	녹색건축물 인증 (그린 1등급)	정량부여	100%	건축물에너지소비총량제(240kWh/㎡·y이하)	신재생에너지 이용시설 (11%이상)	기존도시조직보전	민간부문시행지침에 따라 기존 도시조직 보전시	정률부여	50%	보행가로활성화	재생관리지침에 따라 가로활성화 용도 도입시	정량부여	50%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 최우수 등급시	구분	인센티브 산식	적용내용	완화량	공공시설(도로)기부채납	허용용적률×1.3×α	800%×1.3×0.1158	120.4%	건축물 기부채납	허용용적률×1.3×α	800%×1.3×0.0102	10.6%
		목적	인센티브 완화 요건	산정방식	완화량																																				
		친환경 개발	녹색건축물 인증 (그린 1등급)	정량부여	100%																																				
			건축물에너지소비총량제(240kWh/㎡·y이하)																																						
			신재생에너지 이용시설 (11%이상)																																						
		기존도시조직보전	민간부문시행지침에 따라 기존 도시조직 보전시	정률부여	50%																																				
		보행가로활성화	재생관리지침에 따라 가로활성화 용도 도입시	정량부여	50%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 최우수 등급시																																						
		구분	인센티브 산식	적용내용	완화량																																				
		공공시설(도로)기부채납	허용용적률×1.3×α	800%×1.3×0.1158	120.4%																																				
건축물 기부채납	허용용적률×1.3×α	800%×1.3×0.0102	10.6%																																						

결정 구분	구역구분		가구 또는 획지구분		위치	주된 용도	건폐율 (%)	용적률 (%)	높이(m) 최고층수	비고		
	명칭	면적(㎡)	명칭	면적(㎡)								
			구분		인센티브 산식		적용내용		완화량			
			지하철출입구 등 이전 및 구분 지상권 설정		허용용적률× (지하철출입구 등 연면적 /건축물연면적)		800%×(880.2㎡ /39,026.8㎡)		18.0%			
			계		-		149.0%					
	변경		• 용적률 : 1,187.3%이하 적용 ① 기존용적률 : 600.0% ② 허용용적률 : 200.0%									
			목적		인센티브 완화 요건				산정방식		완화량	
			녹지생태공간		개방형녹지 의무기준 30%초과설치시				정률부여		100%	
			친환경 개발		녹색건축물 인증 (그린3등급 이상)				정량부여		30%	
					건축물에너지소비총량제 (1+등급 이상)							
					신재생에너지 이용시설 (13.5% 이상)							
					전기차충전소 의무기준의 1/2이상 초과 설치시				정량부여		20%	
			보행가로활성화		가로지장물이전/지중화 또는 지하철출입구 이전시				정률부여		50%	
			공익시설		건축물 최상층에 공공공간(전망대) 조성시				정률부여		17.4%	
			③ 상한용적률 : 387.32%									
			구분		인센티브 산식		적용내용		완화량			
			토지(도로,건축물 대지지분) 기부채납		허용용적률×1.3× α		800%×1.3×0.1158		120.42%			
			건축물 기부채납 (토지,건축물)		허용용적률×1.2× α		800%×1.2×0.1447		138.93%			
			공개공지 초과조성		허용용적률×(의무면적을 초과하는 공개공지면적 /사업대지면적)		800%×(658.4㎡/4,115.9㎡)		127.97%			
			계				-		387.32%			

결정 구분	구역구분		가구 또는 획지구분		위치	주된 용도	건폐율 (%)	용적률 (%)	높이(m) 최고층수	비고
	명칭	면적(㎡)	명칭	면적(㎡)						
건축물의 높이 완화에 관한 계획	• 최고높이 : 139.2m 이하 적용 ① 기준높이 : 90m ② 개방형 녹지율에 따른 높이 : 42m									
	개방형 녹지율	$\begin{aligned} \text{산식} &= \text{적정건폐율}(50\%) \times (\text{기준높이}(90\text{m}) + 20\text{m}) \div (80\% - \text{개방형녹지율}(38.34\%)) \\ &= 50\% \times (\text{기준높이 } 90\text{m} + 20\text{m}) \div (80\% - 38.34\%) \end{aligned}$								
	③ 공개공지 초과제에 따른 높이 완화 : 7.2m									
	공개공지 초과제공	$\begin{aligned} \text{산식} &= \text{기준높이} \times (\text{의무면적을 초과하는 공개공지} \times 1/2) \div \text{대지면적} \\ &= 90\text{m} \times (658.4\text{㎡} \times 1/2) \div 4,115.9\text{㎡} \end{aligned}$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 건축한계선 - 세종대로변 : 3m - 통일로변 : 5m - 세종대로1길변 : 2m									
개방형녹지 계획	• 획지 내 30% 이상 개방형 녹지 조성 • 일반에게 개방하고, 휴식과 여가 공간이자 소통과 교류의 활력 공간으로 조성									
기타사항에 관한 계획	• 대지내 공지 - 간선가로변에 대지 내 조경 및 공개공지 집중배치 - 각 지구 내 전면공지를 포함하여 보행안전구간 확보									

7. 환경보전,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구분	계획내용	비고
환경보전	건설폐기물이 발생할 시 환경부예규 제734호 "건설폐기물의 처리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에 의거 최대한 재활용하며, 재활용이 불가능한 폐기물에 대하여는 전문처리업체에 위탁처리 및 중구 폐기물처리계획에 의거 처리토록 할 계획임	-
재난방지	- 건축물 안전기준 강화 - 기본계획 및 설계 확정 후 정확한 데이터를 반영하여 점검진 후 정밀 안전진단 보고서 제출 및 기존구조물 보강 후 사업 시행 예정	-

8. 정비구역 주변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 해당없음

9. 정비구역 및 주변지역의 주택수급에 관한 사항

가. 정비구역의 주택현실 현황

1) 건축물 동수

구역 내 건축물 동수			구역 내 건축물 동수		
계	주거용 건축물	비주거용 건축물	계	유허가	무허가
29	-	29	29	29	-

- 2) 거주현황 : 해당없음
3) 규모별 거주현황 : 해당없음

나. 정비사업으로 인해 새로 건축되는 주택 현황 : 해당없음

10. 세입자 주거대책 : 해당없음

11. 정비사업의 시행방법

사업시행방법	사업시행 예정시기	사업시행 예정자	정비사업 시행으로 증가예상 세대수	비고
재개발사업	정비구역지정(변경) 후 4년 이내	토지 등 소유자	-	-

12. 안전 및 범죄예방에 관한 사항

정비구역현황	안전 및 범죄예방에 관한 계획			비고
	착공전	착공~공사완료	범죄예방설계 적용	
업무 상업 시설	- 펜스 설치 및 유지·관리 1일 오전·오후 1회 우범 지역 순찰 - 방법용 CCTV 설치 운영 시설	-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기술진흥법, 건축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계 규정 준수 안전 시공 - 안전관리비 및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공사비 계상	- 주요 지점에 안내판 설치를 통해 보행자 인지도 제고 - 자체적 유지관리를 실시하여 노후화를 방지하고 범죄심리를 유발하는 요인 제거 - 주요 교차로 및 범죄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감시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CCTV 설치	-

13.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계획

구분	지구명	면적(㎡)	획지		면적(㎡)			비고
			획지번호	위치	기정	증감	변경	
기정	봉래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제3지구	4,115.9	-	남대문로5가 63-1 일원	4,115.9	-	4,115.9	-

14. 임대주택 및 소형주택의 건설에 관한 계획 : 해당없음

15. 주민의 소득원 개발에 관한 사항(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한정) : 해당없음

16. 환경성 검토결과 : 해당없음

17. 기존 수목의 현황 및 활용계획 : 해당없음

18. 인구 및 주택의 수용계획 : 해당없음
19. 주거환경관리를 위한 주민공동체 활성화 방안(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한정) : 해당없음
20. 구역 내 옛길, 옛물길,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건축자산 및 한옥 등 역사문화자원의 보전 및 활용계획 : 해당없음

Ⅲ. 지구단위계획 결정사항

1.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

가.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 : 변경없음

구분	지구명	위치	시행면적	구분		비고
				확지(㎡)	정비기반시설 등(㎡)	
기정	봉래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제3지구	중구 남대문로5가 63-1 일원	4,592.5	4,115.9	476.6	-

2. 용도지역·지구 결정 조서

가. 용도지역 결정 : 변경없음

구분	면적(㎡)			비율(%)
	기정	증감	변경	
일반상업지역	4,592.5	-	4,592.5	100.0

나. 용도지구 결정 : 변경없음

구분	지구명	위치	면적(㎡)	최초결정일
기정	방화지구	봉래동 48-3 일원	101,000 (4,592.5)	건설부고시 제317호('73.8.1.)

3. 도시계획시설 결정 조서

가. 교통시설

1) 도로 : 변경없음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광로	2	4	50~53 (53)	주간선 도로	1,500 (62)	세종로 광장	서울역앞	일반 도로	-	1936.12.26 (총고722)	세종 대로
기정	광로	3	11	40~43 (43)	주간선 도로	1,150 (75)	서울역 광장	서대문 광장	일반 도로	-	1936.12.26 (총고722)	통일로
기정	소로	1	-	10	국지 도로	103	봉래동 1가 6-23	봉래동 1가 126-2	일반 도로	-	2017.8.24 (서고2017-311호)	세종 대로 1길

※ ()는 대상지 내 폭원 및 연장임

2) 철도 : 변경

구분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폭 (m)	연장 (m)	면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철도	도시철도 (1호선 서울역)	서울역 광장 (봉래동2가 122-27일대)	11.4 ~32.4	288.2	8,932.7	71.3.26 (건고 158호)	· 중복결정 - 도로 : 8,475.0㎡ - 광장 : 8,191.5㎡ · 입체 결정 - 봉래3지구내 : 880.2㎡
변경	철도	도시철도 (1호선 서울역)	서울역 광장 (봉래동2가 122-27일대)	11.4 ~32.4	288.2	8,540.4	71.3.26 (건고 158호)	· 중복결정 - 도로 : 8,475.0㎡ - 광장 : 8,191.5㎡ · 입체 결정 - 봉래3지구내 : 487.9㎡

▶ 변경사유서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비고
-	철도	· 지하철 출입구 선형변경에 따른 면적 변경 -면적: 8,932.7㎡ → 8,540.4㎡(감 392.3㎡)	· 대상지 내 지하철 출입구 선형 변경에 따른 철도시설 면적 감소	-

3) 철도(정거장)입체적 결정조서 (3지구 대지 내)

구분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입체적 결정규모		최초 결정일	비고	
				구분	규모			
기정	철도	도시철도 (1호선 서울역)	남대문로5가 63-11 일원	면적 (㎡)	지상부	359.4	17.8.24 (서고2017-311호)	-
					지하부	520.8		
				길이(m)		42.6		
				폭(m)		9.3~17.6		
				높이(m)		18.5~44.9		
변경	철도	도시철도 (1호선 서울역)	남대문로5가 63-11 일원	면적 (㎡)	지상부	90.8	17.8.24 (서고2017-311호)	-
					지하부	397.1		
				길이(m)		23.3		
				폭(m)		33.2 ~ 37.4		
				높이(m)		3.0~14.0		

▶ 변경사유서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비고
-	도시철도 (1호선 서울역)	· 지하철 출입구 선형변경에 따른 면적 변경 - 면적 : 880.2㎡ → 487.9㎡ - 길이 : 42.6m → 23.3m - 폭 : 9.3~17.6m → 33.2~37.4m - 높이 : 18.5~44.9m → 3.0~14.0m	· 지하철출입구의 선형 조정 및 구분지상권 설정을 통한 보행환경 개선	-

4. 건축물의 용도 및 밀도에 관한 결정 조서

가. 건축물 용도에 관한 계획 : 변경없음

나. 건축물 밀도에 관한 계획

1) 건폐율 : 변경

구분	지구명	계획내용	비고
기정	제3지구	저층부65% 이하, 고층부60% 이하	-
변경	제3지구	50% 이하	-

2) 용적률 : 변경

구분	지구명	계획내용	비고
기정	제3지구	600% / 800% / 949% 이하	-
변경	제3지구	600% / 800% / 1,187.3% 이하	-

▶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사항

목적	인센티브	완화량	비고
녹지생태공간	개방형녹지 조성	100%	-
친환경개발	녹색건축물 인증, 에너지 효율등급, 신재생에너지 이용시설	30%	-
	전기차 충전소 설치	20%	-
보행가로활성화	가로지장물 이전 및 지중화	50%	-
공익시설	최상층 전망공간 조성	17.4%	-
합계		200% 적용	

▶ 상한용적률 인센티브 사항

구분	완화량	비고
토지, 건축물	259.35%	-
공개공지 초과 조성	127.97%	-
합계	387.3% 적용	

3) 높이 : 변경

구분	지구명	계획내용	비고
기정	제3지구	90m	-
변경	제3지구	139.2m	-

5. 건축물 배치에 관한 결정 조서

가. 건축물 배치에 관한 계획

1) 건축물 배치 : 변경

구분	계획내용	비고
기정	- 건축한계선 : 세종대로1길변 2m, 세종대로변 3m, 통일로변 5m - 고층부 벽면한계선 : 세종대로, 통일로변 8m	-
변경	건축한계선 : 세종대로1길변 2m, 세종대로변 3m, 통일로변 5m	-

6. 기타사항에 관한 결정 조서

가. 대지 내 공지에 관한 결정조서

1) 대지 내 공지 : 변경없음

구분	계획내용	비고
기정	- 간선가로변에 대지 내 조정 및 공개공지 집중배치 - 각 지구 내 전면공지를포함하여 보행안전구간 확보	-

나. 개방형 녹지에 관한 계획

1) 개방형 녹지 : 신설

구분	적용위치	면적	계획내용	비고
신설	제3지구	1,577.95㎡	- 조성계획 : 지구 남측, 동측, 서측 공개공지와 연계한 녹지 조성 - 유지관리 : 관리주체는 개방형녹지 기능이 유지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리 실시	-

※ 개방형녹지는 「녹지생태도심 개방형녹지 조성 및 운영관리기준」('24.01)준수

※ 개방형녹지의 개략적 범위 및 위치를 정한 것으로, 추후 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 범위 내에서 시 주관부서와 협의 하에 녹지(공개공지)형상 등은 조정 가능

다. 최상층 전망공간에 관한 사항

구분	적용위치	계획내용	비고
신설	전망 공간	최상층 (28층) - 특정시간 일반시민에게 무료로 개방되는 최상층 전망공간 조성 - 직접 연결가능한 전용 엘리베이터 설치 - 사업시행자 관리 및 적극적인 홍보를 통한 일반시민의 인지성 강화	-

※ 최상층 전망공간에 대한 면적 등은 세부 설계단계에서 조정될 수 있음

V.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과

□ 2024년 제3차(' 24.03.20.)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과 : '수정가결'

▶ 조건사항

1. 건축물 기부채납계획(서울시청사)은 대상지가 서울의 관문에 입지한 점을 고려할 때 세부용도 및 계획 위치가 적절하다고 보기 어려운 바, 최상층에 적정 기부채납시설 또는 일반시민에게 개방되는 전망공간 조성 등으로 적극 조정 검토할 것
2. 교통처리계획 관련 향후 교통영향평가지 다음 사항 적정성 면밀 검토
 - 2-1. 북측 도로(세종대로1길)의 통행체계(일방통행)은 기정 정비계획을 유지한 것이나, 연접한 타지구(4,5,6지구) 개발시를 고려하여 통행체계 조정 필요성을 검토할 것
 - 2-2. 세종대로에서 통일로로 연계되는 우회전 차선은 차량통행 안전성 확보 측면에서 신호등 설치 필요성 검토 등 대상지 일대 적정 교통처리 측면에서 검토 필요
3. 건축계획은 대상지의 입지적 중요성을 고려하여 랜드마크적인 건축물 도입 측면에서 입면계획 등 디자인 개선을 검토하고, 이와 연계하여 필요시 높이계획 조정 검토
4. 지구단위계획 결정 사항은 주관부서에서 금회 정비계획(안)의 주요내용 등을 반영하여 주요사항이 담보될 수 있도록 보완할 것
5. 대상지 착공전까지 횡단보도(대상지 전면~서울역) 미설치 시 기존 지하보행통로 출입구를 대지 내로 이설하는 계획을 반영할 것
6. 공공기여계획(전망공간 등) 및 건축계획 등은 상기 내용을 반영하여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추후 건축심의 전 도시계획위원회에 보고할 것

VI. 관계도면 : 붙임 참조

※ 첨부된 도면은 참고용이므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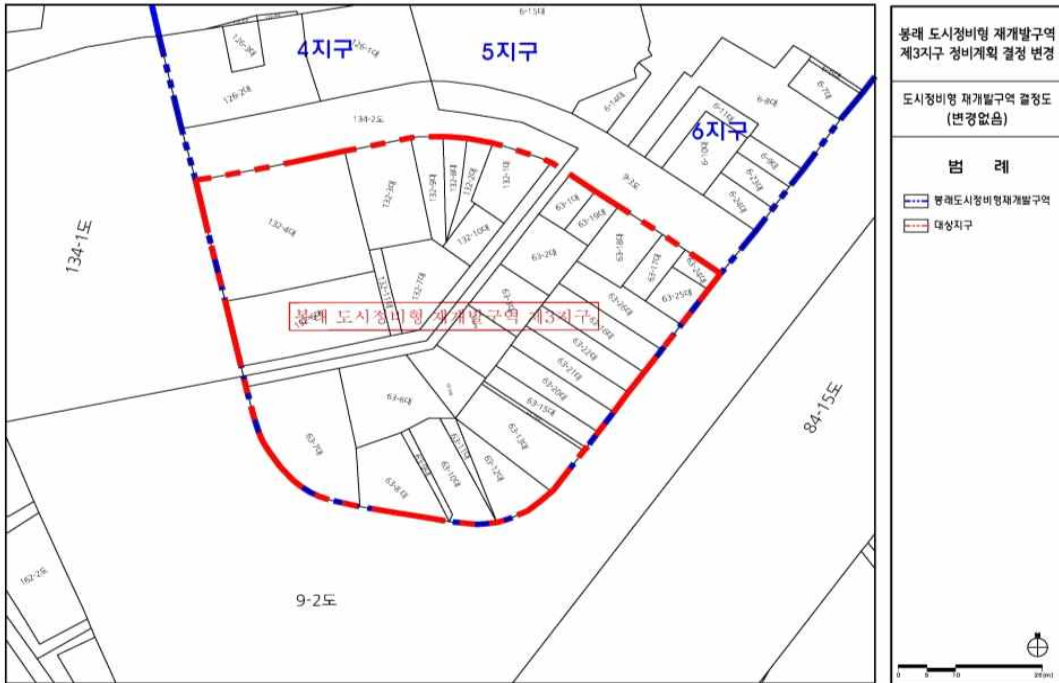
VII. 열람장소

－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도시재창조과(☎02-2133-4636) 및 중구청 도심정비과(☎02-3396-5773)에 관계 서류를 비치 및 열람하고 있습니다.

※ 고시문 및 지형도면은 토지이음(<http://eum.go.kr>)에 게시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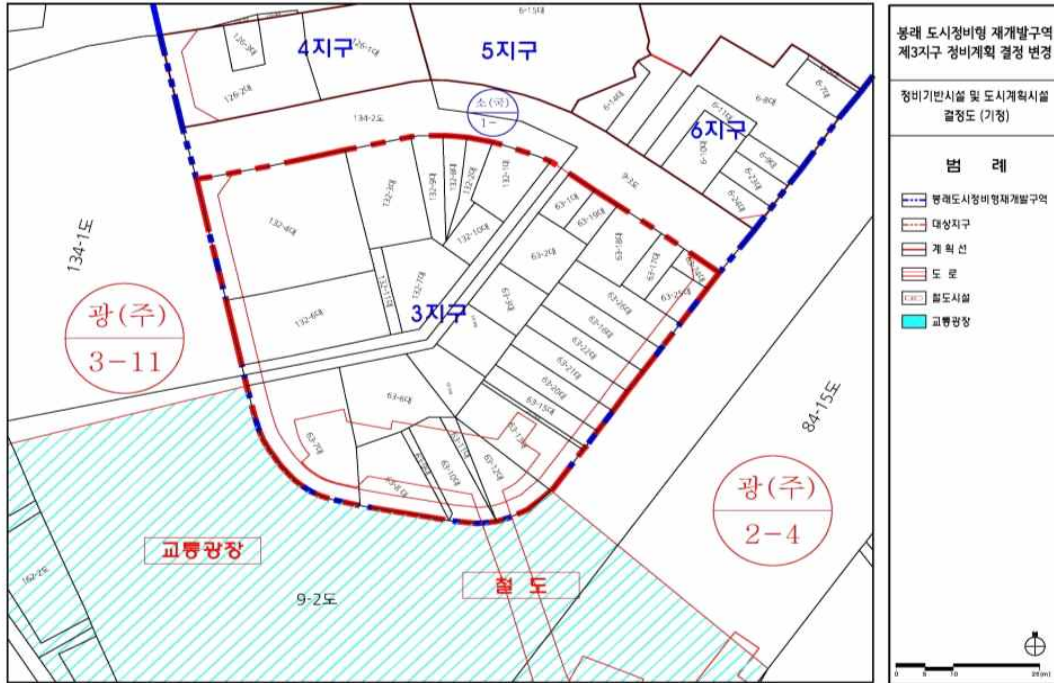
■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결정도(변경없음)



■ 용도지역·지구 결정도(변경없음)



■ 정비기반시설 및 도시계획시설 결정도(기정)



■ 정비기반시설 및 도시계획시설 결정도(변경)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4-325호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부분실효) 및 지형도면 고시

총독부 고시 제208호(1940.3.12.)로 결정되고,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0-254호(2020.6.29.)로 결정(변경)된 도시계획시설(공동근린공원)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결정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4년 7월 4일
서울특별시

1. 도시계획시설(공원)결정조서

구분	공원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변경	공동	근린공원	서대문구 연희동 산118-1	147,628.1	감) 164	147,464.1	1940.3.12. (총독부고시 제208호)	부분실효

2. 실효일자 : 2020. 7. 1
3. 실효사유 :

- 확정 판결된 「실시계획 인가고시 취소청구」 행정소송과 관련, 행정소송법 제30조에 따라 재 처분하고자 하며, 공원 내 기존 건물 저촉지역에 대하여 공원일부 실효

4. 관계도면 : 붙임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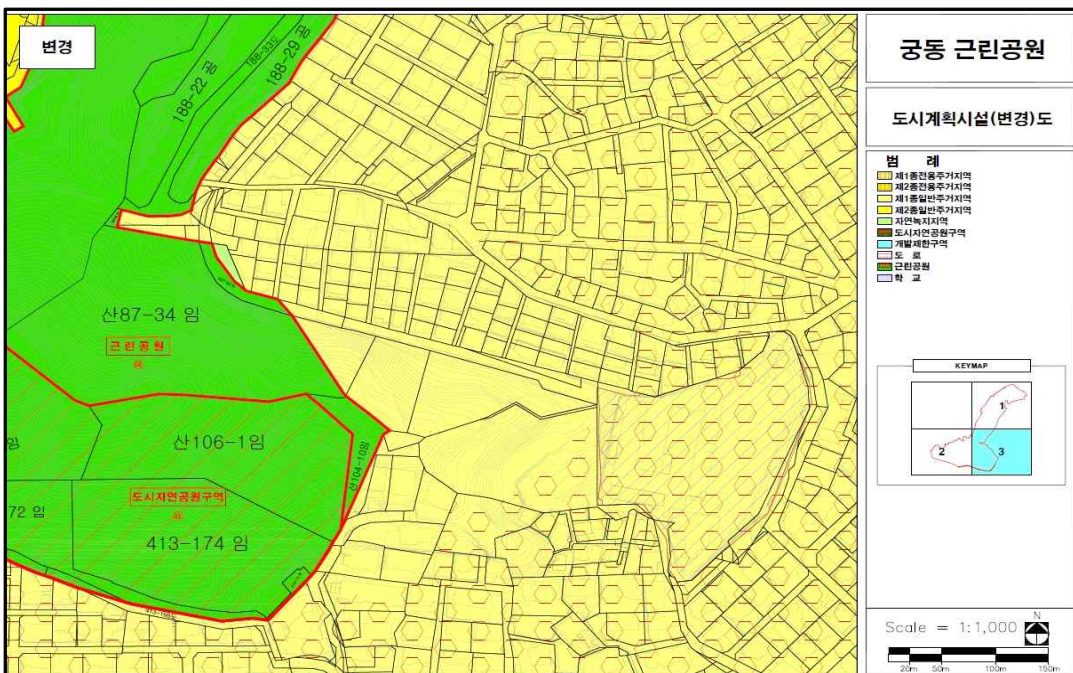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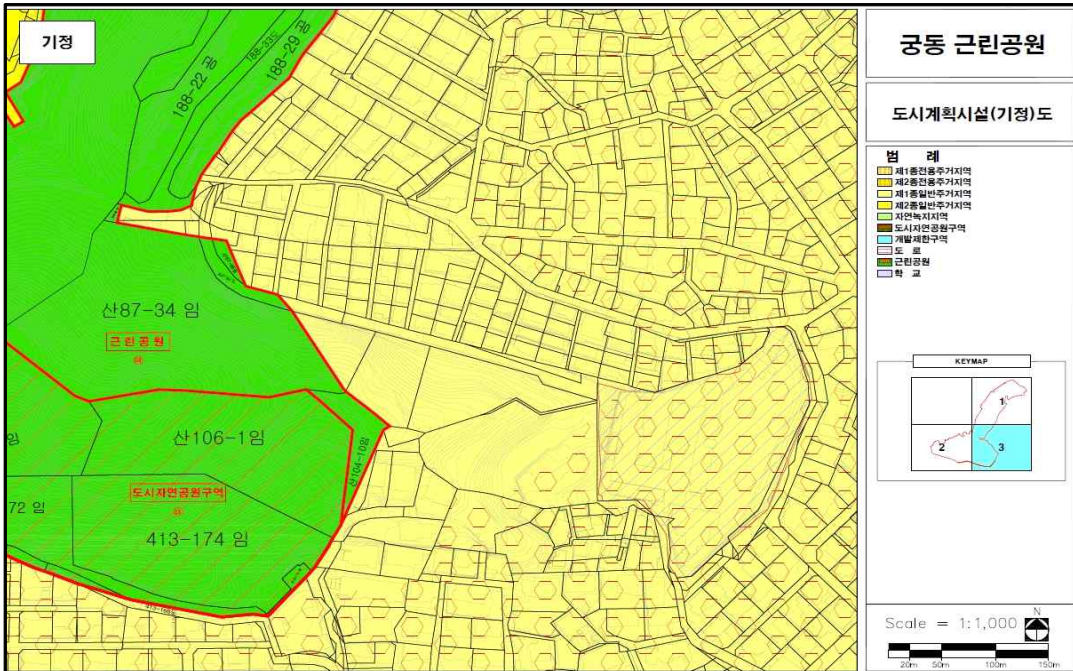
- ※ 첨부된 지형도면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5. 열람장소

서울특별시 공원조성과(☎02-2133-2067), 시설계획과(☎02-2133-8458), 서대문구 푸른 도시과(☎02-330-1396)에 관계도서를 비치하여 열람하고 있습니다.

- ※ 고시문 및 지형도면은 서울도시계획포털(<http://urban.seoul.go.kr>) 및 토지이음(<http://www.eum.go.kr>)에 게시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도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4-326호

2024년 제1회 서울특별시 추가경정예산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2024년 제1회 서울특별시 추가경정예산을 지방자치법 제149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7월 4일
서울특별시장

(단위 : 천원)

회 계 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총 계		47,303,251,496	1,100,000,000
일 반 회 계		34,193,239,888	1,000,000,000
특 별 회 계		13,110,011,608	100,000,000
공기업특별회계		1,913,845,650	100,000,000
(1)	수도사업특별회계	970,000,000	50,000,000
(2)	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943,845,650	50,000,000
기타특별회계		11,196,165,958	
(3)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	2,123,834,417	
(4)	교통사업특별회계	1,729,495,898	
(5)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223,792,175	
(6)	주택사업특별회계	2,400,873,089	
(7)	도시개발특별회계	1,685,819,210	
(8)	균형발전특별회계	176,620,256	
(9)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9,594,642	
(10)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1,789,628,485	
(11)	한강수질개선특별회계	31,871,052	
(12)	소방특별회계	1,024,636,734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4-327호

서울특별시무형유산 명예보유자 인정 고시

서울특별시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제20조 및 23조, 동조례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서울특별시무형유산 명예보유자를 인정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7월 4일
서울특별시장

서울특별시무형유산 명예보유자 인정

1. 인정 고시 내용

지정번호 및 명칭	성명	성별	생년월일	가예능	주소
제22호 마들농요	신진성	남	1943. 2. 1.	예능	서울시 노원구 상계로5길 12 106동 1403호

2. 인정일 : 2024. 7. 4.

3. 인정의 이유 : 신진성은 전승교육사 인정 이후 20년 이상 종목의 전승에 크게 기여해왔으나, 고령으로 인해 전승활동에 무리가 있어 명예보유자로 인정하고 전승교육사 인정은 해제함. 끝.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4-328호

보행자우선도로 지정 고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 제3항 규정에 따라 보행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통행을 위해 보행자우선도로를 지정하고자 고시합니다.

2024년 7월 4일
서울특별시

1. 지정대상 : 보행자우선도로 1개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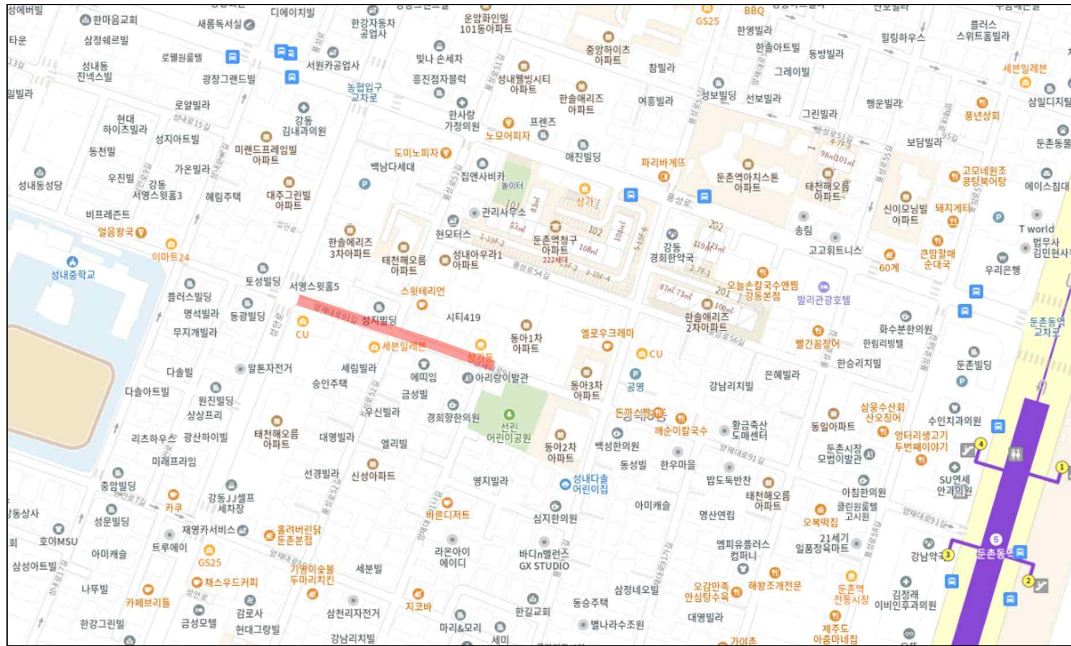
연번	자치구	도로명	폭원(m)	연장(m)
1	강동구	양재대로9길	5.5~9	130

2. 위치도(축척 없음) : 따로 붙임

3.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보행자전거과(☎02-2133-244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보행자우선도로 위치도

- 보행자우선도로 위치도
1) 강동구 양재대로91길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4-330호

서울특별시 개발제한구역 외의 지목별 평균 개별공시지가 고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4조(부담금의 산정기준)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부담금의 산정기준)에 따라 서울특별시 개발제한구역 외의 지목별 평균공시지가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7월 4일
서울특별시

1. 기준자료: 2024년 개별공시지가 기준
2. 서울특별시 개발제한구역 외의 지목별 평균 개별공시지가

(단위 : 원)

지목	개발제한구역 외의 지목별 평균 개별공시지가(원/㎡)	지목	개발제한구역 외의 지목별 평균 개별공시지가(원/㎡)
전	1,689,769	철도용지	3,280,485
답	1,751,664	제방	1,017,473
과수원	431,515	하천	646,718
목장용지	0	구거	1,851,451
임야	547,795	유지	2,417,603
광천지	0	양어장	0
염전	0	수도용지	1,209,931
대	7,626,316	공원	1,341,956
공장용지	5,537,431	체육용지	6,611,208
학교용지	4,638,408	유원지	4,261,770
주차장	4,496,031	종교용지	5,807,949
주유소용지	9,540,777	사적지	1,677,310
창고용지	3,695,885	묘지	799,706
도로	2,436,085	잡종지	2,145,644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4-335호

영등포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1. 서울특별시고시 제2003-372호(2003.11.18.)로 뉴타운 사업지구로 지정된 이후 서울특별시고시 제2005-411호(2005.12.22.)로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도시환경정비사업부문-영등포지역) 변경결정 및 영등포1도시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10-18호(2010.01.21.)로 영등포재정비촉진지구 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되어, 서울특별시고시 제2012-371호(2013.01.03.)로 영등포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 서울특별시고시 제2015-226호(2015.07.30.)로 정비구역 해제, 서울특별시고시 제2016-18호(2016.01.14.)로 영등포재정비촉진지구 변경 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148호(2017.04.27.)로 영등포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177호(2017.05.25.)로 영등포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280호(2017.08.03.)로 영등포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 서울특별시고시 제2018-12호(2018.01.18.)로 영등포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 서울특별시고시 제2019-155호(2019.05.23.)로 영등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 서울특별시고시 제2019-262호(2019.08.08.)로 영등포재정비촉진지구 변경 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 서울특별시고시 제2020-382호(2020.09.17.)로 영등포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 서울특별시고시 제2020-466호(2020.11.05.)로 영등포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 서울특별시고시 제2021-3호(2021.01.07.)로 영등포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 서울특별시고시 제2021-55호(2021.02.04.)로 영등포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 서울특별시고시 제2022-137호(2022.03.31.)로 영등포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 서울특별시고시 제2023-114호(2023.04.06.)로 영등포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 서울특별시고시 제2023-223호(2023.06.08.)로 영등포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된 영등포재정비촉진지구에 대하여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12조제1항 규정에 따라 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을 변경결정하고, 같은법 제12조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 영등포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4년 7월 4일
서울특별시장

가. 재정비촉진지구의 명칭 · 유형 · 위치 · 면적(변경)

명 칭	유 형	위 치	면 적(㎡)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영등포 재정비촉진지구	중심지형	영등포구 영등포동 2,5,7가 일원	144,609.9	증)3,299	147,908.9	18구역 편입

※ 1-18구역 : 2015.07.30.해제(서울시고시 제2015-226호)

나. 재정비촉진계획(변경)의 목적

- 사업구역은 역세권 및 간선도로의 교차지로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도시기능을 강화하고, 지역주민 및 1-14,18구역의 사업의지를 반영하고자 1-12,14,18구역을 통합하기 위하여 재정비촉진계획을 변경하고자 함

다. 재정비촉진사업의 완료 목표 연도(변경)

구 분	기 정	변 경	변 경 후	비 고
기준년도	2014년	-	2014년	-
목표년도	2025년	증) 2년	2027년	-

라. 추정분담금 추산액 및 산출근거

추정 비례율	- 추정비례율산정방식 : (총 수입-총 지출) / 종전자산 총액 × 100% - 추정비례율 : 114.20% - 총 수입 추정 : 14,693억 - 총 지출 추정 : 11,103억 - 종전자산총액 추정 : 3,143억																
개별종전자산 추정액	•약식감정평가한 금액 •토지는 인근 공시지가, 평가사세 및 거래사세 등을 기준으로 추정하였고, 건물은 원가법을 전제로 적정 재조달원가에 사용승인 일 기준 경과년수와 내용연수를 감안하여 추정 •구분건물은 인근 거래사세 등을 기초로 하여 추정하였음. - 전체 토지등소유자 종전자산가치 추정 : 약 4,884억원 · 사유지 : 3,698억원 · 국공유지 : 1,186억원 · 현금청산자예상액 : 555억원 - 종전자산총액 추정 : 약 3,143억원 (전체 토지등소유자 종전자산가치 - 국공유지 - 청산대상자 청산금)																
추정 분담금 산출	•추정분담금 산정방식 = 권리자 분양가 추정액 - (종전자산 추정액 × 추정비례율) <table border="1"> <tr> <th colspan="2">조합원분양예정금액(a)</th><th>추정 권리가액(b)</th><th>추정분담금(a-b)</th></tr> <tr> <td>전용39형</td><td>6.6억원</td><td rowspan="4">개별 종전자산 추정액 × 추정비례율(114.20%)</td><td rowspan="4">권리자 분양가 추정액 - 추정권리가액 (+ : 부담 V - : 환급)</td></tr> <tr> <td>전용59형</td><td>9.6억원</td></tr> <tr> <td>전용84형</td><td>12억원</td></tr> <tr> <td>전용99형</td><td>13.9억원</td></tr> </table>			조합원분양예정금액(a)		추정 권리가액(b)	추정분담금(a-b)	전용39형	6.6억원	개별 종전자산 추정액 × 추정비례율(114.20%)	권리자 분양가 추정액 - 추정권리가액 (+ : 부담 V - : 환급)	전용59형	9.6억원	전용84형	12억원	전용99형	13.9억원
조합원분양예정금액(a)		추정 권리가액(b)	추정분담금(a-b)														
전용39형	6.6억원	개별 종전자산 추정액 × 추정비례율(114.20%)	권리자 분양가 추정액 - 추정권리가액 (+ : 부담 V - : 환급)														
전용59형	9.6억원																
전용84형	12억원																
전용99형	13.9억원																

마. 재정비촉진지구의 개요

1) 토지이용계획에 관한 계획(변경)

구 분		면 적 (㎡)			비 율(%)	비 고
		기 정	증 감	변 경		
합 계		144,609.9	증) 3,299.0	147,908.9	100.0	
정비 기반 시설	소 계	49,449.9	증) 947.1	50,397.0	34.1	
	광 장	1,446.0	감) 1,446.0	-	-	
	도 로	37,886.8	감) 1,983.0	35,903.8	24.3	지하공공보도 중복결정
	공 원	8,404.3	증) 2,373.1	10,777.4	7.3	지하공공보도, 주차장 중복결정
	공공공지	-	증) 2,003.0	2,003.0	1.3	
	공공청사등	1,712.8	-	1,712.8	1.2	주차장1,사회복지시설과 중복결정(1~4구역)
주 상 복 합		59,904.9	감) 7,054.6	52,850.3	35.7	1~14구역(7,054.6㎡)
상 업 복 합		32,257.1	증) 9,406.5	41,663.6	28.2	1~12구역 금회통합(9,406.5㎡)
종 교 시 설		2,998.0	-	2,998.0	2.0	

2) 인구·주택 수용계획(변경)

(1) 주택공급계획

-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을 전체 세대수의 60%이상(전용면적 60㎡이하 전체세대수의 20%이상)
- 공공주택
 - 전체세대수의 15% 또는 전체연면적의 10%이상(상업지역은 전체세대수 또는 전체 연면적의 5%이상)
 - 40㎡ 이하 : 공공주택의 30% 이상 또는 전체 세대수의 5% 이상

※ 「재정비촉진지구 건축물 용도에 관한 운영기준 개선(‘22.1.26.)」에 따라 도시재정비 위원회 심의를 통해 주거 80% + 공공주택 10% + 비주거 10% 적용 가능

※ 오피스텔 등 준주택 및 생활숙박시설은 비주거용도에서 제외

구 분		주택수(호)				인구수(인)			
		기 정	변 경	변경후	비 율(%)	기 정	변 경	변경후	비 율(%)
촉 진 구	합 계	3,698	증)585	4,283	100.0%	9,762	증)1,521	11,283	100.0%
	임 대	736	증)200	936	21.9%	1,943	증)520	2,463	21.8%

구 분			주택수(호)				인구수(인)			
			기 정	변 경	변경후	비 율(%)	기 정	변 경	변경후	비 율(%)
역	분양	소계	2,962	증)385	3,347	78.1%	7,819	증)1,001	8,820	78.2%
		60㎡ 이하	1,171	감)179	992	23.2%	3,091	감)465	2,626	23.3%
		60 ~ 85㎡ 이하	1,594	증)438	2,032	47.4%	4,208	증)1,138	5,346	47.4%
		85㎡ 초과	197	증)126	323	7.5%	520	증)328	848	7.5%

3) 기반시설 설치계획(변경)

명칭	개소(노선)		면 적 (㎡)			비 고
	기 정	변 경	기 정	변 경	변 경 후	
도로	16	13	37,886.8	감) 1,983.0	35,903.8	- 중로2-4, 중로3-4, 중로2-5호선 폐지 등 - 지하공공보도 중복결정(공공임대상가)
공원	2	2	8,404.3	증) 2,373.1	10,777.4	- 문화공원(변경) - 5,444.9㎡→7,818.0㎡ 증)2,373.1㎡ - 지하주차장 중복결정(3,572㎡) - 지하공공보도 중복결정(공공임대상가)
						- 역사문화공원(변경없음) - 2,959.4㎡
광장	1	1	1,446.0	감) 1,446.0	-	
공공공지	1	1	-	증) 2,003.0	2,003.0	
주차장	1	2	1,712.8	증) 3,572.0	5,284.8	- 주차장1(변경없음) - 1,712.8㎡(1-4구역) - 공공청사1, 사회복지시설1과 중복결정
						- 주차장2(신설) ※ 지하 면적임 - 3,572.0㎡(1-12구역) - 문화공원과 중복결정(3,572.0㎡)

※ 1-12구역통합계획에 따른 기반시설계획 변경

4) 공원·녹지 조성 및 환경보전 계획(변경)

구 분	위 치	면 적 (㎡)			특 성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문화공원	영등포동5가 43-3 일대	5,444.9	증) 2,373.1	7,818.0	도시의 문화적 특징을 활용, 만남의 장소, 지역 중심	지하주차장, 지하보도 중복결정
역사공원	영등포동7가 155-22 일대	2,959.4	-	2,959.4	상산전 보전	-

※ 지상 문화공원, 지하 공영주차장, 지하보도(공공임대상가)는 1-12통합구역에서 일괄 설치 및 조성예정임

5) 교통계획(변경)

- 금회 1-12구역 통합계획에 따라 도로집적화를 위해 3개 노선을 폐지하며 그 외 도로 폭원 조정

구 분		폭 원	개 소		비 고
			기 정	변 경	
합 계		-	16	13	-
일반도로	중 로	12~20m	9	7	1-12구역통합계획에 따른 도로 변경
	소 로	6~10m	4	4	-
보행자 전용도로	중 로	12~20m	2	1	보행자전용도로2-5호선 지하부에는 지하보도 및 공공임대상가 개설
	소 로	6~10m	1	1	-

6) 재정비촉진구역의 지정에 관한 사항(변경)

구분	구역명	위 치	면 적(㎡)			사업방식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합 계(7개 구역 → 6개 구역)			144,609.9	증)3,299.0	147,908.9	-	18구역 편입
재 정 비 촉 진 구 역	영등포1- 2 재정비촉진구역	영등포동7가 76-5일대	5,392.0	-	5,392.0	도시환경 정비사업	-
	영등포1- 3 재정비촉진구역	영등포동7가 29-1일대	8,452.7	-	8,452.7	도시환경 정비사업	-
	영등포1- 4 재정비촉진구역	영등포동7가 145-8일대	58,422.1	-	58,422.1	도시환경 정비사업	-
	영등포1-11 재정비촉진구역	영등포동5가 30일대	17,391.8	-	17,391.8	도시환경 정비사업	-
	영등포1-12 재정비촉진구역	영등포동5가 22-3일대	16,256.0	증)14,959.0	31,215.0	도시환경 정비사업	1-14,18 구역통합
	영등포1-13 재정비촉진구역	영등포동5가 32-8일대	27,035.3	-	27,035.3	도시환경 정비사업	-
	영등포1-14 재정비촉진구역	영등포동5가 34-16일대	11,660.0	감)11,660.0	-	도시환경 정비사업	1-12구역 으로 통합

7) 재정비촉진사업별 용도지역 계획(변경)

구 역 명	구 분	면 적(㎡)			구성비 (%)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합 계	계	144,609.9	증) 3,299.0	147,908.9	100.0	18구역 편입
	준주거지역	103,761.9	감) 7,000.9	96,761.0	65.4	

구역명	구분	면적(㎡)			구성비 (%)	비고
		기정	변경	변경 후		
	일반상업지역	40,848.0	증) 10,299.9	51,147.9	34.6	
영등포1-2 재정비촉진구역	계	5,392.0	-	5,392.0	100.0	
	준주거지역	433.0	-	433.0	8.0	
	일반상업지역	4,959.0	-	4,959.0	92.0	
영등포1-3 재정비촉진구역	계	8,452.7	-	8,452.7	100.0	
	준주거지역	1,022.7	-	1,022.7	12.1	
	일반상업지역	7,430.0	-	7,430.0	87.9	
영등포1-4 재정비촉진구역	계	58,422.1	-	58,422.1	100.0	
	준주거지역	58,422.1	-	58,422.1	100.0	
	일반상업지역	-	-	-	-	
영등포1-11 재정비촉진구역	계	17,391.8	-	17,391.8	100.0	
	준주거지역	2,743.9	-	2,743.9	15.8	
	일반상업지역	14,647.9	-	14,647.9	84.2	
영등포1-12 재정비촉진구역	계	16,256.0	증) 14,959.0	31,215.0	100.0	1-12,14,18 통합
	준주거지역	2,444.9	증) 4,659.1	7,104.0	22.6	
	일반상업지역	13,811.1	증) 10,299.9	24,111.0	77.4	
영등포1-13 재정비촉진구역	계	27,035.3	-	27,035.3	100.0	
	준주거지역	27,035.3	-	27,035.3	100.0	
	일반상업지역	-	-	-	-	
영등포1-14 재정비촉진구역	계	11,660.0	감) 11,660.0	-	100.0	
	준주거지역	11,660.0	감) 11,660.0	-	100.0	
	일반상업지역	-	-	-	-	

* 용도지역 변경은 사업시행을 전제로 계획된 사항이므로, 용도지역 변경은 사업시행인가 이후 고시

8) 재정비촉진사업별 용적률, 건폐율 및 높이 등에 관한 건축계획

(1) 건축물 용도계획(변경없음)

구분	주된용도	비고
일반업무상업지역	판매, 근린생활, 업무, 주거	- 전체 구역 용도지역별 주거 비율 허용 - 일반상업 : 80% 이하 - 준주거 : 70% 미만 1-11,12구역의 주거와 용도비율 : 주거 80% + 공공주택 10% + 비주거 10% (한시적용)
혼합서비스지역	근린생활, 업무, 주거	



- ※ 1. 주거면면적비율은 일반상업지역 80% 이하, 준주거지역은 70% 미만 적용
 2. 1-4구역은 사업시행인가된 주거면면적 이내에서 주거면면적 비율 90% 미만 적용
 3. 1-11,12구역은 재정비촉진지구 건축물 용도에 관한 운영기준 개선('22.1.26)에 따라 공공주택 도입 시 주거비율 90% 이하 적용(주거 80% + 공공주택 10% + 비주거 10%)
 4.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도시환경정비사업부문)」에 의거 수용도가 업무시설일 경우 오피스텔 불허
 5.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건축물의 용도비율 및 용적률은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55조제3항 관련 [별표3] 개정사항(2019.3.28.) 및 2030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도시정비형재개발부문]을 따르되, 완화사항 적용시 「재정비촉진지구 건축물 용도에 관한 운영기준」('22.1.26)을 적용(단, 유효기간에 대해 도시계획조례가 개정 또는 폐지되는 경우 그에 따른다)
 6. 「2030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부문], 2023」에 재정비촉진지구에서 재정비촉진계획 수립 시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방식을 적용할 경우 정비예정구역으로 의제할 수 있으며, 공급요건 및 부문별 계획은 재정비촉진계획 별도 운영기준에 따른다.

(2) 건축물 높이계획(변경)

지 역	높이 및 층수		비 고
	기정	변경	
일반업무상업지역	150m 이하 (38층이하)	기준높이150m 최고높이 200m	※ 높이는 사업단위별 최고높이 ※ 층수는 평균층수를 말하며, 1개 층을 최대 4m로 적용하여 높이를 결정한다. ※ 공공시설부지제공 및 공개공지 등 초과제공에 따른 높이변화는 도심부에 준한다.
혼합서비스지역	120m 이하 (30층 이하)		



- ※ 2030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부문] 고시(서울특별시고시 제2023-50호)반영
 ※ 공공기여에 따라 최고높이 200m 이하 범위 내에서 완화 가능

(3) 재정비촉진구역별 건축 계획(변경)

■ 기정

결정구분	구 역 구 분		가 구 또는 획 지 구 분		위 치	건 축 시 설 계 획				
	명칭	면적 (㎡)	명칭	면적 (㎡)		주된용도	용적률(%)	건폐율(%)	층수(지하)/높이	주거면면적비율(%)
기정	합계	144,609.9	-	95,160.0	-	-	520이하	54이하	-	-
	1-2	5,392.0	-	3,930.4	영등포동7가 76-5 일대	판매, 근린생활, 업무, 주거	610이하	52이하	34F(6)/120m	800이하

결정 구분	구 역 구 분		가 구 또는 획 지 구 분		위 치	건 축 시 설 계 획				
	명칭	면적 (㎡)	명칭	면적 (㎡)		주된용도	용적률(%)	건폐율(%)	층수(지하) /높이	주거 연면적 비율(%)
	1-3	8,452.7	-	5,809.8	영등포동7가 29-1 일대	판매, 근린생활, 업무, 주거	610이하	55이하	31F(5) /120m	50미만
	1-4	58,422.1	1-4-1	35,547.2	영등포동7가 145-8 일대	근린생활, 업무, 주거	370이하	52이하	35F(3) /120m	90미만
			1-4-2	2,998.0	영등포동7가 148-18 일대	종교시설	관계법령에 따름			-
기정	1-11	17,391.8	-	11,981.1	영등포동5가 30 일대	판매, 근린생활, 업무, 주거	770이하	58이하	39F(7) /130m	90이하
	1-12	16,256.0	-	10,578.5	영등포동5가 22-3 일대	판매, 근린생활, 업무, 주거	750이하	59이하	38F(5) /130m	50미만
	1-13	27,035.3	-	17,260.4	영등포동5가 32-8 일대	판매, 근린생활, 업무, 주거	398이하	59이하	33F(4) /99m	70미만
	1-14	11,660.0	-	7,054.6	영등포동5가 34-16 일대	판매, 근린생활, 업무, 주거	380이하	55이하	24F(4) /80m	70미만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용		• 전용면적 85㎡ 이하 - 세대수 × 60% 이상 (전용면적 60㎡이하 전세세대수 x 20%이상) • 공공주택 - 전세세대수의 15% 또는 전체연면적의 10%이상 (상업지역은 전세세대수 또는 전체연면적의 5%이상) - 40㎡ 이하 : 공공주택의 30% 이상 또는 전세 세대수의 5% 이상			구분	전 용 면 적	세대수 (세 대)	비율 (%)	
						합계		3,698	100.0	
						임대		736	19.9	
						분양	60㎡ 이하	1,171	31.7	
							60~85㎡ 이하	1,594	43.1	
							85㎡ 초과	197	5.3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 30m이상 도로변 건축한계선 5m 후퇴지정 • 20m이하 도로변 건축한계선 2~3m 후퇴지정(1-9호선 보행자전용도로 제외. 단, 중2-5호선 건축한계선 지정) • 진입광장 인접 보행자 도로변 1층 벽면지정선 지정 • 보행의 연속성 확보가 필요한 구역에 1층 벽면한계선 5m 지정								

- ※ 1. 주용도는 당해 건축시설 중 가장 많은 면적을 차지하는 용도를 말함.
 2. 주용도의 비율은 건축물에 도입되는 용도의 종류에 따라 2가지 용도일 경우 50%이상, 3가지일 경우 34%이상으로 도입용도 중 가장 많은 비율로 계획하여야 함.
 3. 층수는 최고층수이며, 높이는 최고높이 기준으로, 다양한 높이계획을 권장함.
 4. 최고높이를 변경하지 않는 범위에서 최고층수 조정 가능
 5. 1-4구역은 사업시행인가된 주거연면적 이내에서 주거연면적 비율 90% 미만 적용
 6. 1-4구역 임대주택은 최소 200세대 이상으로 계획(단, 계획세대수 증가시 임대주택 건설 비용 준용하여 임대주택 추가 적용)
 7. 1-11구역은 재정비촉진지구 건축물 용도에 관한 운영기준 개설편('22.1.26)에 따라 공공주택 도입 시 주거비용 90% 이하 적용(주거 80% + 공공주택 10% + 비주거 10%)

8.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도시환경정비사업부문)」에 의거 주용도가 업무시설일 경우 오피스텔 불허
 9.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건축물의 용도비율 및 용적률은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55조제3항 관련 [별표3] 개정사항(2019.3.28.) 및 2030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도시정비형재개발부문]을 따르되, 원화사항 적용시 '재정비촉진지구 건축물 용도에 관한 운영기준'(22.1.26) '을 적용(단, 유효기간에 대해 도시계획조례가 개정 또는 폐지되는 경우 그에 따른다)

■ 변경

결정 구분	구 역 구 분		가구 또는 획지 구분		위 치	건 축 시 설 계 획				
	명칭	면적 (㎡)	명칭	면적 (㎡)		주된용도	용적률 (%)	건폐율 (%)	층수 (지하) /높이	주거 연면적 비율(%)
변경	합계	147,908.9	-	97,511.9	-	-	520이하	54이하	-	-
	1-2	5,392.0	-	3,930.4	영등포동7가 76-5 일대	판매, 근린생활, 업무, 주거	610이하	52이하	34F(6)/ 120m	80이하
	1-3	8,452.7	-	5,809.8	영등포동7가 29-1 일대	판매, 근린생활, 업무, 주거	610이하	55이하	31F(5)/ 120m	50미만
	1-4	58,422.1	1-4-1	35,547.2	영등포동7가 145-8 일대	근린생활, 업무, 주거	370이하	52이하	35F(3)/ 120m	90미만
			1-4-2	2,998.0	영등포동7가 148-18 일대	종교시설	관계법령에 따름			-
	1-11	17,391.8	-	11,981.1	영등포동5가 30 일대	판매, 근린생활, 업무, 주거	770이하	58이하	39F(7)/ 130m	90이하
	1-12	31,215.0	-	19,985.0	영등포동5가 22-3 일대	판매, 근린생활, 업무, 주거	750이하	59이하	49F(5)/ 200m	90이하
	1-13	27,035.3	-	17,260.4	영등포동5가 32-8 일대	판매, 근린생활, 업무, 주거	398이하	59이하	33F(4)/ 99m	70미만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		• 전용면적 85㎡ 이하 - 세대수 × 60% 이상 (전용면적 60㎡이하 전세세대수 x 20%이상) • 공공주택 - 전세세대수의 15% 또는 전체연면적의 10%이상 (상업지역은 전세세대수 또는 전체연면적의 5%이상) - 40㎡ 이하 : 공공주택의 30% 이상 또는 전세 세대수의 5% 이상			구분	전 용 면 적	세대수 (세대)	비율 (%)	
						합계		4,283	100.0	
						임대		936	21.9	
						분양	60㎡ 이하	992	23.2	
							60~85㎡ 이하	2,032	47.4	
							85㎡ 초과	323	7.5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 30m이상 도로변 건축한계선 5m 후퇴지정 • 20m이하 도로변 건축한계선 2~3m 후퇴지정(1~9호선 보행자전용도로 제외. 단, 중2~5호선 건축한계선 지정) • 진입광장 인접 보행자 도로변 1층 벽면지정선 지정 • 보행의 연속성 확보가 필요한 구역에 1층 벽면한계선 5m 지정							

- ※ 1. 주용도는 당해 건축시설 중 가장 많은 면적을 차지하는 용도를 말함.
 2. 주용도의 비율은 건축물에 도입되는 용도의 종류에 따라 2가지 용도일 경우 50%이상, 3가지일 경우 34%이상으로 도입용도 중 가장 많은 비율로 계획하여야 함.
 3. 층수는 최고층수이며, 높이는 최고높이 기준으로, 다양한 높이계획을 권장함.
 4. 최고높이를 변경하지 않는 범위에서 최고층수 조정 가능
 5. 1-4구역은 사업시행인가된 주거연면적 이내에서 주거연면적 비율 90% 미만 적용
 6. 1-4구역 임대주택은 최소 200세대 이상으로 계획(단, 계획세대수 증가시 임대주택 건설 비율 준용하여 임대주택 추가 적용)

7. 1-11, 12구역은 재정비촉진지구 건축물 용도에 관한 운영기준 개선('22.1.26)에 따라 공공주택 도입 시 주거비율 90% 이하 적용(주거 80% + 공공주택 10% + 비주거 10%)
8.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도시환경정비사업부문)」에 의거 주용도가 업무시설일 경우 오피스텔 불허
9.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건축물의 용도비율 및 용적률은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55조제3항 관련 [별표3] 개정사항(2019.3.28.) 및 2030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도시정비형재개발부문]을 따르되, 완화사항 적용시 '재정비촉진지구 건축물 용도에 관한 운영기준('22.1.26)'을 적용(단, 유효기간에 대해 도시계획조례가 개정 또는 폐지되는 경우 그에 따른다)

9) 기반시설의 비용분담계획(변경)

구분	구역구분		현형(㎡)		계획(㎡)		공공용지부담	
	명칭	면적(㎡)	대지(㎡)	공공용지(㎡)	대지(㎡)	공공용지(㎡)	면적(㎡)	비율(%)
기정	합계	144,609.9	111,745.2	32,819.0	95,160.0	49,449.9	16,630.9	14.9
변경		147,908.9	114,304.2	33,559.0	97,511.9	53,382.2	19,823.2	17.3
기정	1-2	5,392.0	4,334.2	1,057.8	3,930.4	1,461.6	403.8	9.3
기정	1-3	8,452.7	6,775.2	1,631.8	5,809.8	2,642.9	1,011.1	14.9
기정	1-4	58,422.1	45,105.9	13,316.2	38,545.2	19,876.9	6,560.7	14.5
기정	1-11	17,391.8	14,232.7	3,159.1	11,981.1	5,410.7	2,251.6	15.8
기정	1-12	16,256.0	12,677.6	3,578.4	10,578.5	5,677.5	2,099.1	16.6
	1-14	11,660.0	8,148.4	3,511.6	7,054.6	4,605.4	1,093.8	13.4
변경	1-12	31,215.0	23,385.0	7,830.0	19,985.0	14,215.2	6,385.2	27.3 (25.2)
기정	1-13	27,035.3	20,471.2	6,564.1	17,260.4	9,774.9	3,210.8	15.7

※ 1-12구역 공공용지 14,215.2㎡ : 건축물 환산면적 포함 면적(토지이용계획상 11,230㎡ + 건축물환산면적 및 공공임대주택 토지지분 2,985.2㎡)

※ 전체지구인 147,908.9㎡의 계획공공용지는 50,397㎡에 해당함: (50,397㎡+97,511.9㎡=147,908.9㎡)

단 부담률 산출상, 공공시설 환산면적까지 포함한 면적인 53,382.2㎡로 기재함

※ ()는 금회 1-12통합계획에 따른 용도지역 변경 최소부담율

※ 18구역(해제구역) 현황대지는 2,559㎡, 현황공공용지는 740㎡

○ 부담주체별 비용분담계획

구분	비용분담				비고
	시	구	교육청	민간	
공공공지	-	-	-	0	지상

구분	비용분담				비고
	시	구	교육청	민간	
문화공원	-	-	-	0	지상
도로	-	-	-	0	지하
공공임대주택	-	-	-	0	지상
공영주차장	-	-	-	0	지하
지하공공보도	-	-	-	0	지하
공공임대상가 (지하공공보도내)	-			0	지하

10) 임대주택 건설 등에 관한 계획(변경)

- 전체세대수의 15% 또는 전체연면적의 10%이상(상업지역은 전체세대수 또는 전체연면적의 5%이상)
- 40㎡ 이하 : 공공주택의 30% 이상 또는 전체 세대수의 5% 이상
- 전체연면적 X 10% 이상(주거연면적 완화시)
- (「재정비축진지구 건축물 용도에 관한 운영기준 개선(’22.1.26.)」)

구 분	구역명	계획세대수(세대)	분양주택(세대)	임대주택(세대)	비 고
기정	합 계	3,698	2,962	736	임대주택 200세대 증가
변경		4,283	3,347	936	
기정	1-2	218	149	69	
기정	1-3	185	185	-	
기정	1-4	1,221	1,021	200	
기정	1-11	818	647	171	
기정	1-12	413	378	35	1-14구역 통합 및 1-18 편입
변경		1,182	947	235	
기정	1-13	659	398	261	
기정	1-14	184	184	-	12구역으로 통합
변경		-	-	-	

11) 교통처리계획(변경)

○ 1-14구역은 1-12구역통합에 따라서 공공보행통로대상구역에서 제외

구 분	계 획 내 용		대 상 구 역	비 고
차량동선	• 차량진출입 불허		간선도로	간선도로 차량흐름의 방해 최소화
	• 주차출입구		이면도로, 배면도로	-
보행동선	기정	• 공공보행통로	1-4, 1-11, 1-12, 1-13, 1-14	-
	변경	• 공공보행통로	1-4, 1-11, 1-12, 1-13	-

바. 재정비촉진구역 지정(변경) 결정 조서

1) 영등포1-12 재정비촉진구역(변경)

(1)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변경)

구 분	명 칭	위 치		면 적(㎡)		비 고
		기정	변경후	기정	변경후	
재정비 촉진구역	영등포1-12 재정비촉진구역	영등포동5가 22-3 일대	영등포동5가 22-3 일대	16,256.0	31,215.0	1-12,14 통합 1-18 편입(3,299㎡)
	영등포1-14 재정비촉진구역	영등포동5가 34-16 일대		11,660.0		

(2) 토지이용계획(변경)

구 분	명 칭	면적(㎡)			비율(%)	비 고
		기정(12,14)	증(감)	변경		
합 계		27,916.0	증)3,299.0	31,215.0	100.0	
정비 기반 시설	소 계	10,282.9	증) 947.1	11,230.0	36.0	
	문화공원	2,615.9	증)1,580.1	4,196.0	13.5	- 중복결정(지하공공보도)
	공영주차장		(증)3,572.0)	(3,572.0)	-	- 공원지하중복결정(수평투영면적)
	광 장	1,036.0	감)1,036.0	-	-	
	도 로	6,631.0	감)1,600.0	5,031.0	16.1	- 중복결정(지하공공보도)
	공공공지	-	증)2,003.0	2,003.0	6.4	
택 지		17,633.1	증) 2,351.9	19,985.0	64.0	

- ※ 1-11구역 변경사항 : 보행자전용도로 646㎡, 광장 410㎡ (서울시고시 제2023-114호) → 총 1,056㎡ 문화공원으로 변경
 ※ 1-13구역 변경사항 : 문화공원 2,236.3㎡ (서울시고시 제2019-262호) → 1,973.3㎡ 감)263㎡
 도로 7,613.6㎡ (서울시고시 제2019-262호) → 7,876.6㎡ 증)263㎡
 ※ 1-12구역 통합계획에 따른 변경사항이며, 지상문화공원, 지하공영주차장, 지하공공보도(공공임대상가)는
 모두 1-12구역에서 조성 및 설치비용에 대해 일괄 부담예정임

(3) 도시계획시설 설치계획(변경)

○ 도로(변경)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위 치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결정일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 점	종 점				
기정	중로	2	1	15	집산 도로	153 (77)	영등포동5가 111	영등포동5가 41-2	일반 도로	-	서울시고시 제2005-411호 (2005.12.22)	
변경	중로	2	1	15	집산 도로	225 (148)	영등포동5가 111	영등포동5가 34-21	일반 도로	-	-	연장 변경
폐지	중로	2	4	15	집산 도로	156 (156)	영등포동5가 33-134	영등포동5가 18-8	일반 도로	-	서울시고시 제2005-411호 (2005.12.22)	
폐지	중로	2	5	15	특수 도로	88 (88)	영등포동5가 41-21	영등포동5가 20-62	보행자 전용도로	-	서울시고시 제2005-411호 (2005.12.22)	
기정	중로	3	1	12	국지 도로	121 (121)	영등포동5가 33-29	영등포동5가 6-1	일반 도로	-	서울시고시 제2005-411호 (2005.12.22)	
변경	중로	2	A	18	집산 도로	160 (160)	영등포동5가 33-29	영등포동5가 6-1	일반 도로		-	노선번호 및 연장, 폭원변경
폐지	중로	3	4	12	국지 도로	69 (69)	영등포동5가 13-1	영등포동5가 13-1	일반 도로	-	서울시고시 제2005-411호 (2005.12.22)	

※ ()는 구역내 면적임

○ 지하공공보도(변경)

구분	규모		기능	연장(m)	기점	종점	사용형태	최초 결정일	비고
	폭원(m)	면적(㎡)							
기정	18.3~91.6	18,714.1	특수도로	622.60	영등포역	영등포 시장역	지하도로	서고시71호 (1981.3.14.)	· 지하공공보도시설
변경	18.3~91.6 (15~74)	21,520.1 (3,868)	특수도로	622.60 (165)	영등포역	영등포 시장역	지하도로	서고시71호 (1981.3.14.)	· 지하공공보도시설 중복결정 (문화공원, 도로)

※ ()은 영등포 재정비촉진지구 내 면적임

○ 광장(변경)

구분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 적 (㎡)			최초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폐지	1	광장	일반광장	영등포동5가 20-69 일대	1,446.0 (1,036.0)	감)1,446.0 (1,036.0)	-	서울시고시 제2005-411호 (2005.12.22)	1-14(410㎡)

※ ()는 구역내 면적임

○ 주차장(결정)

구분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위치	면 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2	주차장	영등포동 5가34-18	-	증)3,572.0	3,572.0	-	문화공원 중복결정 : 3,572㎡

○ 공원(변경)

구분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 적 (㎡)			최초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변경	1	공원	문화공원	영등포동5가 43-3 일대	5,444.9 (2,615.9)	증) 2,373.1 (증 1,580.1)	7,818.0 (4,196.0)	서울시고시 제2005-411호 (2005.12.22)	주차장 중복결정 (3,572㎡)

※ 문화공원 및 지하 공영주차장은 1-12구역에서 일괄 설치 및 조성예정임

※ ()는 구역내 면적임

(4)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변경)

시 설 구 분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비 고
			기정	변경	
공동이용시설	경로당 및 경비실	영등포동5가 22-3 일대	-	600.0	면적은 관계법령에 따라 결정
	어린이집,어린이놀이터, 실내놀이터		-	1,990.0	
	보 육 시 설 (다함께돌봄센터,맘스스테이션)		-	150.0	
	주민운동시설,피트니스			880.0	
	문고(작은도서관)		-	220.0	
	합계				3,840.0

※ 관리사무소 : 200㎡

(5) 기존건축물의 정비·개량계획(변경)

○ 기존건축물의 정비·개량계획(변경)

결정 구분	구 역 구 분		가 구 또는 획 지 구 분		위 치	정 비 개 량 계 획 (동)				비 고
	명칭	면적(㎡)	명칭	면적(㎡)		계	존 치	철거후 신 축	철거 이 주	
기정	1-12	16,256.0	-	10,578.5	영등포동5가 22-3 일대	55	-	55	-	-
	1-14	11,660.0	-	7,054.6	영등포동5가 34-16 일대	68	-	68	-	
변경	1-12	31,215.0	-	19,985.0	영등포동5가 13일대	152	-	152	-	1-12, 14, 18 편입

○ 건축시설계획(변경)

결정구분	구역구분		가구 또는 획지 구분		위 치	건축시설계획																																				
	명칭	면적(㎡)	명칭	면적(㎡)		주된용도	건폐율 (%)	용적률 (%)	층수 (지하) /높이	주거 연면적 비율(%)																																
기정	1-12	16,256.0	-	10,578.5	영등포동5가 22-3 일대	판매, 근린생활, 업무, 주거	59 이하	750 이하	38F(5) /130m	50미만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 비율		• 전용면적 85㎡ 이하 - 세대수 × 60% 이상 (전용면적 60㎡이하 전체세대수 x 20%이상) • 공공주택 - 전체세대수의 15% 또는 전체연면적의 10%이상 (상업지역은 전체세대수 또는 전체연면적의 5%이상) - 40㎡ 이하 : 공공주택의 30% 이상 또는 전체 세대수의 5% 이상				<table><tr><th>구분</th><th>전용면적</th><th>세대수(세대)</th><th>비율(%)</th><th>비고</th></tr><tr><td colspan="2">합계</td><td>413</td><td>100.0</td><td></td></tr><tr><td rowspan="4">임대</td><td>60㎡ 이하</td><td>35</td><td>8.5</td><td></td></tr><tr><td>60㎡ 이하</td><td>280</td><td>67.8</td><td></td></tr><tr><td>60~85㎡ 이하</td><td>98</td><td>23.7</td><td></td></tr><tr><td>85㎡ 초과</td><td>-</td><td>-</td><td></td></tr></table>					구분	전용면적	세대수(세대)	비율(%)	비고	합계		413	100.0		임대	60㎡ 이하	35	8.5		60㎡ 이하	280	67.8		60~85㎡ 이하	98	23.7		85㎡ 초과	-	-					
							구분	전용면적	세대수(세대)	비율(%)	비고																															
합계		413	100.0																																							
임대	60㎡ 이하	35	8.5																																							
	60㎡ 이하	280	67.8																																							
	60~85㎡ 이하	98	23.7																																							
	85㎡ 초과	-	-																																							
변경	구역구분		가구 또는 획지 구분		위 치	건축시설계획																																				
	명칭	면적(㎡)	명칭	면적(㎡)		주된용도	건폐율 (%)	용적률 (%)	층수(지하) /높이	주거 연면적 비율(%)																																
	1-12	31,215.0	-	19,985.0	영등포동5가 22-3번지일대	판매, 근린생활, 업무, 주거	59이하	750이하	49F(5) /200m이하	90이하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 비율		• 전용면적 85㎡ 이하 - 세대수 × 60% 이상 (전용면적 60㎡이하 전체세대수 x 20%이상) • 공공주택 - 전체세대수의 15% 또는 전체연면적의 10%이상 (상업지역은 전체세대수 또는 전체연면적의 5%이상) - 40㎡ 이하 : 공공주택의 30% 이상 또는 전체 세대수의 5% 이상				<table><tr><th>구분</th><th>전용면적</th><th>세대수(세대)</th><th>비율(%)</th><th>비고</th></tr><tr><td colspan="2">합계</td><td>1,182</td><td>100.0</td><td></td></tr><tr><td rowspan="2">임대</td><td>60㎡ 이하</td><td>199</td><td>16.9</td><td></td></tr><tr><td>60~85㎡ 이하</td><td>36</td><td>3.0</td><td></td></tr><tr><td rowspan="3">분양</td><td>60㎡ 이하</td><td>179</td><td>15.1</td><td></td></tr><tr><td>60~85㎡ 이하</td><td>642</td><td>54.3</td><td></td></tr><tr><td>85㎡ 초과</td><td>126</td><td>10.7</td><td></td></tr></table>					구분	전용면적	세대수(세대)	비율(%)	비고	합계		1,182	100.0		임대	60㎡ 이하	199	16.9		60~85㎡ 이하	36	3.0		분양	60㎡ 이하	179	15.1		60~85㎡ 이하	642	54.3		85㎡ 초과	126	10.7
구분							전용면적	세대수(세대)	비율(%)	비고																																
합계		1,182	100.0																																							
임대	60㎡ 이하	199	16.9																																							
	60~85㎡ 이하	36	3.0																																							
분양	60㎡ 이하	179	15.1																																							
	60~85㎡ 이하	642	54.3																																							
	85㎡ 초과	126	10.7																																							

※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은 『10) 재정비촉진사업별 용적률·건폐율 및 높이 등에 관한 건축계획』에 따름)

※ 1. 주용도는 당해 건축시설중 가장 많은 면적을 차지하는 용도를 말함.

2. 주용도의 비율은 건축물에 도입되는 용도의 종류에 따라 2가지 용도일 경우 50% 이상, 3가지일 경우 34% 이상으로 도입용도중 가장 많은 비율로 계획하여야 함

3. 층수는 최고층수이며, 높이는 최고높이 기준으로, 다양한 높이계획을 권장함.

4. 최고높이를 변경하지 않는 범위에서 최고층수 조정

5.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도시환경정비사업부문)」에 의거 주용도가 업무시설일 경우 오피스텔 불허

6.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건축물의 용도비율 및 용적률은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55조제3항 관련 [별표3] 개정사항(2019.3.28.) 및 2030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도시정비형재개발부문]을 따르되, 완화사항 적용시 '재정비촉진지구 건축물 용도에 관한 운영기준'(22.1.26) '을 적용(단, 유효기간에 대해 도시계획조례가 개정 또는 폐지되는 경우 그에 따른다)

(6) 정비사업 시행계획(변경)

구 분	시행방법	시행예정 시기	사업시행예정자	정비사업 시행으로 증감 예상세대수	홍수등 취약요인에 대한 검토 결과	비 고
변 경 1-12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	영등포1-12재정비촉진구역 재개발정비사업조합	증) 585		12,14 통합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2018.02)에 따라 도시환경정비사업 →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으로 변경

(7)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계획(변경)

구 분	가 구	면 적(㎡)	획 지		비 고
			위 치	면 적(㎡)	
기 정	1-12	10,578.5	영등포동5가 22-3 일대	10,578.5	
	1-14	7,054.6	영등포동5가 34-16 일대	7,054.6	
변 경	1-12	19,985 (증2,351.9)	영등포동5가 22-3 일대	19,985 (증2,351.9)	12,14,18 통합

(8) 공공주택의 건설에 관한 계획(변경)

구분		건 립 위 치	부지 면적 (㎡)	동수 (동)	연면적 (㎡)	세대수 (세대)	세대규모 (전용)				비 고
기정	1-12	영등포동5가 32-8 일대 (영등포1-12구역 내)	-	-	-	35	40㎡ 이상				
	1-14	해당사항없음									
변경	1-12	영등포동5가 32-8 일대 (영등포1-12구역 내)	-	-	29,530.4	235	구분	공공임대	기부채납 공공임대	공공지원 민간임대	소셜 믹스
							39㎡	62세대	-	-	
							59㎡	127세대	10세대	-	
							84㎡	10세대	-	26세대	
							합산	199세대	10세대	26세대	

※ 재정비촉진지구 건축물 용도에 관한 운영기준 개선('22.1.26)에 따라 공공주택 도입 시 주거비를 90% 이하 적용(주거 80% + 공공주택 10% + 비주거 10%)

※ 공공임대 199세대에는 주거비율완화에 따른 의무 임대주택비율(재정비촉진지구 건축물 용도에 관한 운영기준) 및 정비사업 의무 임대주택비율(서울시 재개발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고시)이 포함. 199세대에 관한 매입방식은 주택은 표준건축비로 매입하고, 부속도지는 기부채납(재정비촉진지구 건축물 용도에 관한 운영기준 적용)

(9) 공공임대상가에 관한 사항(변경)

○ 문화공원 및 도로 지하부에 계획

구 분	위 치	점포수(개소)	연면적(㎡)	비 고
합 계	-	65	3,850	
문화공원 및 도로 지하부	영등포동5가 23-7번지 일원 지하부	65	3,850	

사.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변경)

1) 용도지역 결정 조서(변경)

구 분	면 적 (㎡)			구 성 비 (%)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 계	144,609.9	증) 3,299.0	147,908.9	100.0	-
준주거지역	103,761.9	감) 7,000.9	96,761.0	65.4	-
일반상업지역	40,848.0	증) 10,299.9	51,147.9	34.6	-

2) 용도지구 결정 조서(변경없음)

3) 도시계획시설 결정 조서(변경)

(1) 교통시설(변경)

○ 도로(변경)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위 치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결정일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 점	종 점				
기정	중로	1	1	20	집산 도로	320	영등포동7가 23-1	영등포동7가 3-1	일반 도로	-	서울시고시제2005-411 호 (2005.12.22)	1-3,1-4, 1-13구역
기정	중로	1	6	20	집산 도로	322	영등포동7가 92-15	영등포동2가 1-1	일반 도로	-	서울시고시제2005-411 호 (2005.12.22)	1-4구역
기정	중로	1	7	20	특수 도로	235	영등포동7가 109	영등포동7가 13	보행자 전용도로	-	서울시고시제2005-411 호 (2005.12.22)	1-4구역
기정	중로	1	8	20	집산 도로	143	영등포동7가 3-2	영등포동2가 440-1	일반 도로	-	-	1-4,1-13구역
기정	중로	2	1	15	집산 도로	153	영등포동5가 111	영등포동5가 41-2	일반 도로	-	서울시고시제2005-411 호 (2005.12.22)	1-11,1-12 구역
변경	중로	2	1	15	집산 도로	225	영등포동5가 111	영등포동5가 34-21	일반 도로	-	-	연장 변경
기정	중로	2	2	15	집산 도로	178	영등포동5가 40-4	영등포동5가 105-1	일반 도로	-	서울시고시제2005-411 호 (2005.12.22)	1-11구역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위 치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결정일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 점	종 점				
기정	중로	2	3	15	집산 도로	312	영등포동5가 143	영등포동2가 411	일반 도로	-	-	1-13구역
폐지	중로	2	4	15	집산 도로	156	영등포동5가 33-134	영등포동5가 18-8	일반 도로	-	서울시고시제2005-411 호 (2005.12.22)	1-12,1-14구역
폐지	중로	2	5	15	특수 도로	88	영등포동5가 41-21	영등포동5가 20-62	보행자 전용도로	-	서울시고시제2005-411 호 (2005.12.22)	1-11,1-12구역
기정	중로	3	1	12	국지 도로	121	영등포동5가 33-29	영등포동5가 6-1	일반 도로	-	서울시고시제2005-411 호 (2005.12.22)	1-14구역
변경	중로	2	A	18	집산 도로	160	영등포동5가 33-29	영등포동5가 6-1	일반 도로	-	-	노선번호 및 연장, 폭원변경
폐지	중로	3	4	12	국지 도로	69	영등포동5가 13-1	영등포동5가 13-1	일반 도로	-	서울시고시제2005-411 호 (2005.12.22)	1-14구역
기정	소로	1	1	10	국지 도로	43	영등포동7가 76	영등포동7가 75-3	일반 도로	-	서울시고시제2005-411 호 (2005.12.22)	1-2구역
기정	소로	1	2	10	국지 도로	253	영등포동7가 76-1	영등포동7가 23	일반 도로	-	서울시고시제2005-411 호 (2005.12.22)	1-2,1-3구역
기정	소로	1	9	10	특수 도로	83	영등포동7가 144-17	영등포동7가 145-7	보행자 전용도로	-	서울시고시제2005-411 호 (2005.12.22)	1-4구역
기정	소로	1	10	10	국지 도로	43	영등포동7가 76-1	영등포동7가 144-2	일반 도로	-	서울시고시제2005-411 호 (2005.12.22)	1-2,1-3구역
기정	소로	3	2	4	국지 도로	45	영등포동2가 438-14	영등포동2가 435-35	일반 도로	-	-	1-4구역

○ 지하공공보도(변경)

구분	규모		기능	연장(m)	기점	종점	사용형태	최초 결정일	비고
	폭원(m)	면적(㎡)							
기정	18.3~91.6	18,714.1	특수도로	622.60	영등포역	영등포 시장역	지하도로	서고시71호 (1981.3.14.)	· 지하공공보도시설
변경	18.3~91.6 (15~74)	21,520.1 (3,868)	특수도로	622.60 (165)	영등포역	영등포 시장역	지하도로	서고시71호 (1981.3.14.)	· 지하공공보도시설 · 중복결정 (중로2-5호선, 광장)

※ ()은 영등포 재정비촉진지구 내 사항임

○ 주차장(변경)

구분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위치	면 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1	주차장	영등포동 2가 435-4일대	1,712.8	-	1,712.8		1-4구역 공공청사1, 사회복지시설1과 중복결정
신설	2	주차장	영등포동 5가 34-18	-	증)3,572.0	3,572.0	-	1-12통합구역 문화공원과 중복결정(3,572㎡)

○ 철도(변경없음)

(2) 공간시설(변경)

○ 광장(변경)

구분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 적 (㎡)			최초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폐지	1	광장	일반광장	영등포동5가 20-69 일대	1,446.0	감)1,446.0	-	서울시고시 제2005-411호 (2005.12.22)	

○ 공원(변경)

구분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 적 (㎡)			최초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변경	1	공원	문화공원	영등포동5가 43-3 일대	5,444.9	증)2,373.1	7,818.0	서울시고시 제2005-411호 (2005.12.22)	1-12구역 주차장 중복결정 : 3,572㎡
기정	2	공원	역사공원	영등포동7가 155-22 일대	2,959.4	-	2,959.4	서울시고시 제2008-373호 (2008.10.23)	-

(3) 공공문화체육시설(변경없음)

4. 관계도면 및 기타 자세한 내용은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도서 참조 : 생략 (비치한 도서와 같음)

-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 지형도면(첨부된 지형도면)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5.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재정비촉진과(☎ 02-2133-7218) 및 영등포구 주거사업과(☎ 02-2670-3802)에 관계도서를 각각 비치하고 있습니다.

■ 재정비촉진지구 결정도(기정)



--- 재정비촉진지구계

PROJECT TITLE 사업명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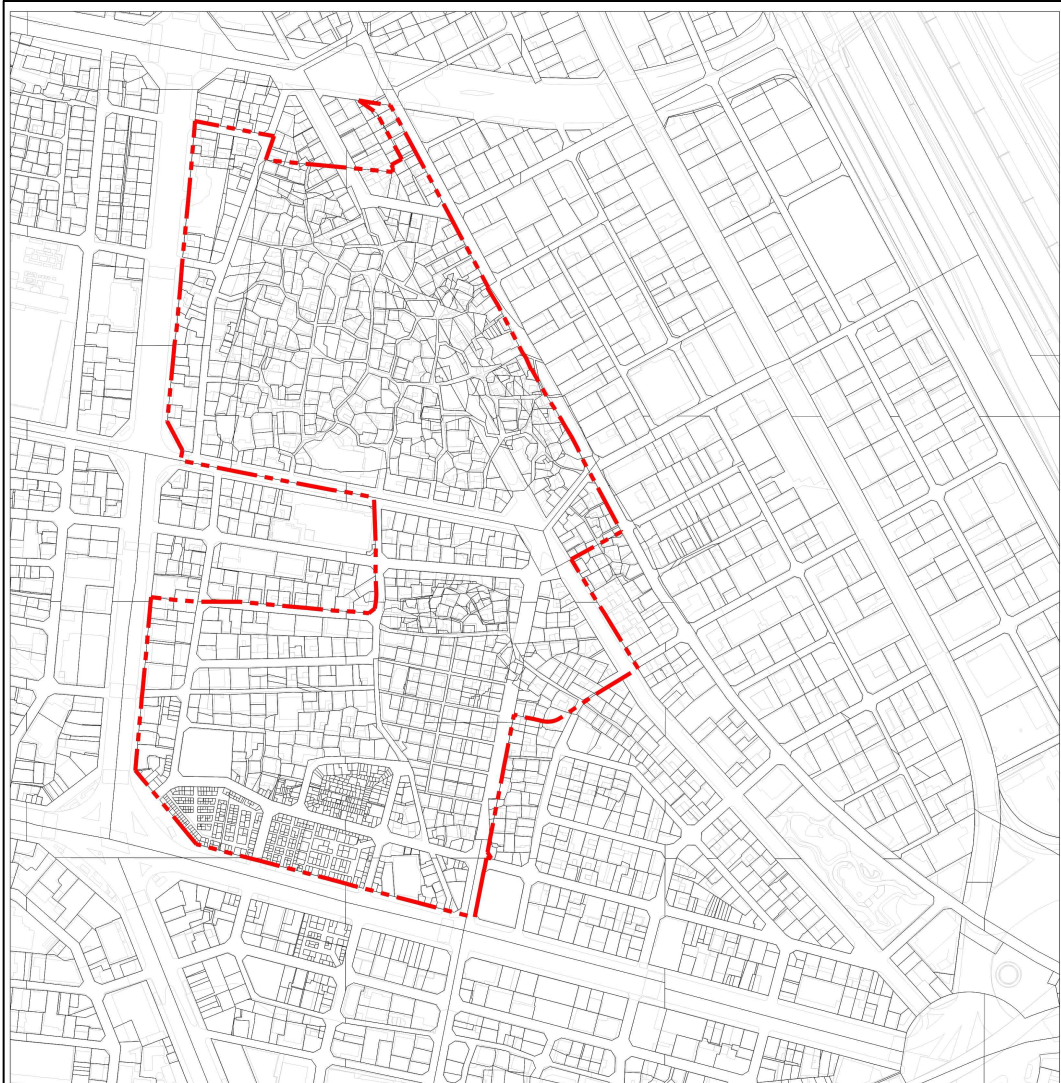
영등포 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

NAME OF DRAWING 도면명

재정비촉진지구 결정도(기정)



■ 재정비촉진지구 결정도(변경)



--- 재정비촉진지구계

PROJECT TITLE 사업명칭

영등포 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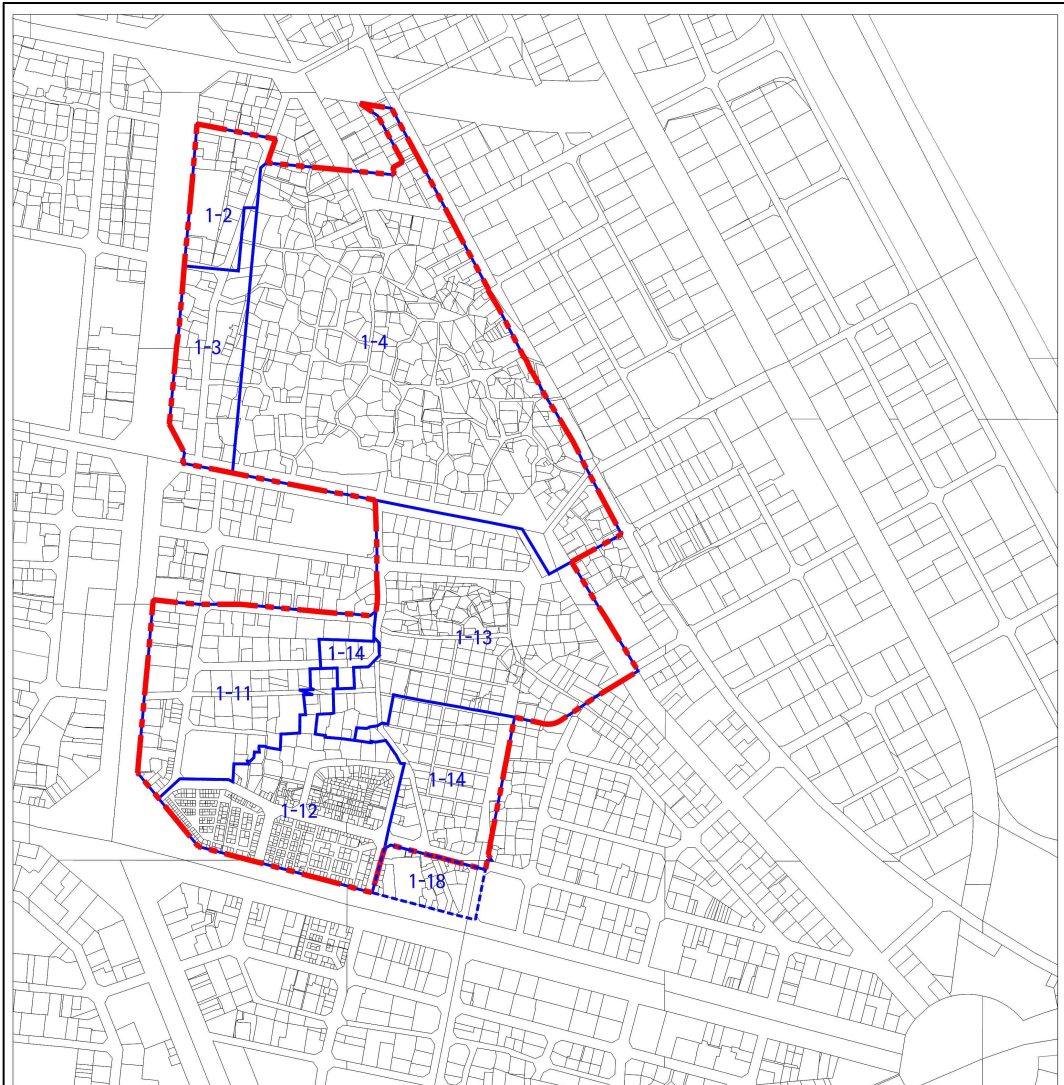
NAME OF DRAWING 도면명

재정비촉진지구 결정도(변경)

0 50 100 250m



■ 정비구역 결정도(기정)



- 재정비촉진지구계
- 재정비촉진구역계
- 재정비촉진 해제구역계

PROJECT TITLE 사업명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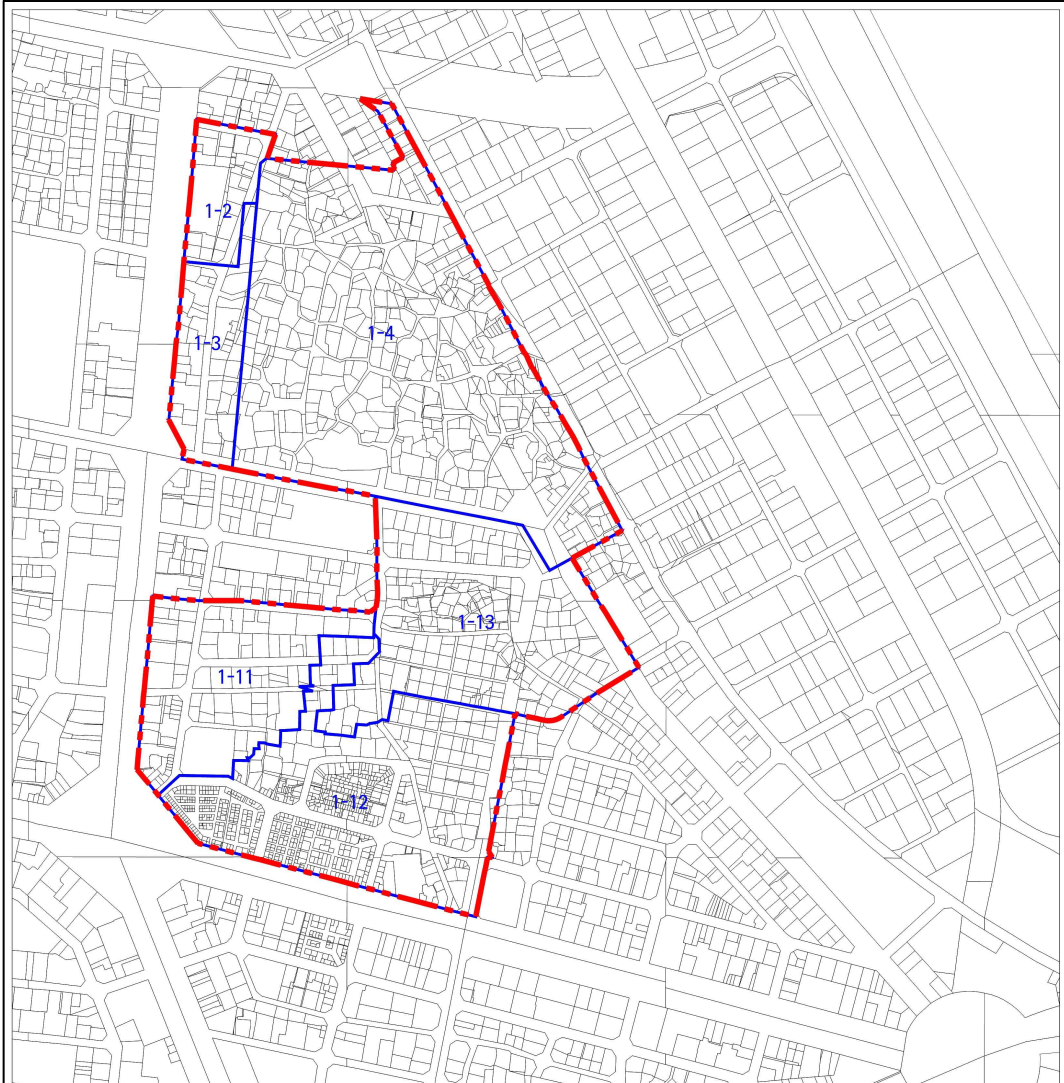
영등포 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

NAME OF DRAWING 도면명

재정비촉진구역 결정도 (기정)



■ 정비구역 결정도(변경)



- 재정비촉진지구계
- 재정비촉진구역계

PROJECT TITLE 사업명칭

영등포 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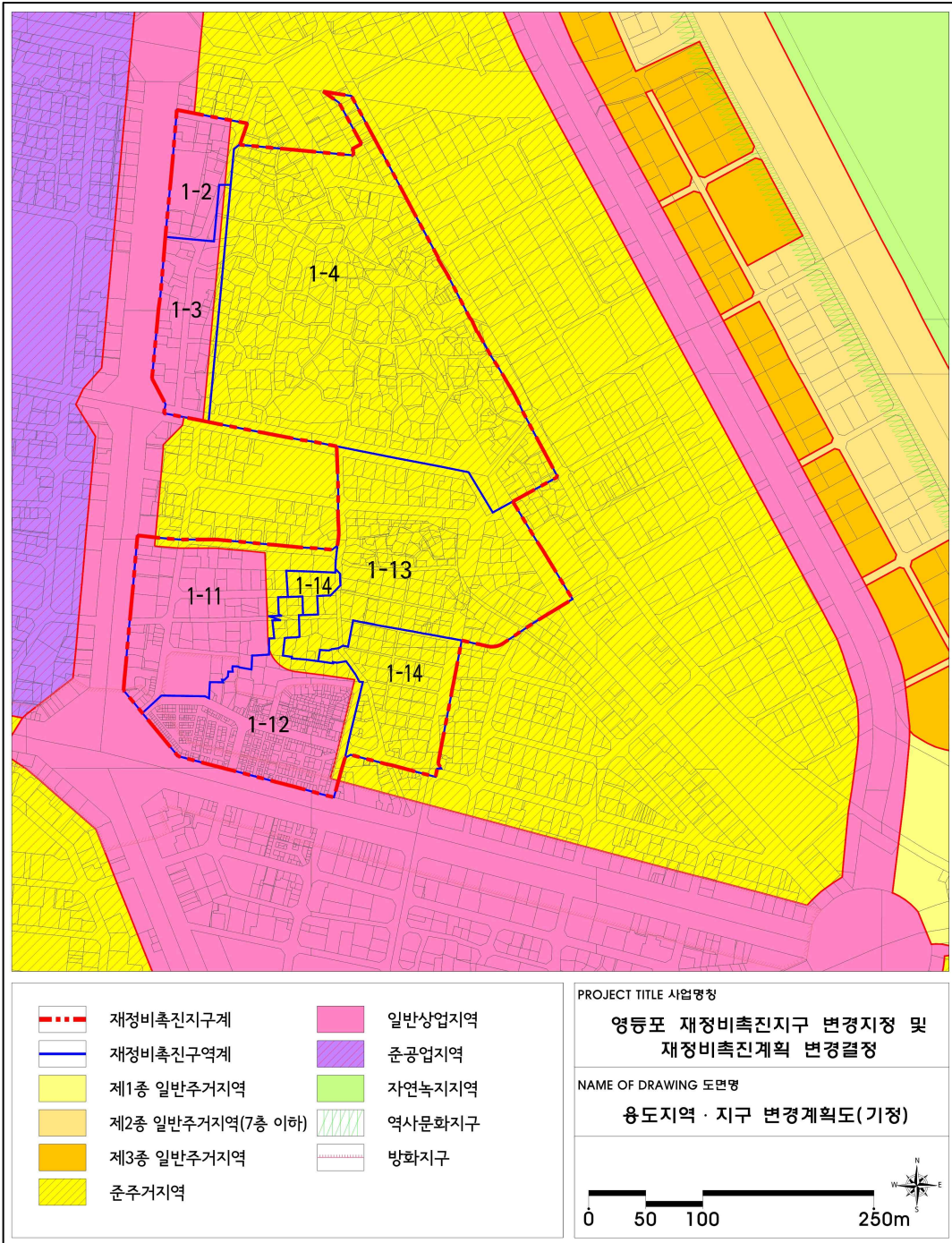
NAME OF DRAWING 도면명

재정비촉진구역 결정도(변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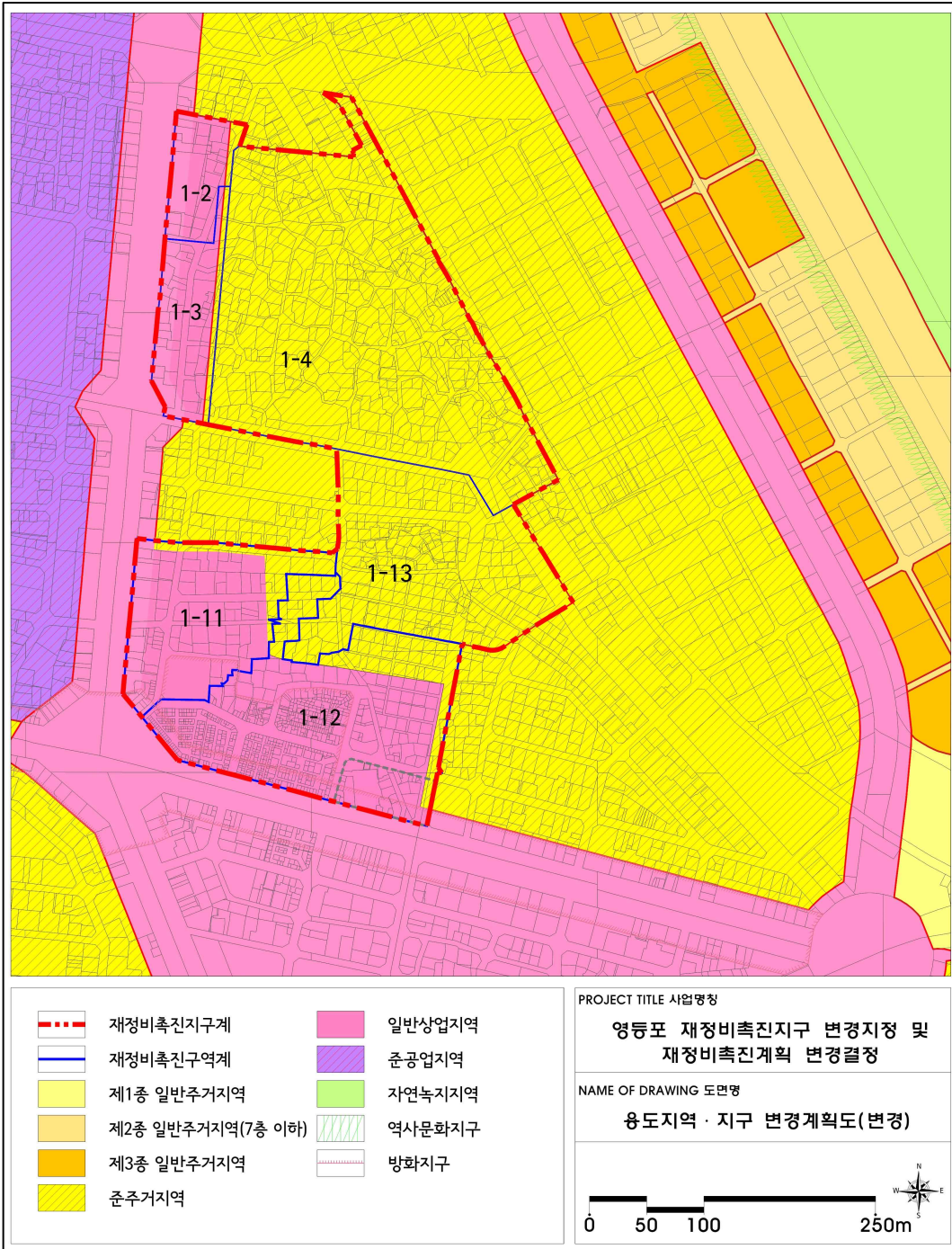
0 50 100 250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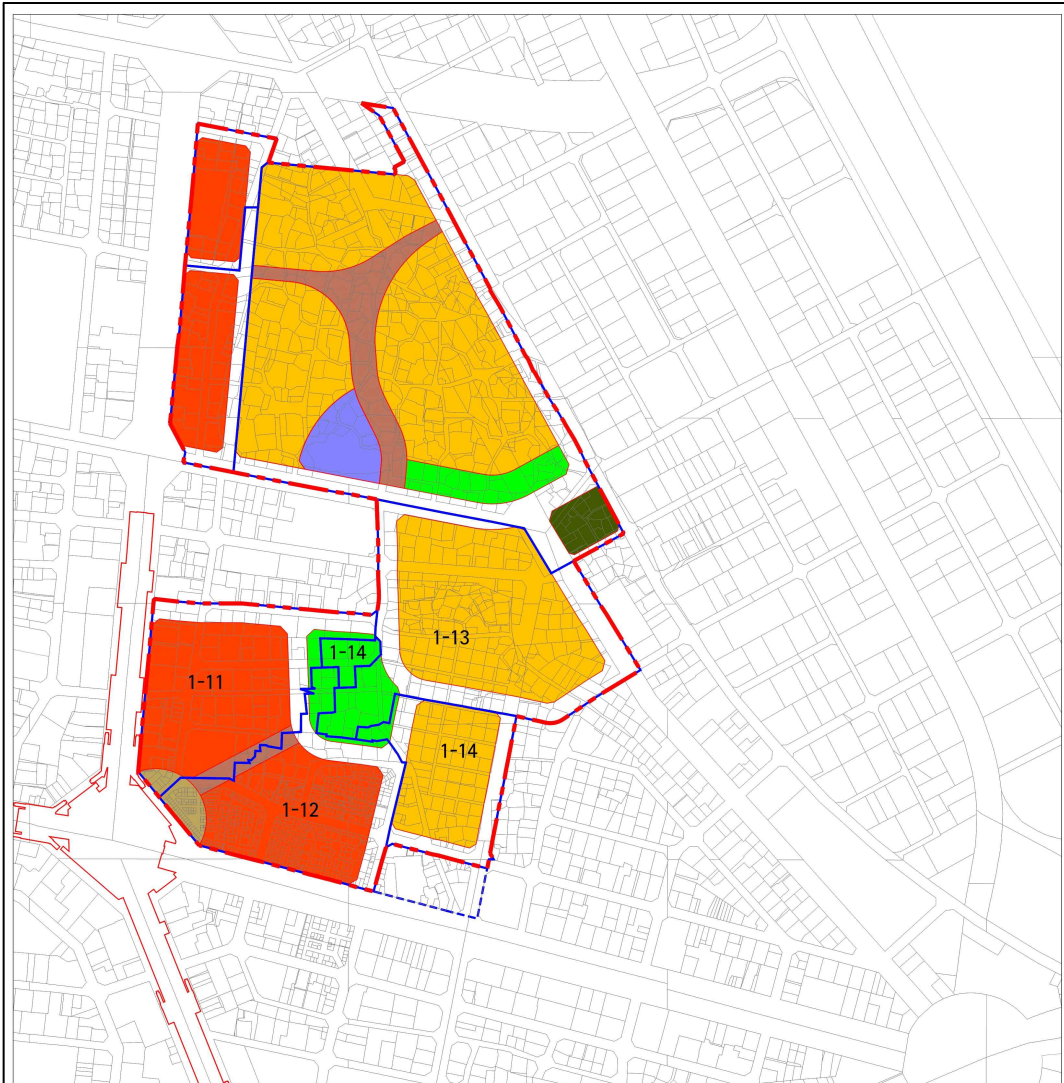
■ 용도지역 · 지구 결정도(기정)



■ 용도지역 · 지구 결정도(변경)



■ 토지이용계획도(기정)



- | | | | |
|--|----------|--|----------------------|
| | 재정비촉진지구계 | | 종교용지 |
| | 재정비촉진구역계 | | 보행자전용도로 |
| | 주상복합 | | 공원 |
| | 상업복합 | | 광장 |
| | 도로 | | 공공청사, 주차장,
사회복지시설 |

PROJECT TITLE 사업명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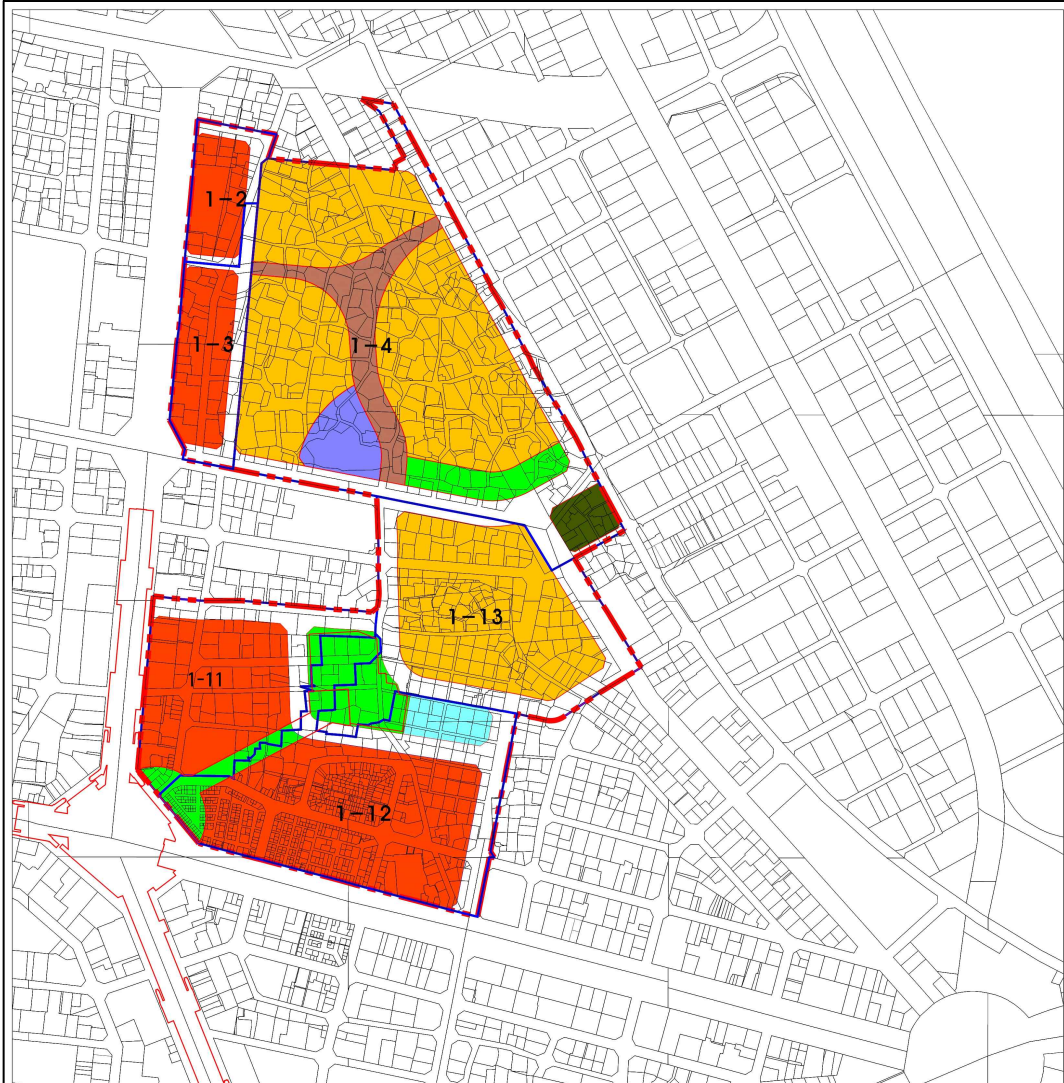
영등포 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

NAME OF DRAWING 도면명

토지이용계획도(기정)



■ 토지이용계획도(변경)



- | | | | |
|--|----------|--|----------------------|
| | 재정비촉진지구계 | | 종교용지 |
| | 재정비촉진구역계 | | 보행자전용도로 |
| | 주상복합 | | 공원 |
| | 상업복합 | | 광장 |
| | 도로 | | 공공청사, 주차장,
사회복지시설 |
| | 공공공지 | | |

PROJECT TITLE 사업명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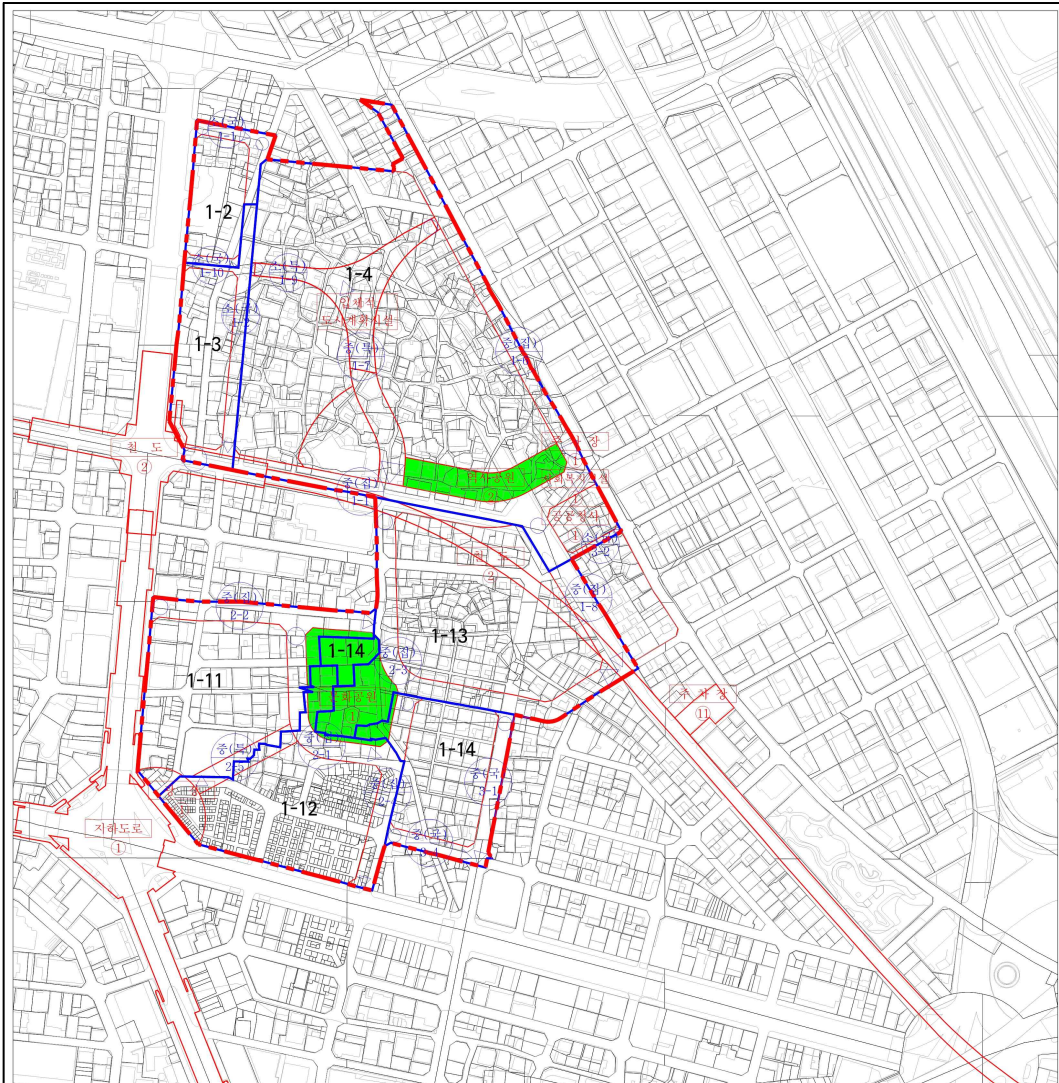
영등포 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

NAME OF DRAWING 도면명

토지이용계획도(변경)



■ 도시계획시설 결정도(기정)



	재정비촉진지구계		사회복지시설
	도로(대로이상)		철도
	도로(중로이하)		주차장
	공원		지하도로
	광장		입체적도시계획시설
	공공청사		

PROJECT TITLE 사업명칭

영등포 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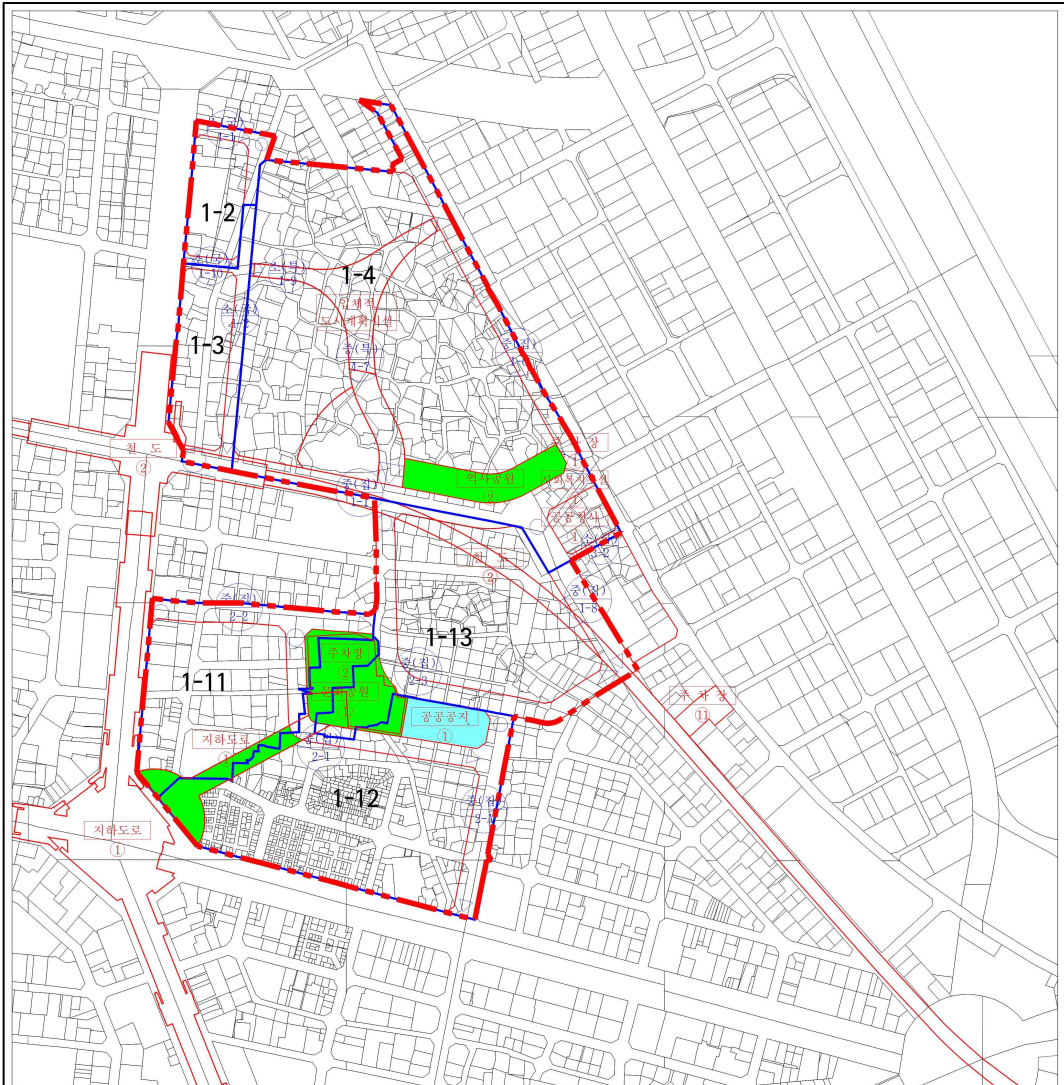
NAME OF DRAWING 도면명

도시계획시설 결정도(기정)

0 50 100 250m



■ 도시계획시설 결정도(변경)



	재정비촉진지구계		사회복지시설
	도로(대로이상)		철도
	도로(중로이하)		주차장
	공원		지하도로
	공공공지		광장
			공공청사

PROJECT TITLE 사업명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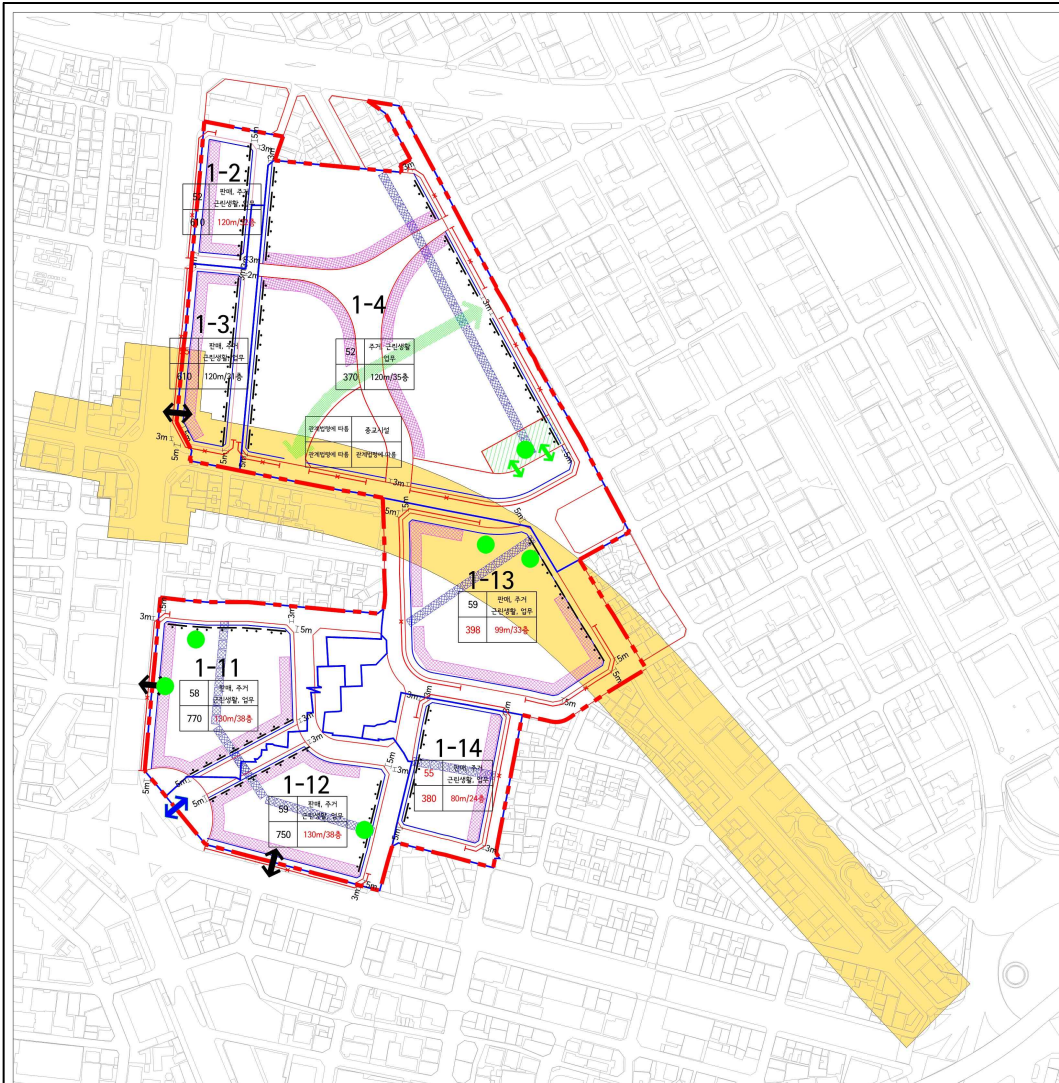
영등포 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

NAME OF DRAWING 도면명

도시계획시설 결정도(변경)



■ 시행지침도(기정)



- | | | | |
|--|-------------|--|-----------|
| | 재정비촉진지구계 | | 지상·지하공간연계 |
| | 건축한계선 | | 공원연계조성 |
| | 1층벽면지정선 | | 공공보행통로 |
| | 1층벽면한계선(지정) | | 공개공지 |
| | 1층벽면한계선(권장) | | 연도형상가 |
| | 차량출입불허구간 | | 건축협의대상지 |
| | 지하공간연계 | | 단지내도로 |

PROJECT TITLE 사업명칭

영등포 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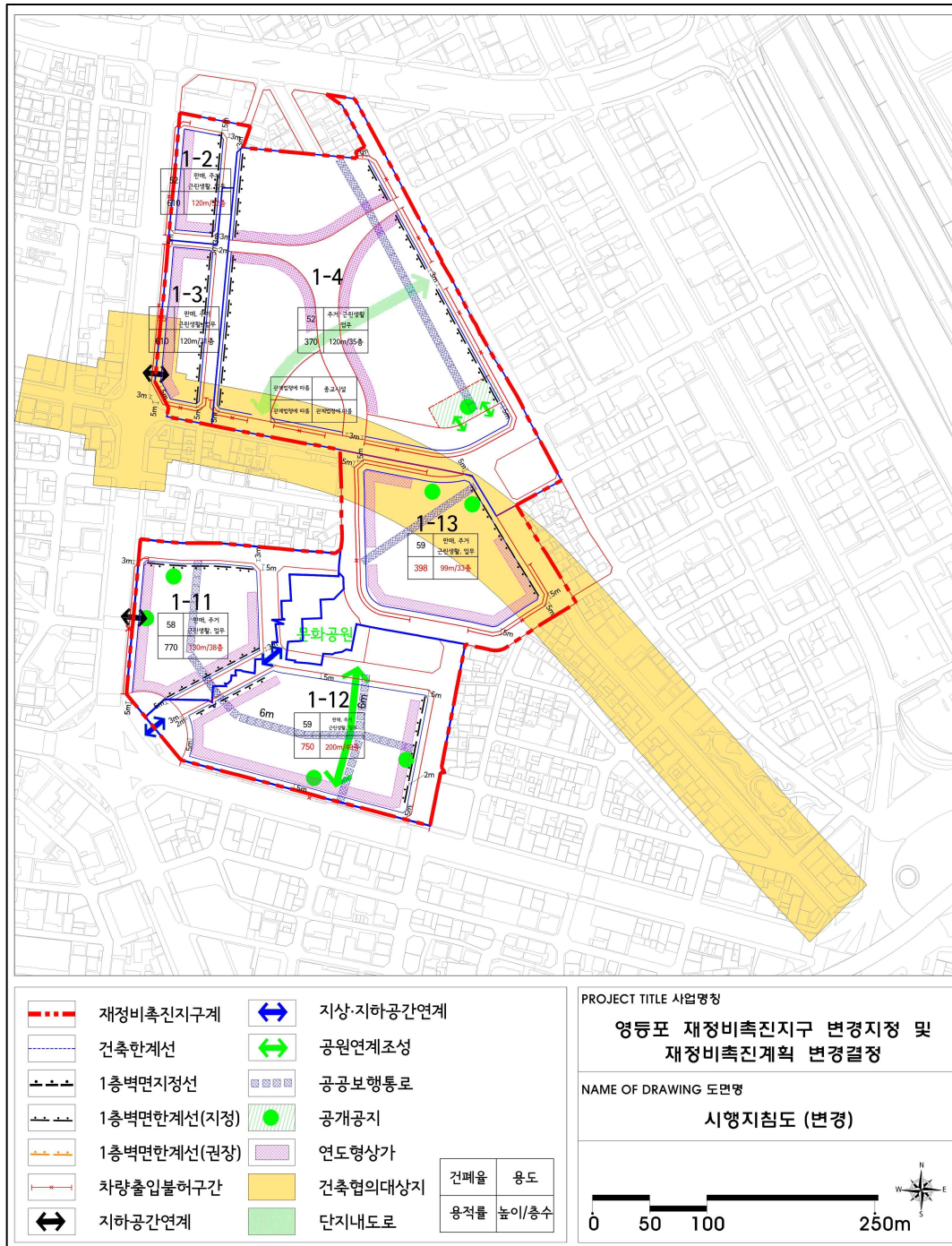
NAME OF DRAWING 도면명

시행지침도(기정)

건폐율	용도
용적률	높이/층수



■ 시행지침도(변경)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4-336호

도시계획시설(전기공급설비)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신광명~온수변전소 간 154kV 가공 송전선로 중 구로구 온수동 주택 밀집지역을 통과하는 500m 구간의 가공선로를 터널형 송전설로로 이설하고자 2024년 제7차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결정하고, 같은 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2024년 7월 4일
서울특별시

1. 결정취지

- 신광명~온수변전소 간 154kV 가공 송전선로 중 온수동 일원 주거밀집지역 500m구간을 터널형 송전선로로 지중화하고 도시계획시설(전기공급설비)로 결정하는 사항임

2. 도시계획시설 결정조서

가. 도시계획시설(전기공급설비) 결정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위치			연장 (m)	면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점	종점	주요경과지				
신설	-	전기공급설비 (송전선로)	오류동 산43-31	온수동 45-5	향동 근린공원	489	1,550	-	■ 중복결정 - 근린공원(78㎡, 272㎡) - 소공원(34㎡, 111㎡)

나. 도시계획시설(전기공급설비) 결정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결정내용	결정사유
-	전기공급설비 (송전선로)	■ 신설(대심도 터널형 송전선로) - 연장: 489m(관로 41m포함) - 면적: 1,550㎡ - 터널형 지하 45.5~65m - 관로 지하 1.5m이상 - 향동도시자연공원구역(79㎡, 177㎡)	■ 대흥성원동진빌라 주택재건축정비사업지역과 인접 ■ 주거지역 상부를 통과하는 가공 송전선로 및 주택지 내에 위치한 철타를 철거하고 ■ 대심도 터널형 송전선로로 이설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시설(전기공급설비)로 결정하고자 함 ■ 향동근린공원(78㎡, 272㎡), 소공원(34㎡, 111㎡) 일부 중복 결정

3. 관계도면 : 붙임 참조(세부 관계도면은 열람장소에 비치된 도면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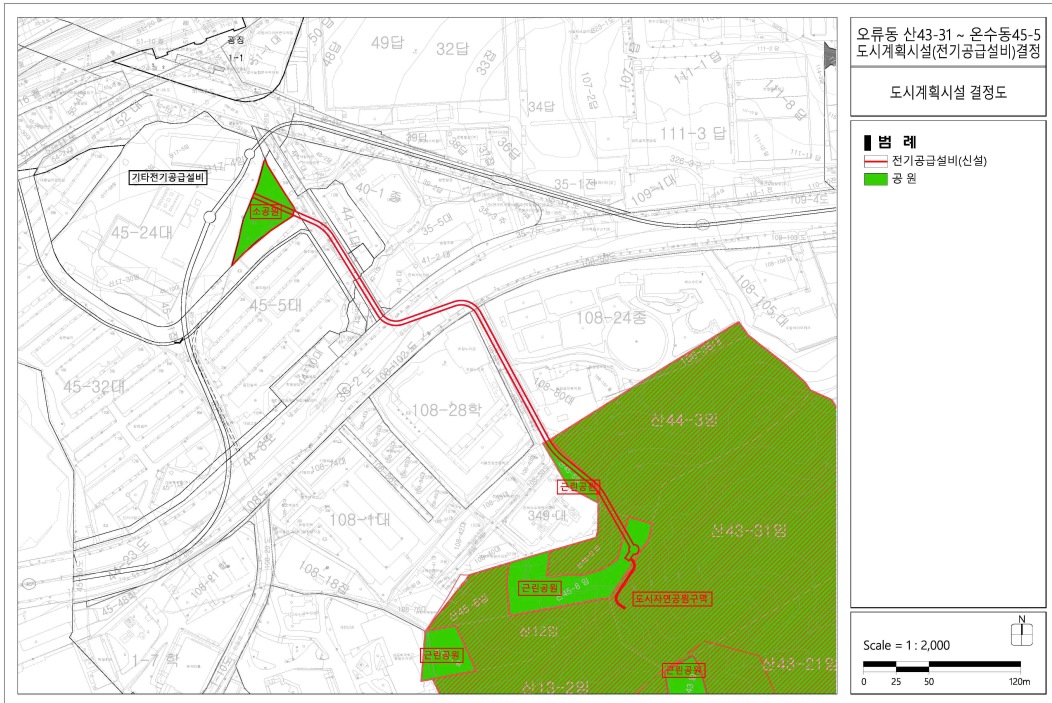
※ 첨부된 지형도면 등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4. 열람장소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시설계획과(☎02-2133-8408), 구로구 도시계획과(☎02-860-2280)에 관련도서를 비치하여 열람하고 있습니다.

※ 고시문 및 지형도면은 서울도시계획포털(<http://urban.seoul.go.kr>) 및 토지이음(<http://eum.go.kr>)에도 게시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관계도면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4-337호

신정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신정4재정비촉진구역) (경미한)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06-443호(2006. 12. 21.)로 재정비촉진지구 및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08-443호(2008. 12. 11.)로 재정비촉진지구 변경 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 되었으며, 서울특별시고시 제2009-100호(2009. 3. 12.), 제2009-308호(2009. 8. 6.), 제2009-341호(2009. 9. 10.), 제2009-517호(2009. 12. 17.), 제2010-195호(2010. 5. 21.), 제2010-290호(2010. 8. 5.), 제2011-97호(2011. 4. 21.), 제2011-186호(2011. 7. 7.), 제2012-171호(2012. 7. 5.), 제2012-194호(2012. 7. 26.), 제2012-243호(2012. 9. 13.), 제2013-111호(2013. 4. 4.), 제2013-197호(2013. 6. 27.), 제2014-29호(2014. 1. 23.), 제2014-130호(2014. 4. 3.), 제2014-284호(2014. 8. 7.), 제2014-395호(2014. 11. 20.), 제2017-306호(2017. 8. 17.), 제2017-381호(2017. 10. 26.), 제2018-172호(2018. 5. 31.), 제2020-156호(2020. 4. 16.), 제2020-176호(2020. 5. 1.), 제2020-209호(2020. 5. 21.), 제2020-372호(2020. 9. 10.), 제2021-253호(2021. 6. 3.), 제2022-59호(2022. 2. 17.), 제2023-233호(2023. 6. 15.)로 변경 결정된 신정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에 대하여 「도시재정비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재정비촉진계획을 변경 결정하고, 같은 법 제12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4년 7월 4일
서울특별시장

1. 재정비촉진지구의 명칭·유형·위치·면적 (변경)

명칭	유형	위치	면적(㎡)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정재정비 촉진지구	주거지형	양천구 신정동 1162번지 일대	639,847.6	증) 6.5	639,854.1	

※ 변경사유 : 예정지적좌표측량 성과 반영

2. 재정비촉진사업의 완료목표 연도 (변경)

- 기준년도 : 2004년
- 목표연도 : 2025년 → 2028년

3. 재정비촉진지구 정비의 기본방향 및 목표 (변경없음)

4. 재정비촉진계획의 개요 (변경)

가.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 (변경)

구 분		면 적 (㎡)			비 율 (%)	비 고
		기 정	증 감	변 경		
총 계		639,847.6	증) 6.5	639,854.1	100.0	
주거 용지	소 계	456,936.6	감) 1.3	456,935.3	71.4	
	공동주택(아파트)	383,901.0	감) 1.3	383,899.7	60.0	
	주상복합	73,035.6	-	73,035.6	11.4	
종교·근린생활시설용지		3,909.5	-	3,909.5	0.6	
업무·상업용지		11,963.3	-	11,963.3	1.9	
계획 기반 시설	소 계	167,038.2	증) 7.8	167,046.0	26.1	
	공공청사	8,260.91)	증) 0.3	8,261.21)	1.3	공공공지와 중복결정
	문화·복지시설	6,618.9		6,618.9	1.0	
	학교시설	27,767.6		27,767.6	4.3	
	공원녹지	38,835.6	감) 125	38,710.6	6.0	
	공공공지	6,380.2	-	6,380.2	1.0	
	도 로	79,295.2	증) 132.5	79,427.7	12.4	
	주 차 장	1,283.3	-	1,283.3	0.2	

※ 1) : 중복결정 된 공공공지 면적(1,403.5㎡) 포함

※ 변경사유 : 예정지적좌표측량 성과 및 교통영향평가 심의결과 반영

나. 교육시설, 문화시설, 복지시설 등 기반시설 설치계획 (변경없음)

다. 공원·녹지 조성 및 환경보전 계획 (변경)

1) 공원·녹지계획 (변경)

가) 총괄표 (변경)

구분	명칭	개소		면 적(㎡)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변경 후	
계		12	12	38,835.6	감) 125.0	38,710.6	
공원시설	소공원	11	11	30,270.5	감) 125.0	30,145.5	
	어린이공원	-	-	-	-	-	
	계남근린공원 등 존치	-	-	3,627.1	-	3,627.1	
녹지시설	경관녹지	1	1	4,938.0	-	4,938.0	

※ 변경사유 : 예정지적좌표측량 성과 및 교통영향평가 심의결과 반영

나) 공원·녹지계획 (변경)

구분	시설명	위치	면 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소공원	신월6동 570-26 일원	4,862.8	-	4,862.8	신정1재정비촉진구역
기정	소공원	신월6동 584-8 일대	1,298.3	-	1,298.3	신정1재정비촉진구역
기정	소공원	신월2동 605 일대	1,026.1	-	1,026.1	신정1재정비촉진구역
기정	소공원	신월2동 615-4일대	3,001.0	-	3,001.0	신정1재정비촉진구역
기정	소공원	신월6동 568-1일대	6,035.9	-	6,035.9	신정1재정비촉진구역
기정	소공원	신정동 1205-15 일원	789.2	-	789.2	신정2재정비촉진구역
기정	소공원	신정동 1150-53 일원	2,690.8	-	2,690.8	신정2재정비촉진구역
기정	소공원	신정동 1192-13 일대	3,196.3	-	3,196.3	신정3재정비촉진구역
기정	소공원	신월6동 575-1 일대	2,040.0	-	2,040.0	신정2준치관리구역
변경	소공원	신정동 1196-1일대	4,532.7	감) 119.6	4,413.1	신정4재정비촉진구역
변경	소공원	신정동 1219-9일대	797.4	감) 5.4	792.0	신정4재정비촉진구역
기정	경관녹지	신정동 1165-3일대	4,938.0	-	4,938.0	신정2재정비촉진구역

※ 변경사유 : 예정지적좌표측량 성과 및 교통영향평가 심의결과 반영

라. 교통계획 (변경없음)

마. 경관계획 (변경없음)

바.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없음)

사. 재정비촉진구역 및 존치구역 지정에 관한 사항 (변경)

구 분	재정비촉진계획(변경)	면 적(㎡)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총 계		639,847.6	증) 6.5	639,854.1	-
재정비촉진구역	신정1재정비촉진구역	254,270.5	-	254,270.5	주택재개발
	신정2재정비촉진구역	105,672.6	-	105,672.6	주택재개발
	신정3재정비촉진구역	35,583.5	-	35,583.5	도시환경정비사업
	신정4재정비촉진구역	82,065.2	증) 6.5	82,071.7	주택재건축
존치구역	신정1존치관리구역	5,315.0	-	5,315.0	지구단위계획
	신정2존치관리구역	35,110.4	-	35,110.4	
	신정3존치관리구역	11,135.4	-	11,135.4	
	신정4존치관리구역	21,948.2	-	21,948.2	
	신정5존치관리구역	16,285.3	-	16,285.3	
	존치구역	72,461.5	-	72,461.5	-

※ 변경사유 : 예정지적좌표측량 성과 반영

아. 재정비촉진지구 용도지역 계획 (변경)

구 분			면 적(㎡)			구성비 (%)
			기정	변경	변경후	
계			639,847.6	증) 6.5	639,854.1	100.0
주거 지역	일반 주거 지역	소계	575,207.5	증) 6.5	575,214.0	89.9
		제1종일반주거지역	45,160.6	-	45,160.6	7.1
		제2종일반주거지역 (7층이하)	109,457.1	증) 2.7	109,459.8	17.1
		제2종일반주거지역	349,295.9	-	349,295.9	54.6
		제3종일반주거지역	71,293.9	증) 3.8	71,297.7	11.1
	준주거지역		39,620.5	-	39,620.5	6.2
근린상업지역			23,016.6	-	23,016.6	3.6
자연녹지지역			2,003.0	-	2,003.0	0.3

※ 변경사유 : 예정지적좌표측량 성과 반영

자. 재정비촉진사업별 용적률·건폐율 및 높이계획 등 건축계획 (변경없음)

구 분	구 역 명	주 용 도	용 적 률			건폐율 (%)	높이계획 (평균층수/최고층수(높이))
			기준 용적률	허용 용적률	상한 용적률		
기정	신정1재정비촉진구역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197%	-	267.9% 이하	50% 이하	19층 이하 / 24층 72m 이하
	1-1지구		209%	-	300.0% 이하	50% 이하	
	1-2지구		189%	-	240.0% 이하	50% 이하	
	1-3지구		203%	-	253.9% 이하	50% 이하	
	1-4지구		189%	-	240.0% 이하	50% 이하	
기정	신정2재정비촉진구역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208%	-	254.6% 이하	60% 이하	20층 이하 / 27층
	2-1지구		208%	-	258.0% 이하	60% 이하	22층 이하 / 27층
	2-2지구		208%	-	242.0% 이하	60% 이하	18층 이하 / 24층
기정	신정3재정비촉진구역	상업, 업무, 판매시설	400%	-	530.0% 이하	60% 이하	- / - (80m 이하)
기정	신정4재정비촉진구역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190%	195%	250.0% 이하	60% 이하	20층 이하 / 23층

차. 기반시설의 비용분담계획 (변경)

구분	구역명	구역면적 (㎡)	기 반 시 설 면 적(㎡)					
			계획기반 시설 ①	계획기반 시설내 국공유지 ②	기존기반 시설내 국공유지 ③	유상매입 시설 ④	순부담 (①-②-③-④)	
							면적	구성비(%)
기정	신정1재정비 촉진구역	254,270.5	79,460.5	43,152.5	24,126.7	-	12,181.3	4.79
기정	신정2재정비 촉진구역	105,672.6	28,119.4	8,579.7	13,675.9	-	5,863.8	5.55
기정	신정3재정비 촉진구역	35,583.5	12,839.8	5,502.2	681.0	-	6,656.6	18.71
기정	신정4재정비 촉진구역	82,065.2	19,975.2	5,487.5	1,928.7	-	12,559.0	15.30
변경		82,071.7	19,937.1	7,003.5	1,614.4	-	11,319.2	13.79

※ 계획기반시설① : 기반시설 제공부지(17,359.6㎡) + 건축물 환산부지면적(1,734.7㎡) + 임대주택 대지지분(842.8㎡)

※ 변경사유 : 예정지적좌표측량, 교통영향평가 심의결과 반영 및 토지소유자 변경에 따른 국공유지 무상양도 면적 변경

카. 임대주택 건설 등 세입자 등의 주거대책 (변경)

구분	신정1재정비촉진구역					신정2재정비촉진구역			신정4재정비촉진구역	
	1-1지구	1-2지구	1-3지구	1-4지구	소계	2-1지구	2-2지구	소계	기정	변경
일반	2,503	296	175	770	3,744	1,231	336	1,567	1,620	1,651
임대	542	61	36	160	799	266	71	337	40	62
	(17.8%)	(17.1%)	(17.1%)	(17.2%)	(17.6%)	(17.8%)	(17.4%)	(17.7%)	(2.4%)	(3.6%)
계	3,045	357	211	930	4,543	1,497	407	1,904	1,660	1,713

※ 변경사유 : 건축심의 의견 반영 및 기반시설의 비용분담계획 변경에 따른 주택공급 계획 변경

타. 단계별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 (변경)

구분	추진시기	이주시기	입주시기	대상지역	비고
1단계	2009	2011	2014	신정1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사업
2단계	2010	2013	2016	신정2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사업
3단계	2010	2014	2017	신정3재정비촉진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4단계	2017	2025	2028	신정4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건축사업

주) 1. 단계별 추진계획은 촉진구역에 대한 주민들의 사업 추진의지에 따라 조정이 가능함

주) 2. 대규모 철거 및 이주로 인한 전세난이 우려될 경우 구청장은 전 단계 사업의 입주시기에 맞추어 관리처분계획인가 시기를 조정할 수 있음

주) 3. 시장이 권역별 주택수급 등을 판단하여 관리처분인가 시기 조정을 요구할 경우 구청장은 시기를 조정하여야 함

파. 광고물 관리계획 (변경없음)

하. 폐기물 처리에 관한 계획 (변경없음)

거. 특성화계획 (변경없음)

너. 재정비촉진구역별 정비계획 (변경)

- 1) 신정1재정비촉진구역(주택재개발사업) (변경없음)
- 2) 신정2재정비촉진구역(주택재개발사업) (변경없음)
- 3) 신정3재정비촉진구역(주택재개발사업) (변경없음)
- 4) 신정4재정비촉진구역(주택재건축사업) (변경)

가)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변경)

구분	재정비촉진사업 명칭	위치	면적(㎡)			비고
			기정	증감	변경	
변경	신정4재정비촉진구역	양천구 신정동 1200번지 일원	82,065.2	증) 6.5	82,071.7	

※ 변경사유 : 예정지적좌표측량 성과 반영

나) 인구·주택수용계획 (변경)

구 분		주 택 수 (호)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신정4재정비 촉진구역	40㎡ 이하	-	-	-	임대주택 62세대
	40㎡ ~ 60㎡	872	증) 35	907	
	60㎡ ~ 85㎡	742	증) 17	759	
	85㎡ 초과	46	증) 1	47	
	계	1,660	증) 53	1,713	

※ 변경사유 : 건축심의 의견반영 및 기반시설의 비용분담계획 변경에 따른 주택공급 계획 변경

다)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1) 토지이용계획 (변경)

구 분		면 적 (㎡)			비 율(%)	비 고
		기 정	증 감	변 경		
합 계		82,065.2	증) 6.5	82,071.7	100.0	
정비기반 시설 등	소 계	17,351.8	증) 7.8	17,359.6	21.2	
	도 로	10,669.8	증) 132.5	10,802.3	13.2	
	공 원	5,330.1	감) 125.0	5,205.1	6.3	
	공공청사	398.8	증) 0.3	399.1	0.5	
	사회복지시설	953.1	-	953.1	1.2	
택지	소 계	64,713.4	감) 1.3	64,712.1	78.8	
	공동주택	64,713.4	감) 1.3	64,712.1	78.8	

※ 변경사유 : 예정지적좌표측량 성과 및 교통영향평가 심의결과 반영

(2) 용도지역계획 (변경)

구 분		면 적 (㎡)			구성비 (%)	비 고
		기 정	증 감	변 경		
계		82,065.2	증) 6.5	82,071.7	100.0	
주거 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1,009.1	-	1,009.1	1.2	
	제2종일반주거지역 (7층이하)	16,964.5	증) 2.7	16,967.2	20.7	
	제2종일반주거지역	62,742.6	-	62,742.6	76.4	
	제3종일반주거지역	1,349.0	증) 3.8	1,352.8	1.6	

※ 변경사유 : 예정지적좌표측량 성과 반영

(3) 도시계획시설 설치계획 (변경)

(가) 도로 (변경)

구 분	구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 정 일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 정	중로	1	1	20~21	집산 도로	624	신월6동 600-1	신정3동 1160-10	일반 도로	-	서울특별시고시 제2005-362호 (2005.11.24)	
기 정	소로	3	41	6	국지 도로	56	신정3동 1236	신정3동 1236	일반 도로	-	-	
기 정	중로	3	A	12~25	국지 도로	170	신정3동 1234	신정3동 1234	일반 도로	-	-	
기 정	소로	3	44	6~10	국지 도로	740	신정3동 1224	신정3동 1237	일반 도로	-	-	
변 경	소로	3	44	6~11	국지 도로	740	신정3동 1224	신정3동 1237	일반 도로	-	-	

※ 변경사유 : 교통영향평가 심의결과 반영

(나) 공원 (변경)

구분	도면 표시번호	공원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 적 (㎡)			최 초 결 정 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변경	①	공원	소공원	신정동 1196-1일대	4,532.7	감) 119.6	4,413.1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306호 (2017.8.17)	
변경	②	공원	소공원	신정동 1219-9일대	1,092.4 (797.4)	감) 5.4	1,087.0 (792.0)		

※ ()은 대상지 내 면적

※ 변경사유 : 예정지적좌표측량 성과 및 교통영향평가 심의결과 반영

(다) 공공청사 (변경)

구분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			최 초 결 정 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변경	①	공공 청사	-	신정동 1160-25일대	398.8	증) 0.3	399.1	-	

※ 변경사유 : 예정지적좌표측량 성과 반영

(라) 사회복지시설 (변경없음)

(4)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 (변경)

구 분	시설의 종 류	위 치	법정		계획면적			비고
			기준	면적	기 정	변 경	변경후	
공동 이용 시설	소계	획지1	1,000세대 이상 $500.0 + (1,713\text{세대} \times 2.0) \times 1.25$	4,782.5	12,862.6	감)3,343.8	9,518.8	-
	경로당		1,500~2,000세대 미만	500.0	500.0	증)42.2	542.2	지상
	어린이놀이터		1,000세대 이상 : $500 + (\text{세대수} \times 0.7)$ 이상	1,699.1	2,485.3	감)785.0	1,700.3	-
	어린이집		1,500~2,000세대 미만	725.0	760.0	감)5.4	754.6	지상
	주민운동시설		-	-	1,977.3	증)1,134.3	3,111.6	옥외 포함
	작은도서관		1,500~2,000세대 미만	298.0	300.0	증)199.7	499.7	지하
	다함께 돌봄센터		-	-	200.0	감)52.1	147.9	지하
	기타 주민공동시설		-	-	-	증)1,462.5	1,462.5	-
창조적 정비계획	지역문화센터	창조적 정비계획운영지침 기준 (서울시, 2013)		240.0	240.0	증)15.1	255.1	지하
	지역공동체지원센터			300.0	300.0	증)24.9	324.9	지하
	옥상텃밭			4,950.0	6,100.0	감)5,380.0	720.0	-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설치하며, 향후 구체적인 건축계획 시 변경될 수 있음

※ 변경사유 : 세대수 증가에 따른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 변경

(5) 건축물의 정비·개량 및 건축시설계획 (변경)

(가) 기존건축물의 정비·개량계획 (변경)

구분	구역 구분	면 적	가구 또는 획지 구분		위 치	정비·개량계획(동)					비고
	명 칭		명 칭	면 적		계	존 치	개 수	철거후 신축	철거 이주	
기정	신정4 재정비 촉진구역	82,065.2	-	-	양천구 신정동 1200번지 일대	361	-	-	361	-	-
변경	신정4 재정비 촉진구역	82,071.7	-	-	양천구 신정동 1200번지 일대	361	-	-	361	-	-

※ 변경사유 : 예정지적좌표측량 성과 반영에 따른 면적 변경

(나) 건축시설계획 (변경)

구분	구역구분		가구 또는 획지 구분		위 치	주 용 도	건폐율 (%)	용적률(%)		높이(m) 최고층수 (평균층수)	비 고
	명칭	면적 (㎡)	명칭	면적 (㎡)				상한	법정상한 (예정법정상한)		
기정	신정4 재정비 촉진구역	82,065.2	공공청사	398.8	신정동 1160-25번지 일대	공공청사	60% 이하	200% 이하		7층이하	법정 용적률 이하
			사회복지 시설	953.1	신정동 1195번지	어린이집	50% 이하	150% 이하		4층이하	법정 용적률 이하
			획지1	64,713.4	신정동 1200번지 일대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 시설	60% 이하	243.73%	250%이하 (249.98%)	23층이하 (20층이하)	건축법규에 따름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		• 총세대수 : 1,660세대 [임대 40세대(2.4%)] - 전용면적 60㎡이하 : 872세대(52.5%) - 전용면적 60~85㎡이하 : 742세대(44.7%) - 전용면적 85㎡초과 : 46세대(2.8%)								
	심의완화 사항		• 층수 완화 : 중·저층 혼합배치, 특별건축구역 등 다양한 주거유형 계획으로 40% 이내 - 평균 18층 → 평균 20층(11.1% 완화)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 건축법, 주택법 등 관계법규에 의함									
변경	신정4 재정비 촉진구역	82,071.7	공공청사	399.1	신정동 1160-25번지 일대	공공청사	60% 이하	200% 이하		7층이하	법정 용적률 이하
			사회복지 시설	953.1	신정동 1195번지	어린이집	50% 이하	150% 이하		4층이하	법정 용적률 이하
			획지1	64,712.1	신정동 1200번지 일대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60% 이하	235.56%	250%이하 (249.82%)	23층이하 (20층이하)	건축법규에 따름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		• 총세대수 : 1,713세대 [임대 62세대(3.6%)] - 전용면적 60㎡이하 : 907세대(53.0%) - 전용면적 60~85㎡이하 : 759세대(44.3%) - 전용면적 85㎡초과 : 47세대(2.7%)								
	심의완화 사항		• 층수 완화 : 중·저층 혼합배치, 특별건축구역 등 다양한 주거유형 계획으로 40% 이내 - 평균 18층 → 평균 20층(11.1% 완화)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 건축법, 주택법 등 관계법규에 의함									

※ 변경사유 : 건축심의 의견반영 및 기반시설의 비용분담계획 변경에 따른 주택공급 계획 변경

(6) 임대주택 및 국민주택규모 주택의 건설에 관한 계획 (변경)

구 분			계 획		비 고
			기정	변경	
신정4 재정비 촉진구역	세대수 (세대)		1,660 (100.0%)	1,713 (100.0%)	
	분 양	소 계	1,620 (97.6%)	1,651 (96.4%)	
		85㎡ 이상	46 (2.8%)	47 (2.8%)	
		60㎡~85㎡미만	734 (44.2%)	751 (43.8%)	
		60㎡ 이하	840 (50.6%)	853 (49.8%)	
	임 대	소 계	40 (2.4%)	62 (3.6%)	
		30㎡~40㎡	-	-	
		40㎡~60㎡	32 (1.9%)	54 (3.1%)	
		60㎡~80㎡	8 (0.5%)	8 (0.5%)	

※ 완화용적률(예정법적상한용적률 - 상한용적률)에 따른 임대주택 건설계획 : 37세대 (전용49㎡ : 12세대, 전용59㎡ : 25세대)

※ 기부채납 임대주택 건설계획 : 25세대 (전용49㎡ : 6세대, 전용59㎡ : 11세대, 전용79㎡ : 8세대)

※ 변경사유 : 건축심의 의견반영 및 기반시설의 비용분담계획 변경에 따른 주택공급 계획 변경

※ 법적상한용적률에 따른 국민주택규모 주택의 건설에 관한 계획

구분	산정내용		비고
	기정	변경	
예정법적 상한용적률 (법정상한 용적률)	• 249.98% (250% 이하)	• 249.82% (250% 이하)	
상한 용적률	• 243.73% $= 195\% \times [(1 + 1.3 \times \alpha(\text{토지}) + 0.7 \times \alpha(\text{현금} \cdot \text{건축물}))]$ $= 195\% \times (1 + 1.3 \times 0.1869 + 0.7 \times 0.0098)$ $\alpha(\text{토지}) = \text{공공시설 부지 제공 면적} / \text{공공시설부 지로 제공 후 대지면적}$ $= 11,931.6\text{㎡} / 63,831.9\text{㎡} = 0.1869$ $\alpha(\text{건축물}) = \text{건축물 환산 부지 면적} / \text{공공시설부 지로 제공 후 대지면적}$ $= 627.4\text{㎡} / 63,831.9\text{㎡} = 0.0098$	• 235.56% $= 195\% \times [(1 + 1.3 \times \alpha(\text{토지}) + 0.7 \times \alpha(\text{현금} \cdot \text{건축물}))]$ $= 195\% \times (1 + 1.3 \times 0.9688 \times 0.1501 + 0.7 \times 0.0272)$ $\alpha(\text{토지}) = \text{공공시설 부지 제공 면적} / \text{공공시설부 지로 제공 후 대지면적}$ $= 9,584.5\text{㎡} / 63,869.3\text{㎡} = 0.1501$ $\alpha(\text{건축물}) = \text{건축물 환산 부지 면적} / \text{공공시설부 지로 제공 후 대지면적}$ $= 1,734.7\text{㎡} / 63,869.3\text{㎡} = 0.0272$	• 개발가능용적률
임대주택 공급기준	• (예정법적상한용적률 - 정비계획용적률) $\times$ 30% $= (249.98\% - 243.73\%) \times 30\%$ $= 1.875\%$ 이상 • 소형주택 건설면적 $= \text{대지면적} \times 1.875\%$ $= 64,713.4\text{㎡} \times 1.875\%$ $= 1,213.37\text{㎡}$ 이상	• (예정법적상한용적률 - 정비계획용적률) $\times$ 30% $= (249.82\% - 235.56\%) \times 30\%$ $= 4.278\%$ 이상 • 국민주택규모 주택 의무면적 $= \text{대지면적} \times 4.278\%$ $= 64,712.1\text{㎡} \times 4.278\%$ $= 2,768.1\text{㎡}$ 이상	• 증가되는 용적률의 30% 공공주택 건립 (2,768.1㎡ 이상)

구분	산정내용								비고
	기정				변경				
국민 주택 규모 주택 확보계획	주택규모 (전용면적)	분양 면적	세대수	소형주택 분양면적	주택규모 (전용면적)	공급 면적	세대수	연면적	• 계획면적: 2,779.47㎡
	계	—	872	72,551.7㎡	계	—	37	2,779.47㎡	
	39㎡	—	—	—	39㎡	—	—	—	
	49㎡ (임대주택)	72.96㎡	209(6)	15,248.6㎡	49㎡ (임대주택)	65.49㎡	12	785.89㎡	
	59㎡ (임대주택)	86.43㎡	663(9)	57,303.1㎡	59㎡ (임대주택)	79.74㎡	25	1,993.58㎡	

더.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1) 재정비촉진지구의 결정(변경) 조서

명칭	유형	위치	면적(㎡)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정재정비 촉진지구	주거지형	양천구 신정동 1162번지 일대	639,847.6	증) 6.5	639,854.1	

※ 변경사유 : 예정지적좌표측량 성과 반영

2)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구 분			면 적(㎡)			구성비 (%)
			기정	변경	변경후	
계			639,847.6	증) 6.5	639,854.1	100.0
주거 지역	일반 주거 지역	소계	575,207.5	증) 6.5	575,214.0	89.9
		제1종일반주거지역	45,160.6	-	45,160.6	7.1
		제2종일반주거지역 (7층이하)	109,457.1	증) 2.7	109,459.8	17.1
		제2종일반주거지역	349,295.9	-	349,295.9	54.6
		제3종일반주거지역	71,293.9	증) 3.8	71,297.7	11.1
		준주거지역	39,620.5	-	39,620.5	6.2
	근린상업지역		23,016.6	-	23,016.6	3.6
자연녹지지역		2,003.0	-	2,003.0	0.3	

※ 변경사유 : 예정지적좌표측량 성과 반영

3) 용도지구 결정조서(변경없음)

4)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조서 : 기반시설에 관한 재정비촉진구역별 결정(변경)조서 참고

5)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가) 신정1재정비촉진구역(주택재개발사업) (변경없음)

나) 신정2재정비촉진구역(주택재개발사업) (변경없음)

다) 신정3재정비촉진구역(주택재개발사업) (변경없음)

라) 신정4재정비촉진구역(주택재건축사업) (변경)

(1)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변경) 조서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조서

구분	구역명	위치	면적(㎡)			비고
			기정	증감	변경	
변경	신정4재정비촉진구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양천구 신정동 1200번지 일원	82,065.2	증) 6.5	82,071.7	

(2)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변경)

○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구분		면적(㎡)			구성비 (%)	비고
		기정	증감	변경		
계		82,065.2	증) 6.5	82,071.7	100.0	
주거 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1,009.1	-	1,009.1	1.2	
	제2종일반주거지역 (7층이하)	16,964.5	증) 2.7	16,967.2	20.7	
	제2종일반주거지역	62,742.6	-	62,742.6	76.4	
	제3종일반주거지역	1,349.0	증) 3.8	1,352.8	1.6	

○ 용도지구 결정조서(해당없음)

(3) 기반시설에 관한 결정(변경) 조서

○ 도로 결정조서(변경)

구 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 정 일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 정	중로	1	1	20~21	집산 도로	624	신월6동 600-1	신정3동 1160-10	일반 도로	-	서울특별시고시 제2005-362호 (2005.11.24)	
기 정	소로	3	41	6	국지 도로	56	신정3동 1236	신정3동 1236	일반 도로	-	-	
기 정	중로	3	A	12~25	국지 도로	170	신정3동 1234	신정3동 1234	일반 도로	-	-	
기 정	소로	3	44	6~10	국지 도로	740	신정3동 1224	신정3동 1237	일반 도로	-	-	
변 경	소로	3	44	6~11	국지 도로	740	신정3동 1224	신정3동 1237	일반 도로	-	-	

○ 공원(변경)

구분	도면 표시번호	공원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 적 (㎡)			최 초 결 정 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변경	①	공원	소공원	신정동 1196-1일대	4,532.7	감) 119.6	4,413.1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306호 (2017.8.17)	
변경	②	공원	소공원	신정동 1219-9일대	1,092.4 (797.4)	감) 5.4	1,087.0 (792.0)		

※ ()은 대상지 내 면적

○ 공공청사(변경)

구분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			최 초 결 정 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변경	①	공공 청사	-	신정동 1160-25일대	398.8	증) 0.3	399.1	-	

○ 사회복지시설(변경없음)

구분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			최 초 결 정 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기정	①	사회복지시 설	-	신정동 1195	953.1	-	953.1	-	

(4)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변경) 조서

○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결정(변경) 조서

구 분	가 구	면적(㎡)			획 지					비 고
					획지번호	위 치	면 적(㎡)			
		기 정	변 경	변경후			기 정	변 경	변경후	
변경	획지	82,065.2	증) 6.5	82,071.7	획지1	양천구 신정동1200 번지 일원	64,713.4	감) 1.3	64,712.1	-
변경	공공 청사	398.8	증) 0.3	399.1	공공청 사	신정동 1160-25번지 일대	398.8	증) 0.3	399.1	-
기정	사회 복지 시설	953.1	-	953.1	사회 복지 시설	신정동 1195번지	953.1	-	953.1	-

○ 건축물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에 관한 결정조서(변경)

- 건축물 용도에 관한 결정조서(변경없음)

구분	획지	용도	비고
허용용도	획지1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
	공공청사	공공청사	
	사회복지시설	어린이집	

- 건폐율 계획(변경없음)

구분	지역	건폐율	비고
공동주택 등	획지1	60%이하	-
	공공청사	관련 법령에 따름	공공청사
	사회복지시설	관련 법령에 따름	어린이집

- 용적률 계획(변경)

구분	지역	용적률(%)				비고
		기준	허용	상한용적률		
				상한	법적상한	
기정	획지1	190.00% 이하	195.00% 이하	243.73% 이하	250.00% 이하	(예정법적상한) 249.98%
변경	획지1	190.00% 이하	195.00% 이하	235.56% 이하	250.00% 이하	(예정법적상한) 249.82%
기정	공공청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련 규정에 따름				공공청사
	사회복지시설					어린이집

-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사항(변경없음)

구분	용적률 완화	비고
	세입자 손실보상	
공동주택 등	5.00%	-

- 상한용적률 완화 사항(변경)

구분		용적률 완화		비고
		공공시설등 기부채납	국민주택규모주택건설	
기정	공동주택 등	48.73%	6.25%	-
변경		40.56%	14.26%	

- 높이 계획(변경없음)

구분	지역	높이 기준	비고
획지1	제2종일반주거지역	평균 20층 / 최고높이 23층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공공청사	제2종일반주거지역 (7층이하)	관련 법령에 따름	공공청사
사회복지시설	제2종일반주거지역 (7층이하)	관련 법령에 따름	어린이집

－ 건축선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구분	적용 위치		계획내용
건축한계선	획지1	중앙로45길	대지경계선으로부터 3m 후퇴
		중앙로29길 중앙로47길 문화의 거리	대지경계선으로부터 6m 후퇴

(5) 경관계획(변경없음)

구분	적용 위치	계획내용
건축물의 배치	획지1	- 지형 극복을 위한 테라스하우스 배치 - 가로변에 대응하여 저층 연도형 주동배치 - 통경축 및 보행자를 위한 공공보행통로 확보
건축물의 규모 및 높이	획지1	- 주변 환경과 조화로운 높이 계획 - 경계부로 점차 낮아지는 스카이라인 형성
건축물의 형태 및 외관	획지1	- 다양한 형태의 주동배치로 변화감 있는 경관 형성 - 주변 단지 건축계획을 고려한 형태 계획으로 조화로운 시가지 경관 형성

(6) 기타사항에 관한 결정조서(변경없음)

○ 대지 내 공지에 관한 결정 조서

구분	적용위치	계획 내용	비고
공공보행통로	공동주택 획지 내	공공보행통로(폭원 7m, 13m)	-

※ 구체적인 위치는 관련 도면 참조

5. 관계도면 및 기타 재정비촉진계획에 관한 사항은 「신정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도서」 참조: 아래 장소에 비치한 도서와 같음

※ 첨부된 도면은 참고용으로, 측량 등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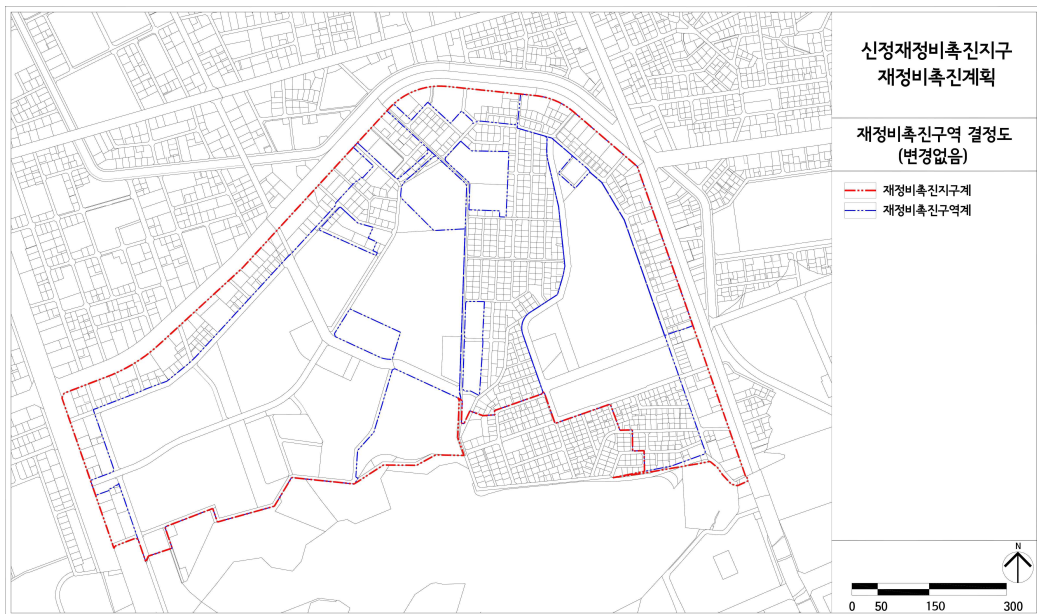
6. 시민의 열람 편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주택정책실 재정비촉진사업과(☎ 02-2133-7227) 및 양천구 도시계획과(☎ 02-2620-3516)에 관계도서를 비치 및 열람하고 있습니다.

※ 고시문 및 지형도면 등은 서울도시계획포털(<http://urban.seoul.go.kr>) 및 토지이음(www.eum.go.kr)에 게시할 예정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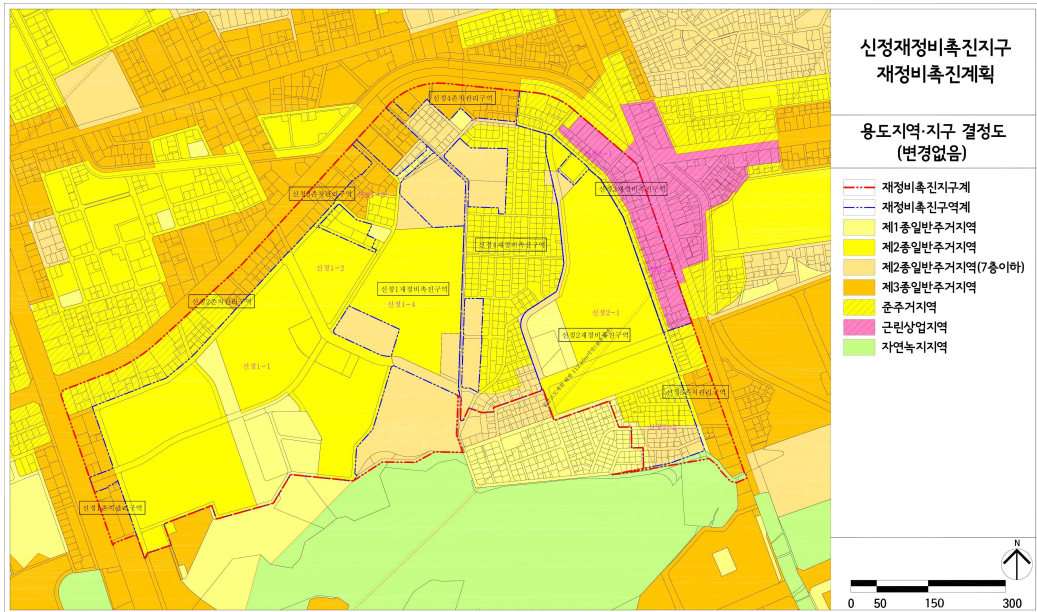
[신정재정비촉진지구 결정도] (변경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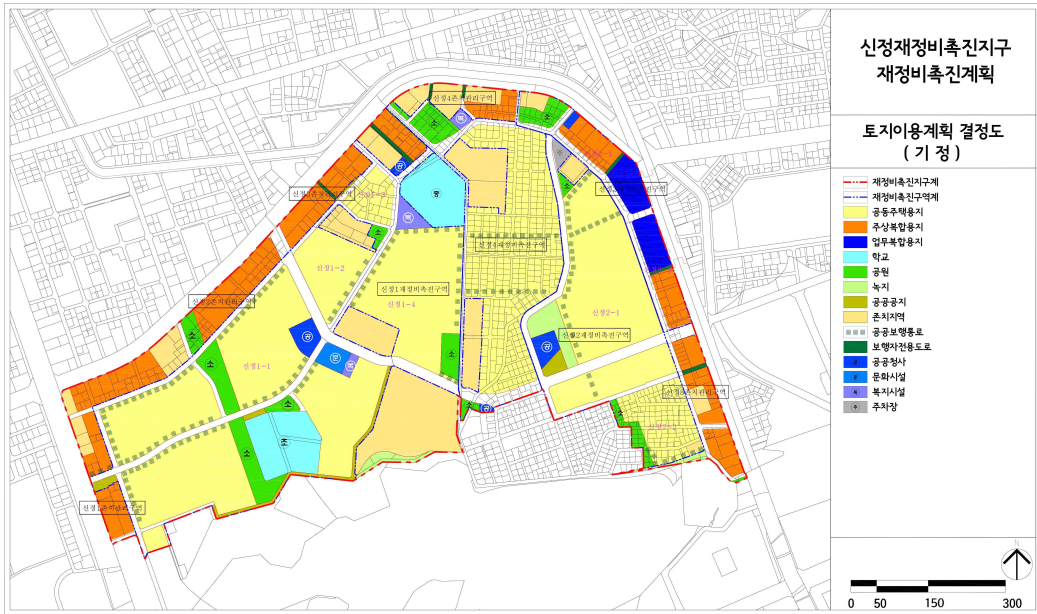
[재정비촉진구역 결정도] (변경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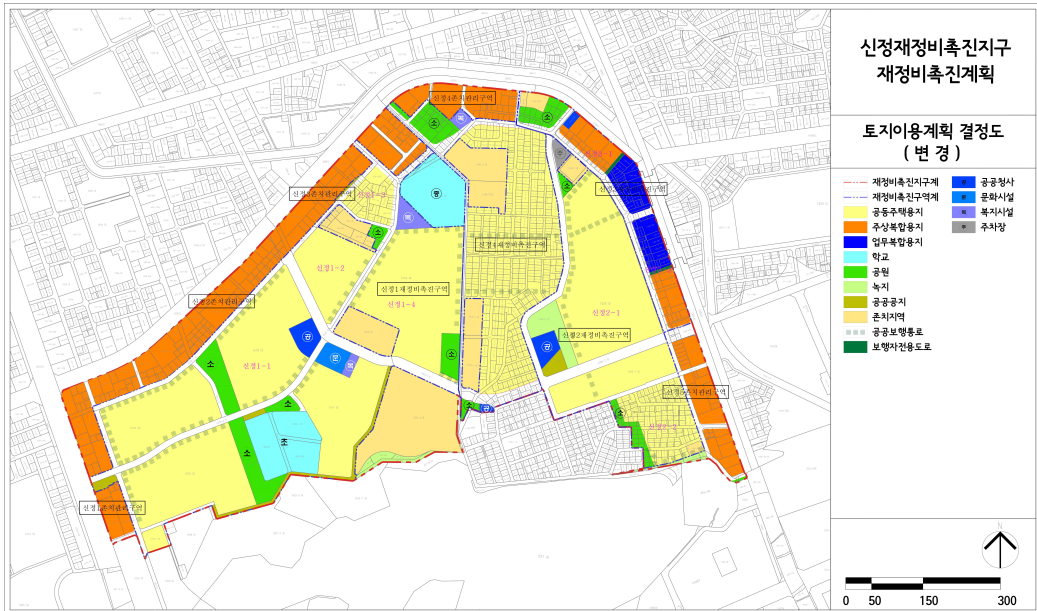
[용도지역·지구 결정도] (변경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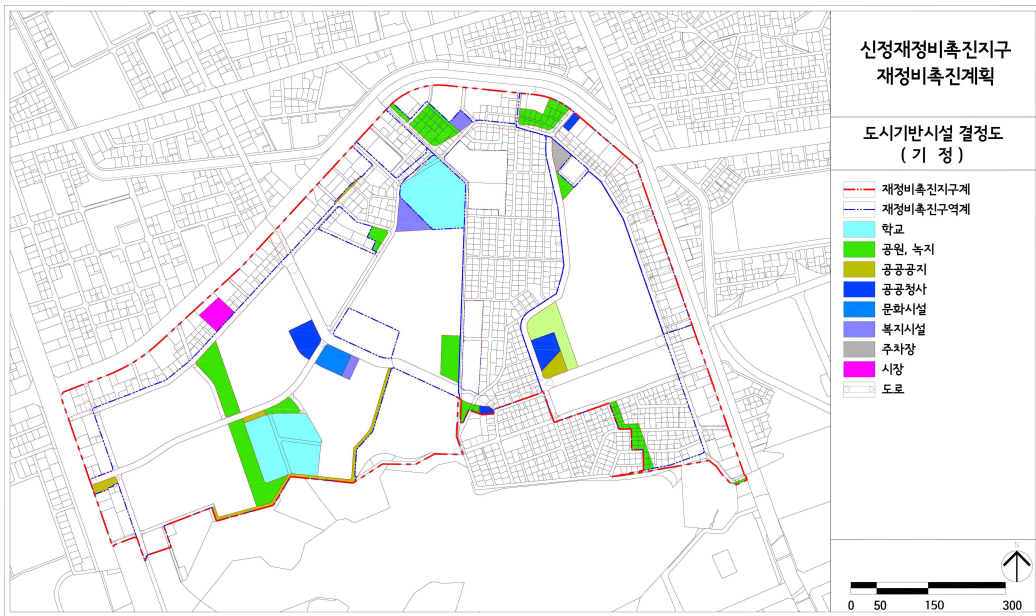
[토지이용계획 결정도] (기정)



[토지이용계획 결정도] (변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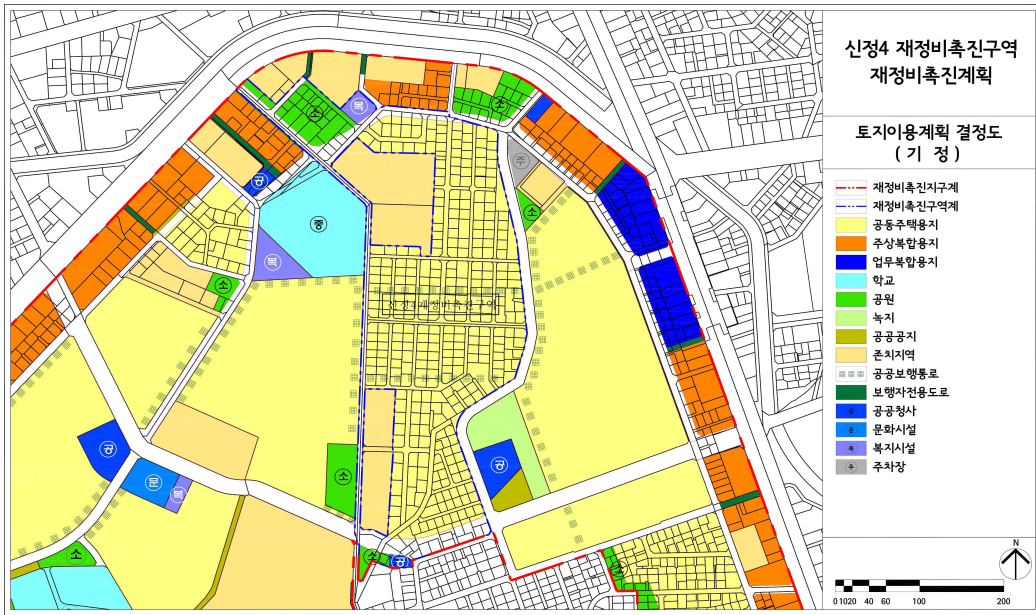
[도시기반시설 결정도] (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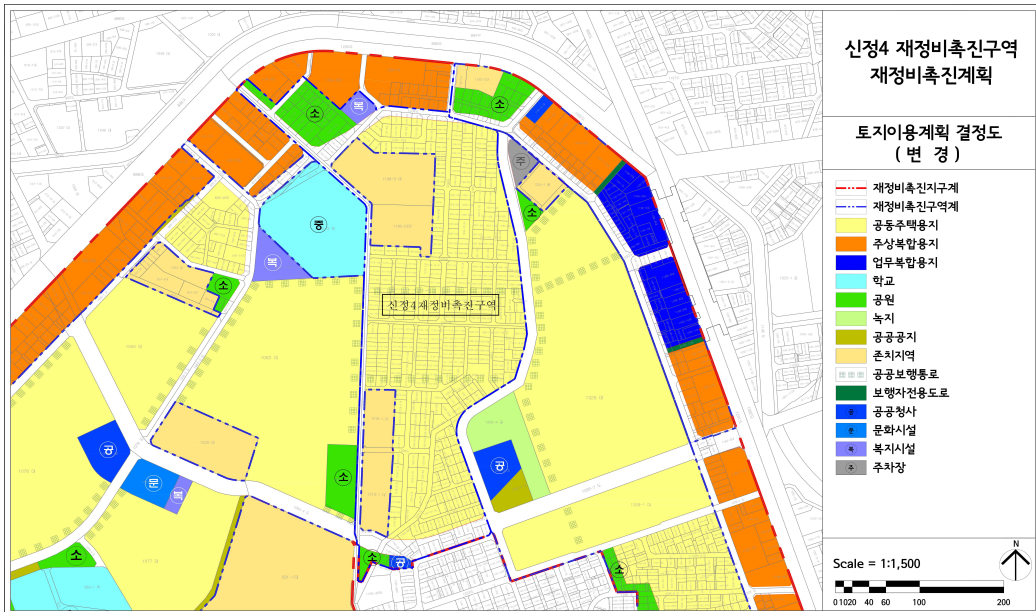
[도시기반시설 결정도] (변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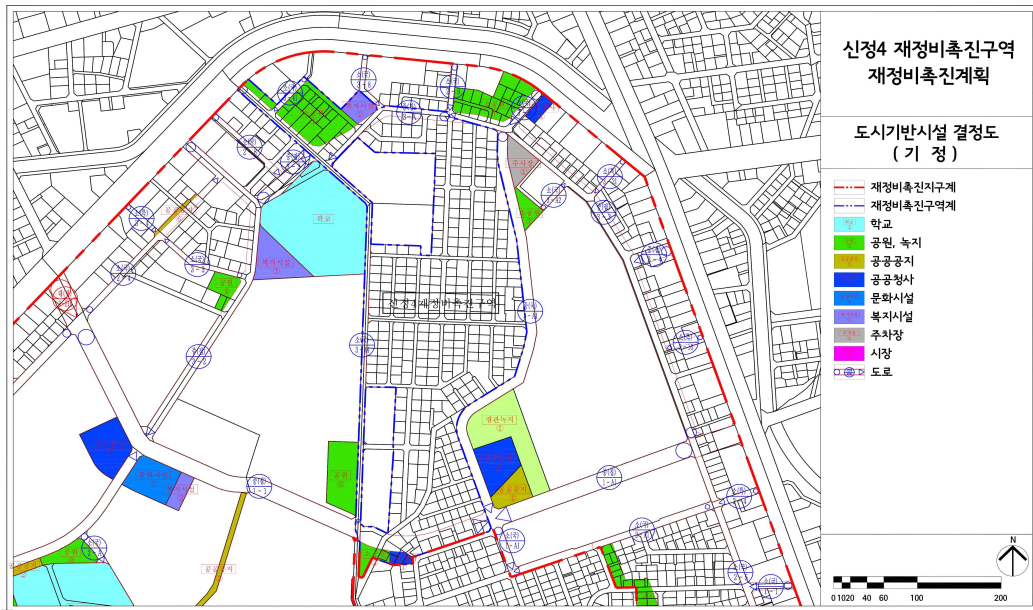
[신정4재정비촉진구역 토지이용계획 결정도] (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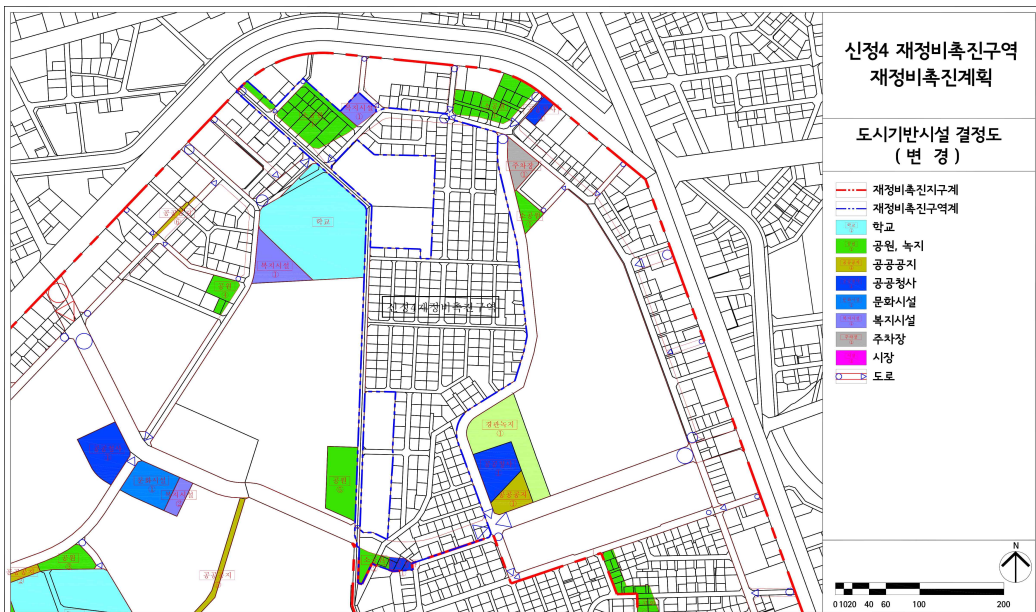
[신정4재정비촉진구역 토지이용계획 결정도] (변경)



[신정4재정비촉진구역 도시기반시설 결정도] (기정)



[신정4재정비촉진구역 도시기반시설 결정도] (변경)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4-338호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20호(1991.7.22.)로 최초 결정된 강서구 오정로 노선의 오쇠동~외발산동 간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2024년 제5차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2024.04.17.)를 거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결정(변경)하고, 같은 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2024년 7월 4일
서울특별시장

1. 결정(변경)취지

- 부천대장 공공주택지구(3기 신도시) 개발로 인하여 증가하는 교통수요를 해소하기 위한 광역교통개선대책 사항으로 강서구 오정로 노선의 도로를 확장하고자 도시계획시설(도로)를 결정(변경)하는 사항임

2.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조서

-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 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위치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 점	종 점				
신설	대로	2	120	30.5	주간선 도로	557	오쇠동 147-7	오쇠동 180-5	일반 도로	-	-	- 하수도 중복결정 (841㎡)
기정	중로	2	338	15	집산 도로	655	외발산동 288-8	공항동 401-24	일반 도로	-	서울특별시고시 제220호 (1991.7.22.)	
변경	대로	1	338	36.5	주간선 도로	968	외발산동 423-12	공항동 445-1	일반 도로	-	서울특별시고시 제220호 (1991.7.22.)	- 철도 중복결정 (909㎡) - 공항 중복결정 (48,269.6㎡)

○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 내용	변경 사유
-	대로 2-120	- 신설 폭원 30.5m, 연장 557m	부천대장 공공주택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에 따라 오정으로 확장공사로 인한 시설 변경
중로 2-338	대로 1-338	- 폭원 및 선형 변경 15m → 36.5m - 연장변경 655m → 968m	

○ 도시계획시설(하수도) 결정 조서

구분	시설명	위치			연장(km)	면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점	종점	주요 경과지				
기정	하수도	오쇠동 172-9	오쇠동 147-3	-	437	874	강서구고시 제1998-29호 (1998.6.19.)	- 대로2-120 중복결정 (841㎡)

○ 도시계획시설(철도) 결정 조서

구분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치			연장(m)	면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점	종점	주요 경과지				
기정	철도	일반 철도	개화동	공항동	-	6,144.62	148,993.8	국도교통부고시 제2016-427호(2016.7.4.)	- 대로1-338 중복결정 (909㎡)

○ 도시계획시설(공항) 결정 조서

구분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공항 (김포국제공항)	공항 및 공항시설	강서구 과해동 274번지 일원	7,253,942.6 (서울)	-	7,253,942.6 (서울)	건설부고시 제1968-257호 (1968.5.1.)	- 대로1-338 중복결정 (48,269.6㎡)

3. 관계도면 : 붙임 참조(세부 관계도면은 열람장소에 비치된 도면 참조)

※ 첨부된 지형도면 등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4. 열람장소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시설계획과(☎02-2133-8454), 강서구 도시계획과(☎02-2600-6692)에 관련도서를 비치하여 열람하고 있습니다.

※ 고시문 및 지형도면은 서울도시계획포털(<http://urban.seoul.go.kr>) 및 토지이음(<http://www.eum.go.kr>)에 게시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기정)도 <1구간>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기정)도
<1구간>

■ 범례

- 지적 선
- 도시계획시설(도로)
- 도시계획시설(공항)
- 도시계획시설(철도)
- 도시계획시설(하수도)

Scale = 1:1,5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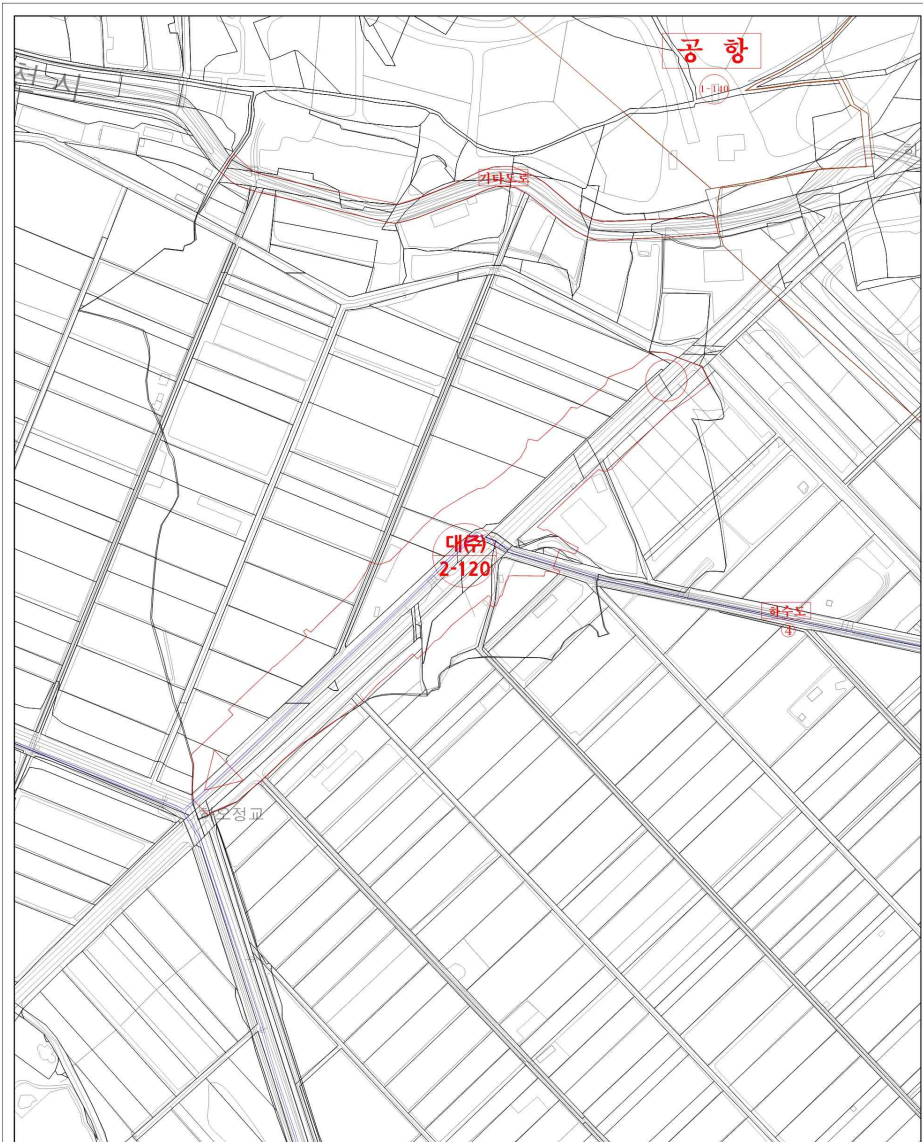


색인도

01

02

■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도 <1구간>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도
<1구간>

■ 범례

- 지 적 선
- 도시계획시설(도로)
- 도시계획시설(공항)
- 도시계획시설(철도)
- 도시계획시설(하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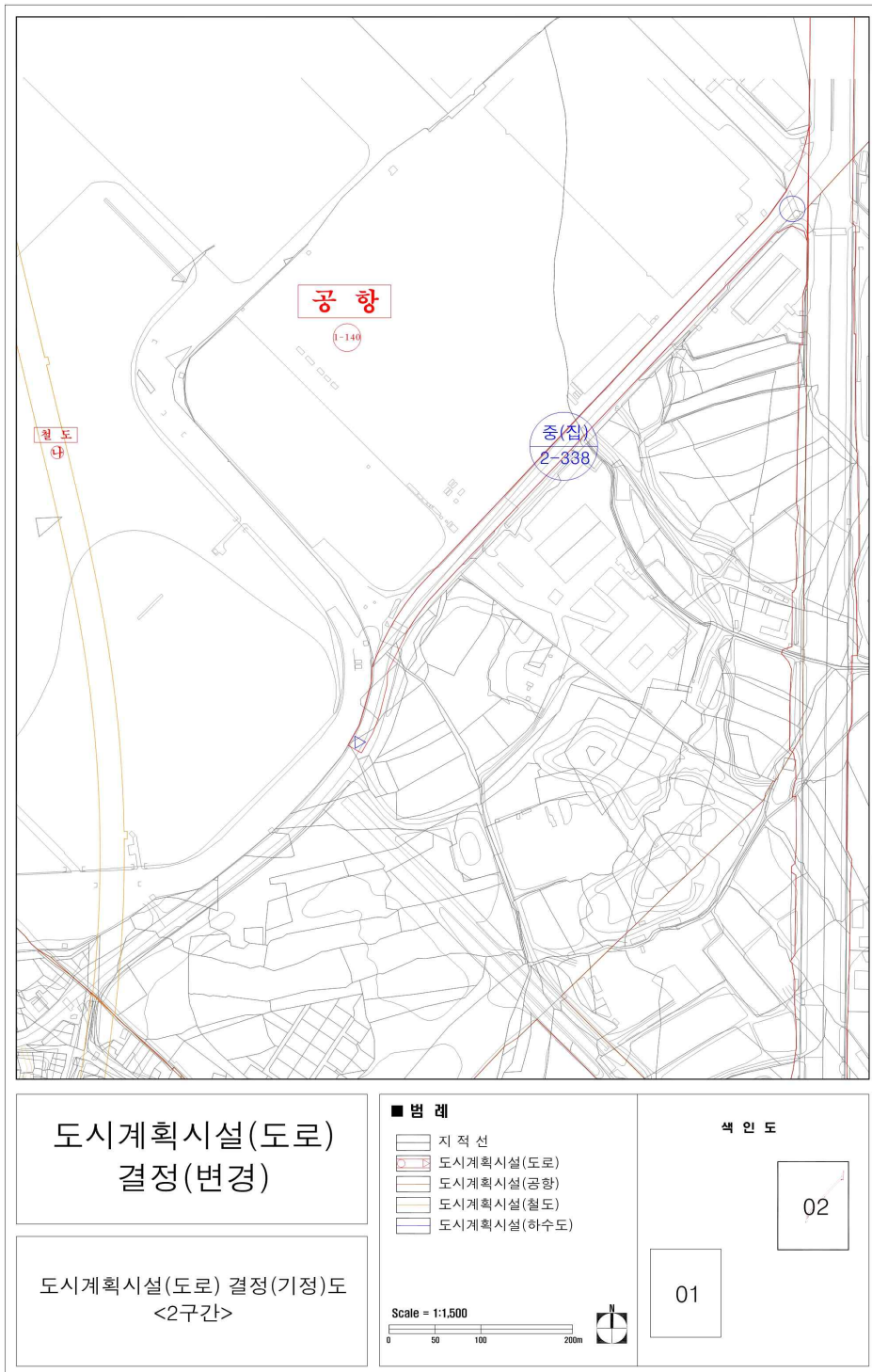
Scale = 1:1,5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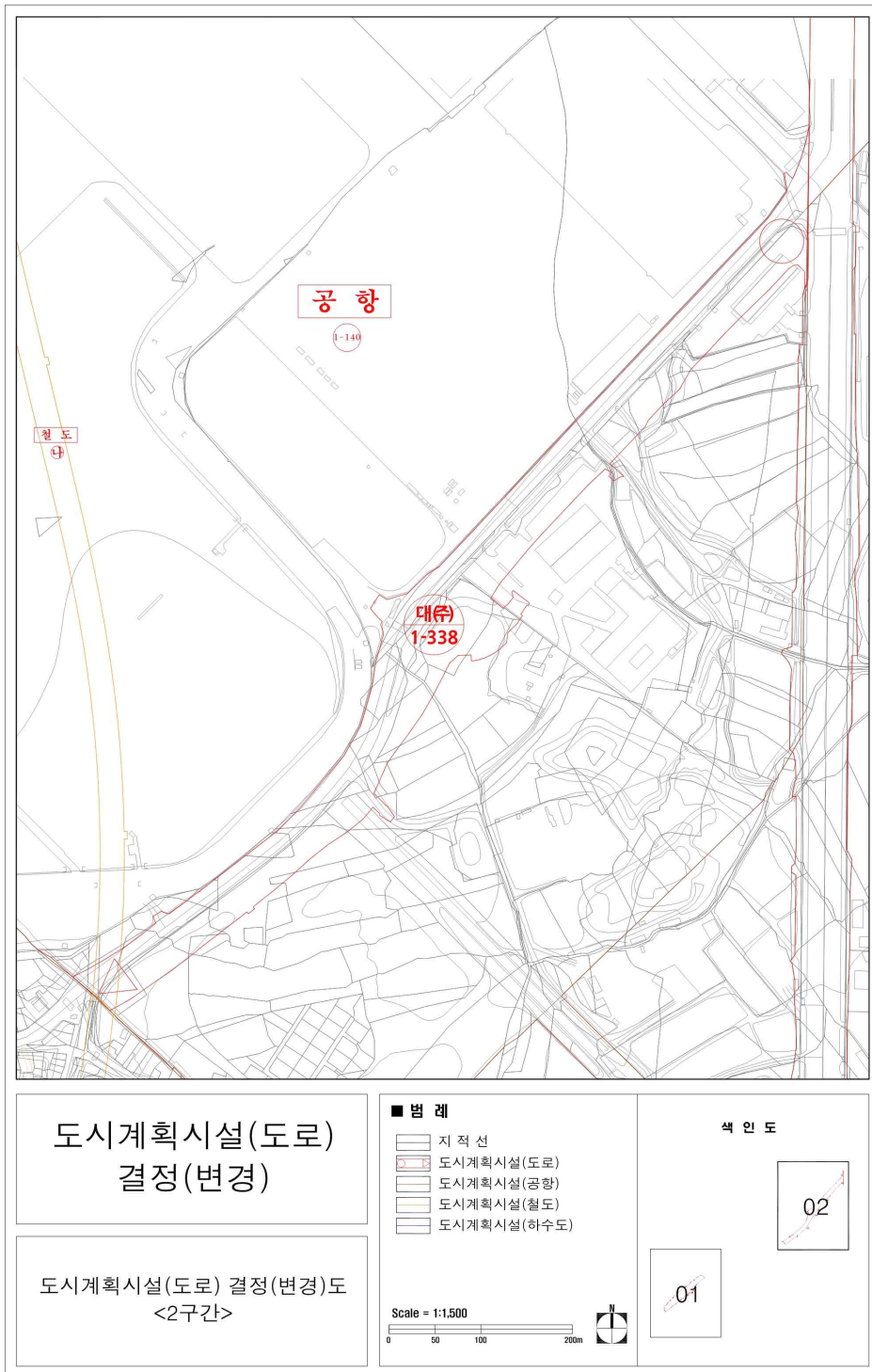
색 인 도



■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기정)도 <2구간>



■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도 <2구간>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4-339호
세운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경미한)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06-365호(2006.10.26.)로 세운재정비촉진지구 지정, 제2007-260호(2007.7.30.)로 1단계 구간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작성, 제2009-107호(2009.3.19)로 재정비촉진계획 결정, 제2009-378호(2009.9.24.)로 재정비촉진계획(세운5구역)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14-119호(2014. 3 .27), 서울특별시고시 제2014-389호(2014.11.13.)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15-304호(2015.10.1.), 서울특별시고시 제2016-62호(2016.3.3.)로 재정비촉진계획 (경미한)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16-103호(2016.4.7.)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21호(2017.1.26.),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394호(2017.11.9.),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438호(2017.11.30.)로 재정비촉진계획 (경미한)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18-177호(2018.6.7.)로 재정비촉진계획[기반시설계획]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19-86호(2019.3.7.), 서울특별시고시 제2019-185호(2019.6.7.), 서울특별시고시 제2019-211호(2019.7.4.), 서울특별시고시 제2020-170호(2020.5.1.), 서울특별시고시 제2020-419호(2020.10.15.)로 재정비촉진계획 (경미한)변경 결정, 서울특별시고시 제2021-110호(2021.3.4.), 서울특별시고시 제2021-564호(2021.10.14.), 서울특별시고시 제2022-56호(2022.2.10.)로 재정비촉진계획 (경미한)변경 결정, 서울특별시고시 제2022-479호(2022.12.8.)로 재정비촉진계획(세운3-4,5구역, 세운6-3-4구역)변경 결정, 서울특별시고시 제2023-471호(2023.10.26.)로 재정비촉진계획(세운5-1,3구역)변경 결정, 서울특별시고시 제2023-540호(2023.12.7.), 서울특별시고시 제2024-59호(2024.1.25.)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24-316호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된 세운재정비촉진지구 중, 중구 산림동 275-3번지 일원에 대하여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규정에 따라 세운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2024년 7월 4일
서울특별시

① 세운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변경)
1. 세운재정비촉진계획 개요 : 변경없음

지 구 명	유 형	위 치	면 적(㎡)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세운재정비촉진지구	중심지형	종로구 종로3가 175-4번지 일대	439,356.4	-	439,356.4	-

(이하 여백)

2. 세운재정비촉진계획 : 변경

①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 : 변경없음

구분		면적(㎡)			비율(%)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계		439,356.4	-	439,356.4	100.0	-
계획 기반 시설	소계	157,427.6	-	157,427.6	35.4	-
	공공청사	7,600.0	-	7,600.0	1.7	중구청 존치
	학교시설	13,055.1	-	13,055.1	3.0	덕수중학교 존치
	하천	8,423.4	-	8,423.4	1.9	청계천
	공원	32,248.4	-	32,248.4	7.3	4개소
	녹지	2,498.5	-	2,498.5	0.6	-
	주차장	1,983.7	-	1,983.7	0.3	
	공공공지	1,328.4	-	1,328.4	0.3	-
	공공용지	4,100.3	-	4,100.3	0.9	
	도로	86,974.8	-	86,974.8	19.8	-
택지 (획지)	소계	281,928.8	-	281,928.8	64.2	-
	복합개발용지	265,367.7	-	265,367.7	60.4	-
	남산자이(주거복합)	5,216.5	-	5,216.5	1.2	존치
	국도호텔(상업·숙박)	1,620.5	-	1,620.5	0.4	-
	중앙대교플라자	-	-	-	-	존치정비구역 전환
	명보아트홀	-	-	-	-	존치정비구역 전환
	매일경제신문	-	-	-	-	존치정비구역 전환
	세운상가군	9,724.1	-	9,724.1	2.2	-

※ 상기 면적은 구적에 의한 면적으로 변경될 수 있음

※ 세운상가군은 세운가동상가 ~ 진양상가에 이르는 일련의 상가를 의미함

② 인구·주택수용계획 : 변경없음

③ 교육시설, 문화시설, 복지시설 등 기반시설 설치계획 : 변경

㉞ 도로계획(변경)

㉟ 도로(변경)

- 보행데크 연결통로 설치하는 것으로 건축·교통 통합심의 결과 반영

(청계상가 ~ 대림상가 서측 보행데크와 세운 3-7구역 건축물과의 연결보행데크를
조성하기 위한 보행자전용도로 입체적 결정)

㊱ 주차장(변경없음)

- ㉔ 공원 및 녹지(변경없음)
 ㉕ 학교(변경없음)
 ㉖ 공공청사(변경없음)
 ㉗ 기타(변경없음)
 ④ 공원·녹지 조성 및 환경보전계획 : 변경없음
 ⑤ 교통계획 : 변경없음
 ⑥ 경관계획 : 변경없음
 ⑦ 광물 관리계획, 폐기물처리 등에 관한 기타계획 : 변경없음
 ⑧ 재정비촉진구역 지정에 관한 사항 : 변경없음
 ⑨ 재정비촉진사업별 용적률·건폐율 및 높이 등에 관한 건축계획 : 변경없음
 ⑩ 기반시설 비용분담계획 : 변경없음
 ⑪ 임대주택 건설 등 재정비촉진지구에 거주하는 세입자의 주거대책 : 변경없음
 ⑫ 단계별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 : 변경없음
 ⑬ 촉진구역별 사업계획 : 변경
 • 금회 변경사항은 ㉔ 세운재정비촉진구역(세운3-7구역) 정비계획(변경) 참조
 ⑭ 존치지역의 관리 및 정비계획 : 변경없음
 ⑮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 : 변경
 ㉔ 용도지역·지구 결정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㉕ 도시계획시설 설치계획(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 관련)(변경)
 ㉖ 교통시설(변경)
 a 도로(변경)

■ 도로 결정(변경)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정	소로	1	C	4~8 (4)	국지 도로	186	종로3가 45-4	충무로4가 125	일반 도로	-	서울시고시 제2024-316호 (2024.6.27.)	-
변경	소로	1	C	4~8 (4)	국지 도로	186	종로3가 45-4	충무로4가 125	일반 도로	-	서울시고시 제2024-316호 (2024.6.27.)	청계상가 ~ 대림상가 서측 3층 보행데크와 3-7구역간 보행데크 연결통로 중복결정(폭 4m)

※ 금회 결정(변경) 조서 외 게재생략

※ ()는 촉진구역 내 해당 사항임

※ 중복결정 면적은 추후 측량성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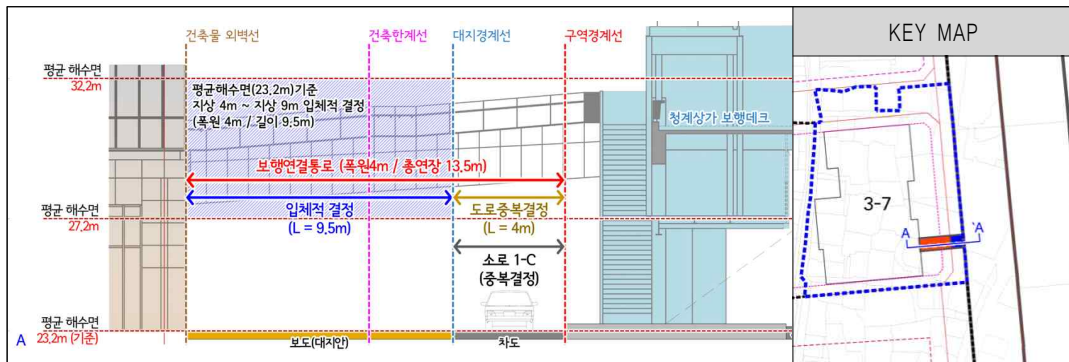
■ 도로 입체적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위 치	구분	기정	변경	변경 후	최초 결정일	비고
변경	-	보행자 전용도로 (연결통로)	산림동 272-1	면적(㎡)	-	증) 38.0	38.0	-	-
				길이(m)	-	증) 9.5	9.5		
				폭(m)	-	증) 4.0	4.0		
				높이(m)	-	증) 27.2~32.2m	27.2~32.2m		
세부사항	기정				변경				
	-				입체적 결정 범위 1. 청계상가~대림상가 서측 보행데크와 세운3~7구역간 연결통로 - 지상부(2F) A = 38,0㎡, H = 27.2~32.2m				

※ 산림동 272-1 평균 해수면 23.2m 기준 지상 4m(평균 해수면 27.2m) ~ 지상 9m(평균 해수면 32.2m)를 입체적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며, 평균 해수면 높이는 추후 측량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향후 세운상가군 공원화 등으로 녹지생태축 조성 시 철거 가능

■ 도시계획시설(도로) 입체적 결정 단면도



■ 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	보행자 전용도로 (연결통로)	• 보행데크 연결통로 설치 - 면적 : 증) 38.0㎡	• 건축·교통 통합심의 결과를 반영하여 면적 변경 - 세운상가 일대 도시재생사업으로 조성된 청계상가 서측 보행데크와 3-7구역 간 보행데크 연결

- ⑤ 철도(변경없음)
 ⑥ 주차장(변경없음)
 ㉠ 공간시설(변경없음)
 ㉡ 공공·문화체육시설(변경없음)
 ㉢ 방재시설(변경없음)

② 세운재정비촉진구역(세운3-7구역) 정비계획(변경)

1. 정비구역 : 변경없음
 - 가. 촉진구역 결정 조서 : 변경없음
2. 정비계획 : 변경
 - 가. 토지이용계획 : 변경없음
 - 나. 용도지역·지구 결정에 관한 계획 : 변경없음
 - 다. 도시계획시설(설치)계획 : 변경

① 교통시설(변경)

■ 도로(변경)

● 도로 결정(변경)조서

구분	구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정	소로	1	C	4~8 (4)	국지 도로	186	종로3가 45~4	충무로4가 125	일반 도로	-	서울시고시 제2024-316호 (2024.6.27.)	-
변경	소로	1	C	4~8 (4)	국지 도로	186	종로3가 45~4	충무로4가 125	일반 도로	-	서울시고시 제2024-316호 (2024.6.27.)	청계상가 ~ 대림상가 서측 3층 보행데크와 3~7구역간 보행데크 연결통로 중복결정(폭 4m)

※ 금회 결정(변경) 조서 외 게재생략

※ ()는 촉진구역 내 해당 사항임

※ 중복결정 면적은 추후 측량성가에 따라 조절될 수 있음

● 도로 입체적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위 치	구분	기정	변경	변경 후	최초 결정일	비고
변경	-	보행자 전용도로 (연결통로)	산림동 272-1	면적(㎡)	-	증) 38.0	38.0	-	
				길이(m)	-	증) 9.5	9.5		
				폭(m)	-	증) 4.0	4.0		
				높이(m)	-	증) 27.2~32.2m	27.2~32.2m		
세부사항	기정				변경				-
	-				입체적 결정 범위 1. 청계상가~대림상가 서측 보행데크와 세운3-7구역간 연결통로 - 지상부(2F) A = 38,0㎡, H =27.2~32.2m				

※ 산림동 272-1 평균 해수면 23.2m 기준 지상 4m(평균 해수면 27.2m) ~ 지상 9m(평균 해수면 32.2m)를 입체적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며, 평균 해수면 높이는

추후 측량성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세운상가군 공원화 등으로 녹지생태축 조성 시 철거 가능

• 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	보행자 전용도로 (연결통로)	- 보행데크 연결통로 설치 - 면적 : 증) 38.0㎡	- 건축·교통 통합심의 결과를 반영하여 면적 변경 - 세운상가 일대 도시재생사업으로 조성된 청계상가 서측 보행데크와 3-7구역 간 보행데크 연결

② 공간시설(변경없음)

- 라.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 : 해당사항 없음
- 마. 건축물의 배치, 형태, 건축선에 관한 계획 : 변경없음
- 바. 건축물의 정비·개량 및 건축시설 계획 : 변경없음
- 사. 도시경관과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 변경없음
- 아. 정비사업 시행 계획 : 변경없음
- 자. 기존 수목의 현황 및 활용계획 : 변경없음
- 차. 정비구역의 분할 또는 결합에 관한 계획 : 변경없음
- 카. 정비구역 주변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 : 변경없음
- 타. 세입자 대책 : 변경없음

③ 관련도면 : 붙임 참조

- － 세운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세운3-7구역)
- 촉진구역 결정도(변경없음)
 - 용도지역지구 결정도(변경없음)
 - 도시계획시설 결정도(기정, 변경)
 -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도(기정, 변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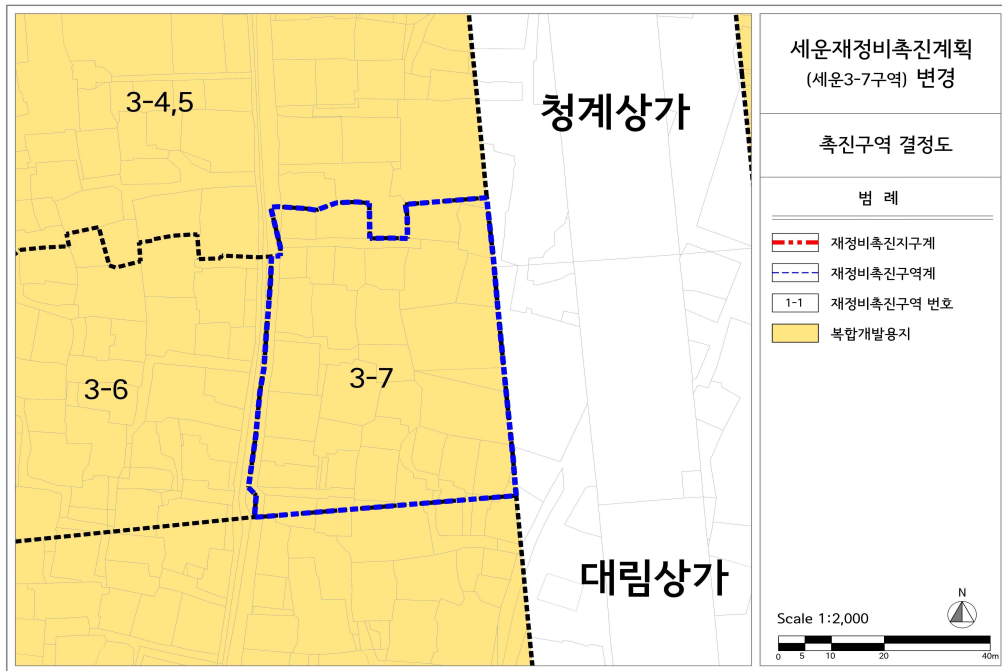
④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관련 서류(지형도면 포함) : 생략 (비치도서와 같음)

⑤ 열람장소 :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도심재창조과(02-2133-4651) 및 중구청 도심정비과(02-3396-5754)에 관계 서류를 비치 및 열람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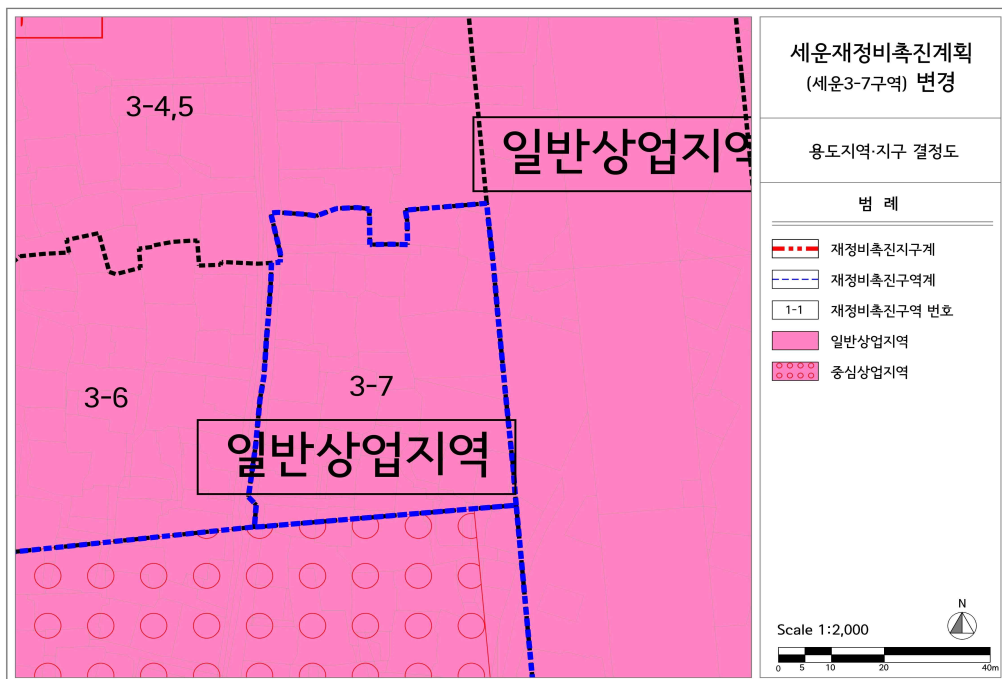
※ 고시문 및 지형도면은 토지이음(<http://eum.go.kr>)에 게시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세운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세운3-7구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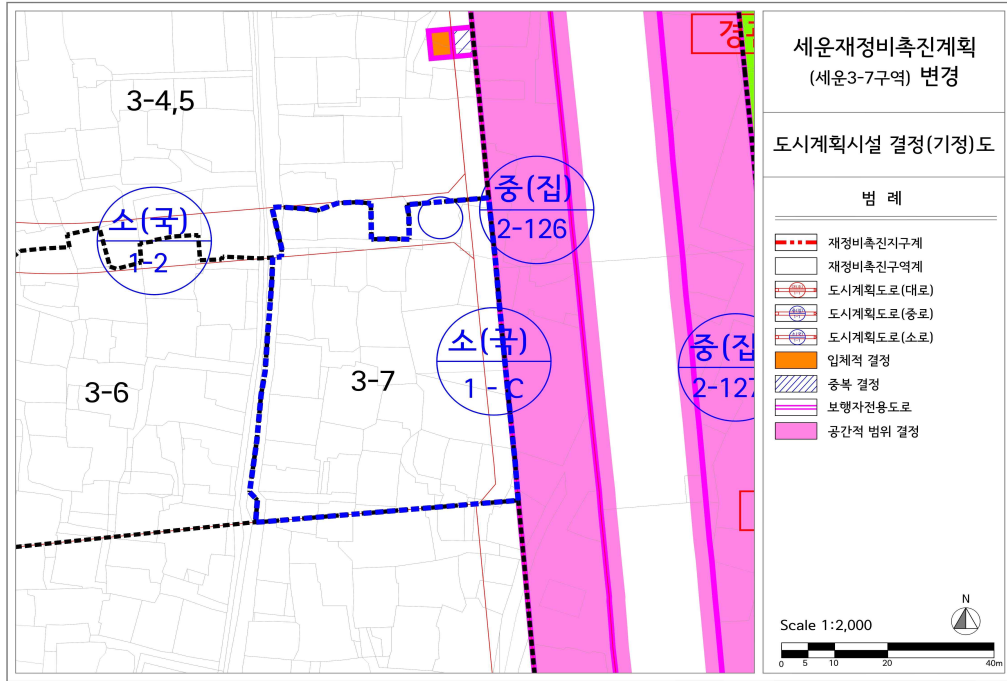
■ 촉진구역 결정도(변경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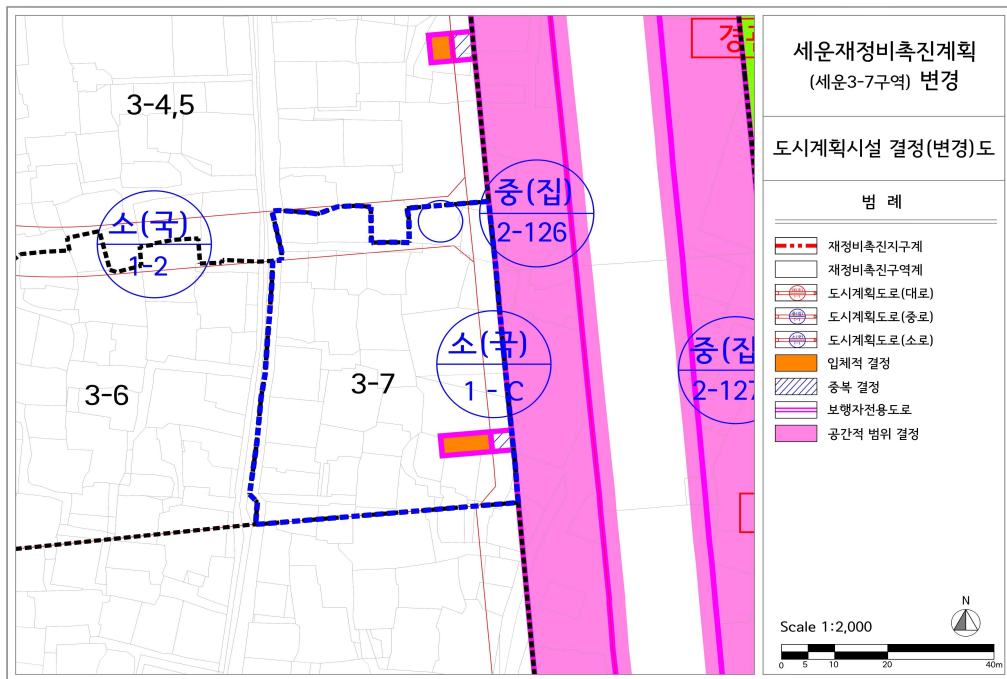
■ 용도지역지구 결정도(변경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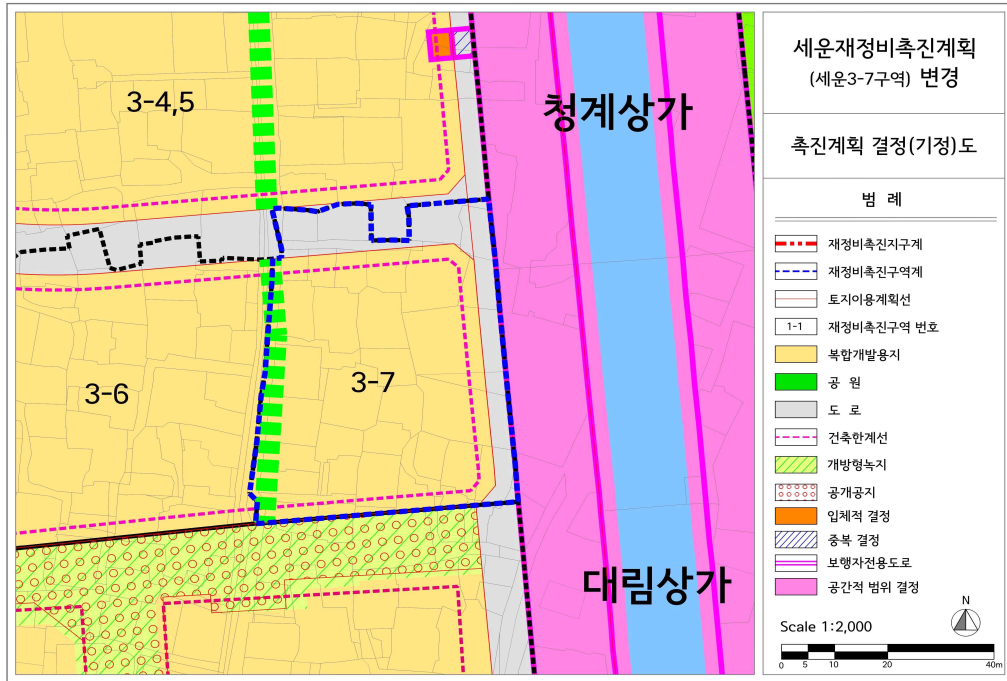
■ 도시계획시설 결정도(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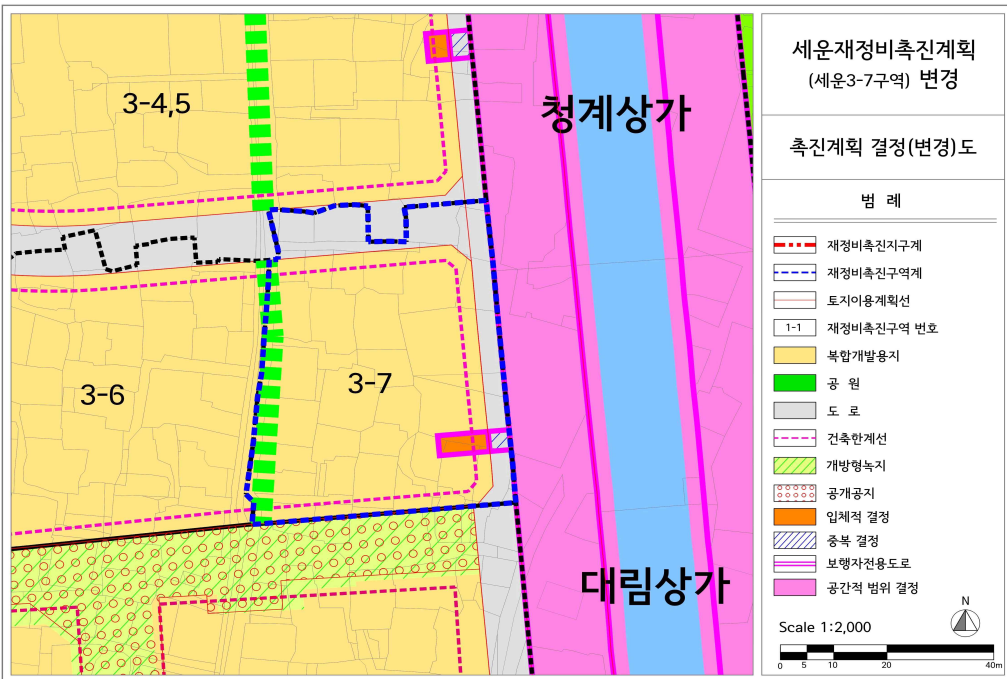
■ 도시계획시설 결정도(변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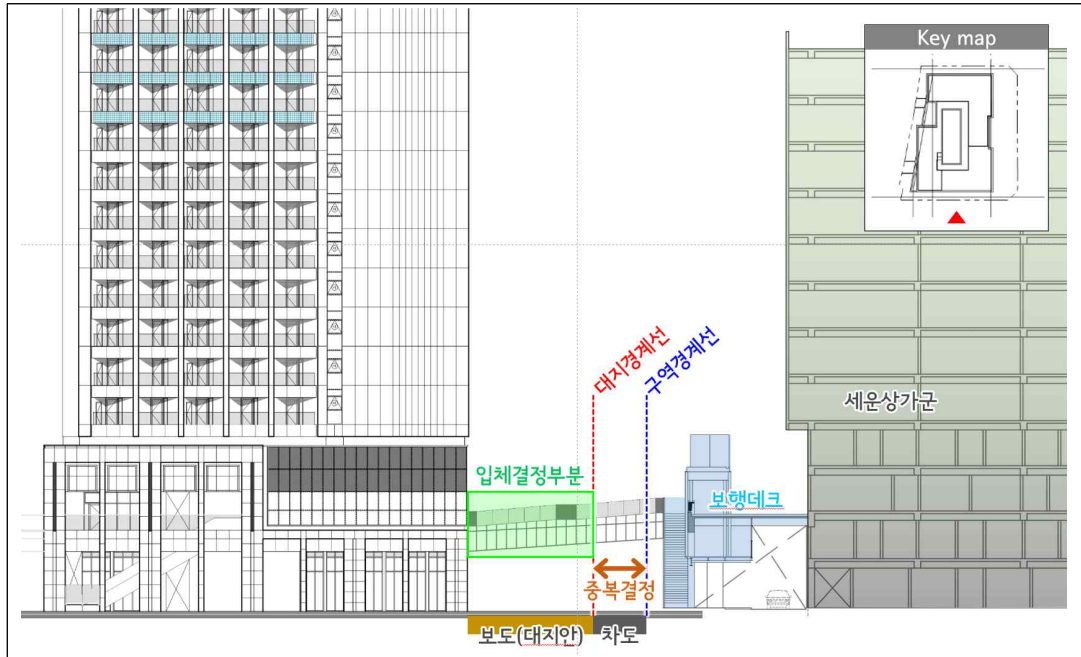
■ 도시계획시설 결정도(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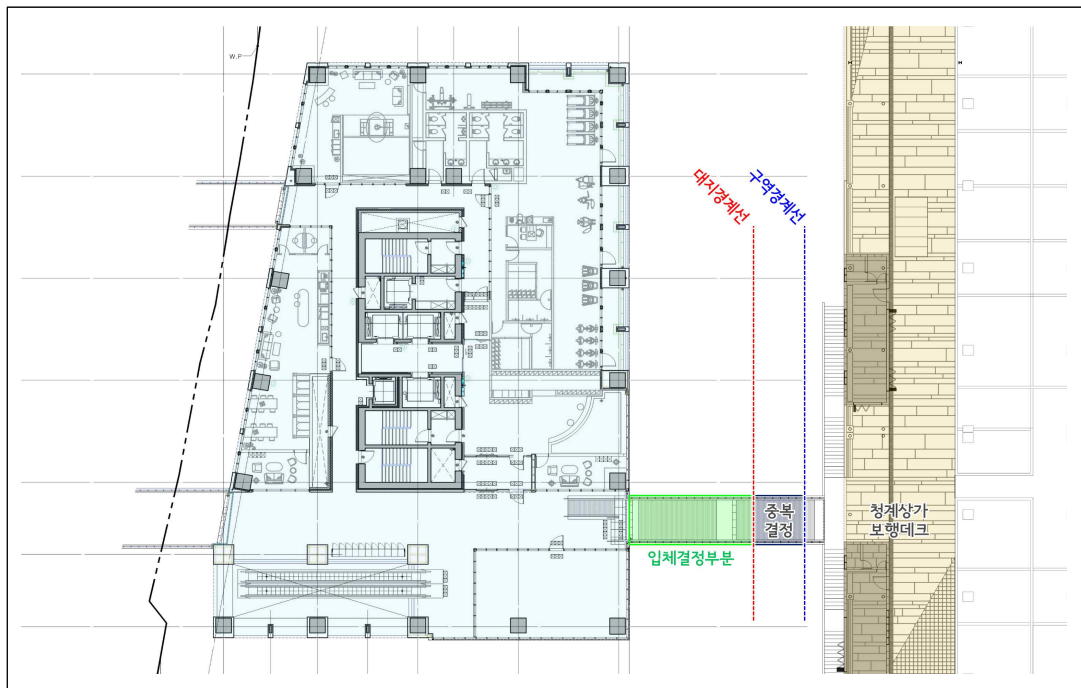
■ 도시계획시설 결정도(변경)



■ 도시계획시설(도로) 입체적 결정 (단면도)



■ 도시계획시설(도로) 입체적 결정 (2층 평면도)



공 고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4-1668호

「2024년 서울특별시 봉사상」 수상후보자 추천공고

서울특별시에서는 한국일보사와 공동으로 밝고 건전한 사회 기풍을 진작시키고 약자와 동행하는 서울을 구현하고자 매년 「서울특별시 봉사상」을 시상하고 있습니다. 나눔과 선행, 지역사회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봉사한 모범 시민 및 단체를 올해의 서울특별시 봉사상 수상자로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7월 4일
서울특별시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시민상 운영 조례

□ 시상종류 : 서울특별시 봉사상

□ 시상인원 : 총 21명 (대상 1명, 최우수상 5명, 우수상 15명)

- 총 시상인원의 범위 내에서 공적심사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단체와 개인으로 구분하여 ‘대상’ 선정 가능
- 수상자로 적합한 자가 없는 경우에는 선정하지 아니할 수 있음

□ 시상내용 : 상패 및 메달

※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부상 미지급

□ 추천대상자

- 수상후보자 추천 최초 공고일(’ 24. 7. 1.)까지 서울시에 3년 이상 계속 거주하거나 사업장(주된 직장)을 갖고 있는 개인 및 단체 중,
 - 약자와의 동행이라는 시정가치 실현을 위해 노력한 시민 및 단체
 - 나눔·선행, 시민화합, 지역사회발전 등에 헌신 봉사한 시민 및 단체
 - 자신의 재능을 이웃과 함께 나누는 재능봉사를 실천한 시민 및 단체
 - 문화, 인권 등 다양한 분야에서 봉사를 실천한 시민 및 단체
- 그 밖에 시장이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한 개인·단체 등

추천 제외 대상

- ▶ 서울특별시 봉사상을 수상한 지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 같은 해에 서울특별시 시민상 다른 분야의 상을 이미 수상하였거나 수상자로 확정된 자
- ▶ 주요비위(음주운전, 금품·향응수수, 공금 횡령·유용, 성희롱, 성폭력 등)로 형사 처벌을 받은 자
- ▶ 수사 중,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이거나 일정 기준의 형사처분을 받은 자(붙임 참조)
- ▶ 산업안전보건법, 공정거래관련법, 근로기준법, 노동관계법 및 세법 위반에 따른 제외자
- ▶ 표창이 취소된 적이 있는 자 및 기타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거나 지탄을 받는 자
- ▶ 현직공무원(서울시 투자기관 및 공공기관 임직원 포함), 시·구의원

□ 추천권자

구분	행정기관 (자치구, 교육기관 등 관공서)	등록단체	일반 시민(개인) 미등록단체(동호회 등)
추천 자격	해당 기관장 (○○구청장 등)	해당 단체의 장 (○○병원장, ○○협회장 등)	동일세대 구성원 아닌 만 19세 이상 30인 이상 연서
접수 방법	자체 공적심사의결서를 첨부한 공문 제출	우편 또는 누리집(홈페이지) 접수 ※ 단체등록증 사본 제출 (사업자등록증, 고유번호증 등)	우편 또는 누리집(홈페이지) 접수

□ 제출서류 (※ 미비 시 접수 제외)

- ① 공적조서 1부(공통) ② 공적 요약서 1부(공통)
- ③ 봉사상 추천에 대한 동의서 1부(공통) ④ 자가체크리스트 1부(공통)
- ⑤ 행정정보이용동의서 1부(공통) ⑥ 공적심사의결서 1부(행정기관이 추천 시)
- ⑦ 단체등록증 사본 1부(등록단체가 추천 시)
- ⑧ 후보자 추천서 1부(개인·미등록단체가 추천 시)
- ⑨ 공동추천자 명단 1부(개인·미등록단체가 추천 시)
- ⑩ 공적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일체

□ 접수기간 : ' 24. 7. 1. (월) ~ 8. 8. (목) [39일 간]

□ 접수방법 : 우편 접수 또는 누리집(홈페이지) 등록

- 우편 접수처 :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10, 7층 시민협력과(04524)
- 누리집(홈페이지) : www.seoul.go.kr 서울소식 > 공고 > 고시공고 게시물
- ※ 우편 접수의 경우 구비서류 ①,②,⑧번을 편집 가능한 한글파일 형태로 전자우편(tkdgns9393@seoul.go.kr) 제출 바람

※ 누리집(홈페이지) 접수의 경우 모든 서류는 원본(스캔본) 제출하며 ①,②,⑧번 서류는 편집 가능한 한글파일 형태로 추가 제출 바람

※ 모든 접수는 '24. 8. 8.(목)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유효하므로 전송에 소요되는 시간을 감안하여 발송하기 바람, 우송 중 분실된 우편물에 대하여는 책임지지 않음.

□ 수상자 발표 : 시상일 이전 수상자에 한해 개별통지(10월 예정)

□ 시 상 식 : ' 24. 10. 31.(목) 예정(사정에 따라 일정 변경 가능)

□ 기타사항

- 제출된 서류와 자료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작성서식은 서울특별시 누리집(www.seoul.go.kr) 서울소식 ⇒ 공고 ⇒ 고시·공고 게시글에서 내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 수상후보자가 제출한 공적내용 등이 사실과 다르거나, 사회적 물의 야기 등으로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에는 수상자에서 제외됩니다.
- 기타 상세한 사항은 다산콜센터(국번없이 120번), 서울특별시 시민협력과(☎ 2133-631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에 따른 추천 제한 대상 준하여 적용

서울특별시 시민상 추천 제한 대상

※ 해당 제한 사유의 발생 기준일 : 추천일

1. 음주운전, 금품·향응수수, 공금 횡령·유용, 성희롱, 성폭력 비위 등 주요비위로 징계처분 또는 형사 처벌을 받은 자
2. 수사 중이거나 형사사건·처분 관련
 - 수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또는 단체(기관)
 - 사형, 무기 또는 1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받은 자
 - 1년 미만 징역·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1년 미만 징역·금고의 집행유예 2년 미경과자 또는 1년 이하 징역·금고의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3년이내에 2회 이상 또는 200만원 이상(1회 벌금액 기준)의 벌금형을 받은 자
3. 「서울특별시 시민표창 운영지침」에 따라 표창이 취소된 적이 있는 자 또는 단체(기관)
4. 관련법 위반에 따른 제외자
 -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과 관련하여 산업재해 등으로 최근 3년 이내 1회 이상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단체 및 기관)과 그 임원
 -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등과 관련하여 최근 3년 이내 3회 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거나 최근 1년 이내 3회 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 및 기관 포함)과 그 임원
 - 근로기준법 위반 등과 관련하여 최근 3년간, 임금체불과 관련 명단공개 또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 사업주(기관장)
 - 세법 위반 등과 관련하여 국세, 관세 또는 지방세 체납 중에 있는 자 또는 단체
5.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 야기, 언론보도 또는 소송·민원 제기 등의 논란이 있는 자 또는 단체

공통 제출서식① (추천자 작성)

공 적 조 서

(1) 성 명	(한자) (원명)											
(2) 생년월일							(3) 군번 (군인의 경우)					
(4) 등록기준지 (국적)												
(5) 주 소												
(6) 직 업							(7) 소 속					
(8) 직 위							(9) 등급(직급, 계급)				(10) 근무기간	
										년	월	
(11) 공적요지(50자내외)							(12) 공적분야 코드					
<예시-100자 이내 작성 필수>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분야에서 ○○ 등을 위해 노력함으로써 ○○분야 사업기간을 단축(○년 ○월)하여 사업추진이 적기에 완료되도록 기여함												
(13) 추천훈격	서울특별시 봉사상						(14) 추천순위					
조 사 자												
(15) 소 속	○○○○실(본부·국)						(15) 직 위	△△△△과장				
(17) 직 급	지방서기관						(18) 성 명	◇ ◇ ◇ (인)				
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 천 관 ○○구청(단체)장 ○ ○ ○ (인)												

주요학력 및 경력			
(19) 년 월 일	(20) 이 력	(21) 년 월 일	(22) 이 력
과거 포상기록(훈장·포장·표창별로 기록)			
(23) 년 월 일	(24) 내 용	(25) 년 월 일	(26) 내 용
(27) 공 적 사 항			
○ 활동사진 별도 제출 없이 공적내용에 포함하여 작성 (사진 최대 6매이내) - 공적내용이 포함된 동영상, 언론보도자료, 잡지, 책자 등은 별도 제출 가능			

공통 제출서식② (추천자 작성)

공 적 요 약 서

관리번호		※ 아래 굵은 선 안쪽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성명(단체명)	생년월일(사업자번호)	
공 적 내 용	○ 증빙할 수 있는 객관적 사실위주로 작성 : 일자, 장소, 실적 등 예) '00.5.20 ~ '05.6.31 (5년간) : OC요양원에서 매주 3회 4시간 급식봉사 ※ 1쪽 이내 개조식으로 간략히 작성	
확 인 내 용		

2024. . .

조사자 : 소 속 직 급 성 명 (인)

공통 제출서식③ (피추천자 작성)**서울특별시 봉사상 추천에 대한 동의서**

성명 (단체명)	생년월일 (단체등록번호 등)	주소	서울시 거주기간 (2024.7.1.까지)	개인 휴대전화 (단체 대표 휴대전화번호)

위 본인(단체)은 2024년 서울특별시 시민상(봉사상) 수상후보자로 추천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며, 다음 사항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단체)은 「서울특별시 시민상 운영 조례」의 수상을 위한 거주 요건에 해당됨을 충분히 확인합니다. ☐ 확인함 ☐ 확인하지 않음

※ 거주 요건 : 수상후보자 추천공고일(2024. 7. 1.)까지 서울시에 3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거나 사업장(주된 직장)을 갖고 있는 개인 또는 단체

2. 본인(단체)은 「서울특별시 시민상 운영 조례」의 제한 사유(이중시상의 금지원칙)에 해당되지 않음을 충분히 확인하였으며, 향후 이에 해당하는 사실이 밝혀지는 경우 수상 결정의 취소 및 수상 철회 등 수상과 관련된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제한 사유 : 서울특별시 봉사상을 수상한 지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같은 해에 서울특별시 시민상 다른 분야의 상을 이미 수상하였거나 수상자로 확정된 자

3. 본인(단체)은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의 제한 사유(불임 참고) 및 신고의무 사항을 충분히 확인하였으며, 향후 이에 해당하는 사실이 밝혀지는 경우 수상 결정의 취소 및 수상 철회 등 수상과 관련된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신고의무 사항 : 경찰·검찰의 조사(수사)를 받게 된 경우,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감사원 또는 감사부서의 조사를 받게 된 경우, 징계 또는 불문경고 처분을 받은 경우

개인정보 제공동의☐ 동의 ☐ 동의하지 않음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의거하여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당사자는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를 거부할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봉사상 수상 및 기록 확인에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목적

- ㉠ 후보자에 대한 범죄경력 등 수상 제한사유 확인을 위한 후보자 공개 검증, 현지실사 및 공적심사
- ㉡ 수상자의 공적을 기리고 시민에게 홍보하기 위한 서울시 홈페이지 공고 및 보도자료, 각종 간행물, 인터넷 게시물 게재 ※공개정보: 성명, 소속, 사진, 공적 내용, 수상일자
- ㉢ 상패 수여 및 시민상수여확인서 발급

2.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 수상 기록부는 영구, 기관별 수상 추천서 5년**3. 개인정보의 수집 내용**

: 성명, 주소, 전화번호, 직장, 직장주소, 거주기간,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공적사실, 인물(단체)사진

2024. 성명(단체명)

(인)

서울특별시장 귀하

붙임

※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의 추천 제한 대상에 준하여 적용함

서울특별시 시민상(봉사상) 추천 제한 대상

※ 해당 제한 사유의 발생 기준일 : 추천일

1. 음주운전, 금품·향응수수, 공금 횡령·유용, 성희롱, 성폭력 비위 등 주요비위로 징계처분 또는 형사 처벌을 받은 자
2. 수사 중이거나 형사사건·처분 관련
 - 수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또는 단체(기관)
 - 사형, 무기 또는 1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받은 자
 - 1년 미만 징역·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1년 미만 징역·금고의 집행유예 2년 미경과자 또는 1년 이하 징역·금고의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3년이내에 2회 이상 또는 200만원 이상(1회 벌금액 기준)의 벌금형을 받은 자
3. 「서울특별시 시민표창 운영지침」에 따라 표창이 취소된 적이 있는 자 또는 단체(기관)
4. 관련법 위반에 따른 제외자
 -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과 관련하여 산업재해 등으로 최근 3년 이내 1회 이상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단체 및 기관)과 그 임원
 -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등과 관련하여 최근 3년 이내 3회 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거나 최근 1년 이내 3회 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 및 기관 포함)과 그 임원
 - 근로기준법 위반 등과 관련하여 최근 3년간, 임금체불과 관련 명단공개 또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 사업주(기관장)
 - 세법 위반 등과 관련하여 국세, 관세 또는 지방세 체납 중에 있는 자 또는 단체
5.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 야기, 언론보도 또는 소송·민원 제기 등의 논란이 있는 자 또는 단체

공통 제출서식④ (피추천자 작성)
서울특별시 시민상(봉사상) 수상후보자 자가 체크리스트

▶서울특별시 시민상(봉사상) 수상후보자의 추천 제한사유(범죄경력 등) 해당여부에 대한 사전 본인확인절차를 거쳐 후보자 추천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 ※ 추천서 제출 전 자체 사전검토 자료로 활용

연번	항목	점검 사항	해당여부 (O / X)	비고
1	징계 및 형사처벌	음주운전, 금품 향응수수, 공공 횡령·유용, 성희롱, 성폭력 비위 등 주요비위로 징계처분 또는 형사 처벌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2	수사 또는 형사처분	수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또는 단체)입니까?		
3		사형, 무기 또는 1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받은 자입니까?		
4		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 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입니까?		
5		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 미경과자 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 의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입니까?		
6		추천일 전 3년 이내에 2회 이상 또는 200만원 이상(1회 벌금액 기준)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입니까?		
7	표창취소	「서울특별시 시민표창 운영지침」에 따라 표창이 취소된 적 이 있는 자 또는 단체(기관)입니까?		
8	관련법 위반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최근 3년 이내 1회 이상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및 그 임원에 속합니까?		
9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법인 및 그 임원 - 최근 3년 이내 3회 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거나, - 최근 1년 이내 3회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 포함) 및 그 대표자와 책임 있는 임원에 속합니까?		
10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최근 3년간, 임금체불과 관련 명단공개 또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기관장)에 속합니까?		
11		추천일 당시 국세, 관세 또는 지방세 체납 중에 있는 자 또는 단체에 속합니까?		
12	사회적 물의 유발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언론보도 또는 소송·민원 제기 등의 논란을 일으킨 적이 있습니까?		

위 기재 사항이 사실임을 확인합니다.

2024. . . .

수상후보자 성명(단체명)

(인)

공통 제출서식⑤ (피추천자 작성) ※ 개인의 경우에만 작성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 이용기관 명칭 : 서울특별시
2. 이용사무(이용목적) : 서울특별시 시민상 시상을 위한 주소변동 이력 확인
(「서울특별시 시민상 운영 조례」 제3조 제1항에 따른 서울시 3년이상 거주여부 확인을 위함)
3. 공동이용 행정정보(구비서류) : 주민등록표 등·초본(J)

※ 이용기관은 본인이 동의한 위 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 등록번호가 포함된 행정정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용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기재하여 주십시오.(필요시 기재사항)

(☐ 주민등록 ☐ 여권 ☐ 외국인등록 ☐ 운전면허) 번호 : 예시) 800101-1234567

4. 정보주체(본인) 동의사항

- 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만일, 본인이 위 행정정보 이용에 대해 동의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본인이 해당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024년 월 일

대상자 본인

성 명 : 000 (서명 또는 인)생년월일 : 1980. 1. 1.전화번호 : 000-0000-0000

서울특별시장 귀하

일반시민(개인) 및 미등록단체(동호회 등) 제출서식① (추천자 작성)

서울특별시 봉사상 후보자 추천서

후보자 ▶개인:성명 ▶단체:단체명	한 글	성 별	단체의 경우 기재생략
주 소 (소재지)	[서울시 거주기간 : 년]		
생년월일 ▶단체의 경우 등록번호		전화번호	자 택 : 핸드폰 :

위 사람(단체)을 2024년도 서울특별시 봉사상 수상후보자로
공적조서를 첨부하여 추천합니다.

2024년 월 일

추천자 시민(개인) 및 단체명 00외 0인/00단체 (인)
☐개인 / ☐단체 (시민추천 : 00외 0인)

대 표 자 홍길동 (인)

주소(소재지) :

전 화 번 호

서울특별시장 귀하
한국일보사사장

- (1) 추천자 : 개인 또는 미등록단체가 후보자를 추천하는 경우, '공동추천자 명단' 서식 작성 (첨부2)
 등록단체가 후보자를 추천하는 경우, 단체등록증 사본을 제출하여야 함
- (2)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우편 접수인 경우 편집가능한 전자파일 추가제출 필수

일반시민(개인) 및 미등록단체(동호회 등) 제출서식①-1

공동추천자 명단

* 행정기관 외 시민 및 미등록단체가 추천시 작성
 (동일세대 구성원이 아닌 만 19세 이상, 30인 이상의 연서로 기재)

연번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서명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 공동 서명부는 원본으로 제출하도록 함 (전자접수의 경우 스캔본 가능)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4-1916호

과학관 변경등록 공고(아쿠아플라넷63)

「과학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변경등록한 과학관을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2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7월 4일
서울특별시

기 존	변 경
1. 명 칭 : 아쿠아플라넷63	1. 명 칭 : 아쿠아플라넷63
2. 등록번호 : 제 서-14호	2. 등록번호 : 제 서-14호
3. 구 분 : 사립전문과학관	3. 구 분 : 사립전문과학관
4. 설 립 자 : 문석	4. 설 립 자 : 문석
5. 대 표 자 : 박종태	5. 대 표 자 : 한훈석
6.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63로 50	6.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63로 50
7. 규 모 : 연면적 4,705.07㎡	7. 규 모 : 연면적 4,705.07㎡

※ 서울특별시 경제정책과, 담당자 : 윤재윤(02-2133-5242)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4-1924호
차량운행제한위반과태료 부과고지 및 독촉고지 공시송달 공고

「도로법」 제77조(차량의 운행제한) 위반자들에게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제17조, 「지방세징수법」 제32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고지서 및 독촉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었고 대상자와 연락도 되지 않아 송달이 불가능하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및 「지방세기본법」 제3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4년 7월 4일
서울특별시

1. 건 명: 차량운행제한위반과태료 부과고지 및 독촉고지 공시송달
2. 근 거: 「도로법」 제77조, 제117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5조,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제17조, 「지방세징수법」 제32조, 「지방세기본법」 제33조,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가, 차량운행제한위반과태료 부과고지

대 상 자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처분 내용
성명	주 소		
김*구	충청남도 당진시 송악읍 신북운로1길 ****, ***호(송악읍)	일시: 2024-04-24 15:18 장소: 가양동 CJ부지 철거공사 내용: 도로법 제77조 제2항 임차인 등의 관리 의무 소홀	처분일: 2024. 5. 31. 과태료: 50만 원 납기일: 2024. 7. 31.

나. 차량운행제한위반과태료 독촉고지

대 상 자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처분 내용
성명	주 소		
김*환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원종로 **, *동 ***호(원종동)	일시: 2024-02-18 09:48 장소: 여의하류IC 내용: 운행제한 폭 0.28m 초과	처분일: 2024. 3. 28. 과태료: 30만 원 납기일: 2024. 5. 31.

4. 공고기간: 2024. 7. 4.~2024. 7. 17.

5. 납부기한: 2024. 7. 31.

6. 납부방법 및 수납기관

가. 강서도로사업소 관리단속과로부터 고지서를 받아 시중 은행 본·지점(한국은행 제외), 농협 및 수협중앙회 본·지점, 우체국에 납부할 수 있고, 인터넷(etax.seoul.go.kr)에 접속하여 신용카드나 계좌이체로도 납부가 가능하며, 또한 전용계좌에 입금함으로써 편리하게 과태료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나. 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에 따라 최고 75% 가산금이 부과되며 재산압류, 관허사업 제한, 신용정보 제공, 감치 등의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7.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안내

가. 이의제기 기한: 공고기간 만료일로부터 60일

나. 이의제기 기한 내에 서면으로 과태료 부과 처분청에 이의제기를 할 수 있으며, 이의제기 기한 내에 이의제기서가 도달하지 않은 경우 이의제기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다. 접수된 이의제기서는 관할법원에 통보되어 해당 사건에 대한 과태료 재판이 진행됩니다.

라. 과태료 부과 처분청(이의제기서 제출처)

- 주소: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 237(마곡동) 강서도로사업소 관리단속과
- 전화번호: 02-2657-7922, 팩스번호: 02-2657-7950
- 전자우편: skyblue7@seoul.go.kr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4-1932호

차량운행제한 위반 과태료 부과고지 공시송달 공고

「도로법」 제77조(차량의 운행제한 및 운행허가) 규정 위반자에 대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과태료의 부과)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과태료 부과 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및 「지방세기본법」 제3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4년 7월 4일
서울특별시

1. 건 명 : 차량운행제한 위반 과태료 부과고지 공시송달
2. 근 거 : 도로법 제77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 지방세기본법 제33조,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대상자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처분 내용
성명	주소		
노*철	전라남도 여수시 성산2길	일시: 2024-03-24 06:33 장소: 광나루로(구리 ~ 여의도) 내용: 007가8220(크레인4축, 폭 초과(실측값: 2.69m, 초과값: 0.19m), 적재물:크레인)	처분일: 2024. 05. 21. 과태료: 30만원

4. 공고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5. 과태료 부과처분 안내
 - 가. 과태료 납부기한 : 2024. 07. 31.
 - 나. 납부방법 및 수납기관
 - 성동도로사업소 관리단속과로부터 고지서를 받아 시중은행 본·지점(한국은행 제외), 농협 및 수협중앙회 본·지점, 우체국에 납부할 수 있고, 인터넷(<http://etax.seoul.go.kr>)에 접속하여 신용카드나 계좌이체로도 납부 가능하며, 또한 납부 전용(가상)계좌에 입금함으로써 편리하게 과태료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 다. 납부기간 내 납부하시기 바라며,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가 없으면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대 75%까지 가산금이 부과되고,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 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 징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라. 또한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이의를 해당 행정청에 제기할 수 있으며(이의제기 기간 : 공고기간 만료일 다음날부터 60일),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주소지 관할 법원에서 과태료 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이의제기 및 기타 자세한 내용은 서울특별시 성동도로사업소 관리단속과 (☎ 02-2210-156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4-1933호

회계직인 등록 및 폐기 공고

서울특별시 회계관계공무원 직인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거 회계직인을 등록하고 동법 규칙 제 11조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공고합니다.

2024년 7월 4일
서울특별시

- 1. 직인 등록 및 폐기 사유 :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 명칭 변경(2024.7.1.字)
- 2. 직인 등록 및 폐기 일자 : 2024.7.1.字
- 3. 회계관계공무원 직인 등록 내용
가. 직인등록

소관부서	회계직인명	서체 및 규격	인영	직인 등록일자	사유
디지털도시국 디지털정책과	서울특별시일반회계 디지털정책과 분임징수관인	훈민정음체 2.0cm X 2.0cm		2024.7.1.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 명칭변경 (2024.7.1.)
	서울특별시일반회계 디지털정책과 수입금출납원인	훈민정음체 1.8cm X 1.8cm			
	디지털정책과 일상경비출납원인	훈민정음체 1.8cm X 1.8cm			
	디지털정책과 분임물품출납원인	훈민정음체 1.8cm X 1.8cm			

나. 직인폐기

소관부서	회계직인명	서체 및 규격	인영	직인 폐기일자	사유
디지털정책관 디지털정책담당관	서울특별시일반회계 디지털정책담당관 분임정수관인	훈민정음체 2.0cm X 2.0cm		2024.7.1.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 명칭변경 (2024.7.1.)
	서울특별시일반회계 디지털정책담당관 수입금출납원인	훈민정음체 1.8cm X 1.8cm			
	디지털정책담당관 일상경비출납원인	훈민정음체 1.8cm X 1.8cm			
	디지털정책담당관 분임물품출납원인	훈민정음체 1.8cm X 1.8cm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4-1936호
정보통신공사업 신규 등록 공고

정보통신공사업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통신공사업의 신규 등록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7월 4일
서울특별시

1. 정보통신공사업의 신규 등록 내역

연번	등록번호	등록일자	상 호 대 표 자 법인(사업자)등록번호	영업소 소재지
1	204006	24. 6. 21.	주식회사 그로메트릭 김관영 110111-7599678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74길 45, 비1-112호, 비1-113호(서초동, 엔데버빌딩)
2	204007	24. 6. 21.	주식회사 이앤오즈 (ENOZ INC) 조민욱 110111-3936527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2, 1209호(가산동, 우림라이온스밸리 2차)
3	204008	24. 6. 26.	주식회사 퍼스트정보 정기성 110111-4226977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201, 비동 13층 비-1308호(문정동, 송파테라타워2)

2. 근거법령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공사업의 등록 등),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공사업등록의 신청 등)

3. 내용문의 : 서울특별시 정보통신보안담당관 02)2133-1867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4-1939호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정보 현행화 요청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의거 서울특별시에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 중 등록정보(사무소 소재지) 현행화가 필요한 비영리민간단체를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공시송달)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7월 4일

서울특별시

1. 비영리민간단체 현행화 필요 단체 현황

-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의거 서울특별시(정신건강과)에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 중 등록정보(사무소 소재지) 현행화가 필요한 4개 단체

※ 유산·우편으로 연락이 되지 않고, 사무소 소재지에 방문하였으나 단체 사무소가 없는 단체

연번	단체명	소재지	대표자	등록일자	부서
1	안티카	서울시 은평구 통일로 684 (녹번동, 서울혁신파크) 미래청 1층	심명신	2020-12-03	정신건강과
2	한국지역사회정신건강 자원봉사단	서울시 마포구 독막로 274 (대흥동)	양옥경	2000-05-09	정신건강과
3	라이프라인 자살예방센터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17길 7-30(이화동)	박종철	2006-01-12	정신건강과
4	알자 알코올, 약물중독	서울시 광진구 자양로 165, 송곡회관 201호(구의동)	이상국	2003-11-25	정신건강과

2. 문의처 : 서울특별시 정신건강과 백일선 사무관(02-2133-7836)

3. 회신기간 : 2023. 7. 19.(금)

4. 별도 연락·회신이 없는 비영리민간단체는 운영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하여, 말소 절차 이행 예정. 끝.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4-1940호

서울특별시무형유산 전승교육사 인정 계획 예고

「서울특별시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제17조제4항 및 제21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서울특별시무형유산 전승교육사 인정에 대해 다음과 같이 예고 하오니 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서울특별시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7월 4일
서울특별시

1. 예 고 일 : 시보공고일

2. 예고내용

○ 서울특별시무형유산 전승교육사 인정 예고

종별	종목 명칭	인정 대상자		
		성 명	성별	생년월일
무형유산 (예능/개인)	제39호 아쟁산조	박희정	여	1974. 10. 21.

3. 예고기간 : 공고일부터 30일

4. 예고사유 : 제39호 아쟁산조 전승교육사 인정 대상자 박희정

박희정은 선대의 음악적 재능을 이어받아 탄탄한 기본기가 갖추어져 있으며, 음정, 박자는 물론 성음까지 두루 갖추어진 연주자임. 보유자가 병석에 있을 때 몇몇 이수자들과 함께 전수자들을 교육하며 아쟁산조의 전승 활동에 참여함. 보유자의 곁에서 오랜 시간 동안 아쟁산조를 익히면서 전승의지와 기반을 다져왔음을 알 수 있음. 이에 보유자 유고 상황에서 박희정을 서울특별시무형유산 제39호 아쟁산조 전승교육사로 인정하여 본 종목의 전승 활성화를 꾀하고자 함.

5. 의견제출 : 방문제출, 팩스, 또는 우편 제출(공고일부터 30일간)

① 전화 : (02)2133-2616(박나운 주무관) ② 팩스 : (02)768-8815

③ 우편 : (04520)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124, 한국프레스센터 4층 문화유산보존과. 끝.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4-1942호

회계직인 등록 및 폐기 공고

서울특별시 회계관계공무원 직인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거 회계직인을 등록하고 동법 규칙 제 11조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공고합니다.

2024년 7월 4일
서울특별시

1. 직인 등록 및 폐기 사유 :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 명칭 변경(2024.7.1.字)
2. 직인 등록 및 폐기 일자 : 2024.7.1.(일반회계)
3. 회계관계공무원 직인 등록 내용
가. 직인등록

소관부서	회계직인명	서체 및 규격	인영	직인 등록일자	사유
민생사법경찰국 경제수사과 (' 24.7.1.字)	서울특별시일반회계 경제수사과 분임징수관인	훈민정음체 2.0cm X 2.0cm		2024.7.1.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 명칭변경 (2024.7.1.)
	서울특별시일반회계 경제수사과 수입금출납원인	훈민정음체 1.8cm X 1.8cm			
	서울특별시 경제수사과 일상경비출납원인	훈민정음체 1.8cm X 1.8cm			
	서울특별시 경제수사과 분임물품출납원인	훈민정음체 1.8cm X 1.8cm			

나. 직인폐기

소관부서	회계직인명	서체 및 규격	인영	직인 폐기일자	사유
민생사법경찰단	서울특별시일반회계 민생사법경찰단 분임징수관인	훈민정음체 2.0cm X 2.0cm		2024.6.30.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 명칭변경 (2024.7.1.)
	서울특별시일반회계 민생사법경찰단 수입금출납원인	훈민정음체 1.8cm X 1.8cm			
	서울특별시 민생사법경찰단 일상경비출납원인	훈민정음체 1.8cm X 1.8cm			
	서울특별시 민생사법경찰단 분임물품출납원인	훈민정음체 1.8cm X 1.8cm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4-1943호

과학관 등록말소 공고(아쿠아플라넷63)

「과학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등록말소한 과학관을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2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7월 4일
서울특별시

1. 말소연월일 : 2024. 7. 1.
 2. 등록번호 : 제서-14호
 3. 명 칭 : 아쿠아플라넷63
 4. 구 분 : 사립전문과학관
 5. 설 립 자 : 문석
 6.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63로 50
 7. 규 모 : 연면적 4,705.07㎡
- ※ 서울특별시 경제정책과, 담당자 : 윤재윤(02-2133-5242)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4-1944호

회계직인 폐기 공고

「서울특별시 회계관계 공무원 직인 규칙」 제7조 규정에 의거 회계 직인을 폐기하고 같은 규칙 제11조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공고합니다.

2024년 7월 4일

서울특별시

1. 직인 폐기 사유 : ' 24년 7월 1일자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 폐지

2. 회계관계공무원 직인 폐기내용

가. 직인폐기

소관부서	직인명	서체 및 규격	인영	직 인 폐기일자	비 고
서울특별시 시민건강국 감염병연구센터	감염병연구센터 일상경비출납원	훈민정음체 1.8cm X 1.8cm		2024. 7. 1.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 폐지
	감염병연구센터 분임물품출납원	훈민정음체 1.8cm X 1.8cm			
	서울특별시 일반회계 감염병연구센터 분임징수관인	훈민정음체 2cm X 2cm			
	서울특별시 일반회계 감염병연구센터 수입금출납원인	훈민정음체 1.8cm X 1.8cm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4-1947호

수도요금 체납에 따른 재산압류예고 공시송달 공고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제49조 및 「지방세기본법」 제33조에 의거 수도요금 체납에 따른 재산(부동산)압류예고서를 소유자 거주지(주민등록번호 등·초본상)에 송달하려 하였으나, 폐문부재,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인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4년 7월 4일
서울특별시

1. 공고기간 : 2024. 7. 4. ~ 2024. 7. 17.

2. 공시송달 공고사항

: 체납내역 및 압류에 관한 사항

고객번호	급수설비 소재지	납 기			
		과 목	납 기	횟수	금 액(원)
021892706	관악구 남부순환로246길 32-3, 201호	상·하수도요금	23.06 ~ 24.04	7	351,620
압류구분	압류물건	물 건 소 유 자		압류금액(원)	압류예정일
		성 명	주 소		
부동산 (건물)	관악구 남부순환로246길 32-3, 201호 (봉천동 1710-9)	이○숙	관악구 남부순환로246길 32-3, 201호 (봉천동 1710-9)	351,620	24. 7. 18. ~

3. 「지방세기본법」 제33조에 따라 공고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때에 재산압류예고서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고, 「같은 법」 제31조 제2항에 ‘고지서가 납부기한이 지난 후에 도달한 경우에는 고지서가 도달한 날’을 납부기한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송달의 효력 발생일(24. 7. 17.)이 납부기한임을 알려드립니다.

4.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남부 수도사업소 요금과 김혜리(☎02-3146-4493)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4-1949호

종합공사시공업 행정처분(등록말소) 공시송달 공고

「건설산업기본법」을 위반한 건설사업자에 대하여 행정처분(등록말소)하고, 이 사실을 법인의 본점 소재지 및 대표이사 자택 주소지로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 부재 등으로 송달이 불가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하고자 합니다.

2024년 7월 4일
서울특별시

1. 공고기간: 2024. 7. 4. ~ 2024. 7. 18.
2. 처분대상 및 내용

업 체 명 (대표)	업종 및 등록번호	소 재 지	위반내용	위반 법규	처분내용	처분 근거
창조공간건설(주) (이종선)	건축공사업 01-3699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동 158 5층	영업정지 후 처분종료일까지 등록기준 미달 사항 미보완 (보증가능금액)	법 제10조 제4호	등록말소 (2024.7.23.)	법 제83조 제3호의2

3. 또한 위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 제27조 및 행정소송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이 문서 송달일)로부터 90일,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처분청(처분을 행한 행정기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행정심판 청구서를 제출하거나 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이 문서 송달일)로부터 90일, 있었던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4. 그리고 행정심판위원회는 경제적 능력으로 인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청구인에 대하여 무료로 국선대리인 선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행정심판위원회에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온라인 행정심판(www.simpan.go.kr)을 통해 국선대리인 선임을 신청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건설혁신과 ☎02)2133-8105로 문의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4-1979호

회계직인 등록 및 폐기 공고

서울특별시 회계관계공무원 직인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거 회계직인을 등록 및 폐기하고 동법
규칙 제11조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공고합니다.

2024년 7월 4일
서울특별시

- 1. 직인 등록 및 폐기사유 :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명 변경(2024.7.1.字)
- 2. 직인 등록 및 폐기일자 : 2024.7.1.
- 3. 회계관계공무원 직인 등록 및 폐기 내용

가. 직인등록

소관부서	회계직인명	서체 및 규격	인영	직인 등록일자	사유
경제정책실 국제교류과	서울특별시 일반회계 도시외교담당관 분임장수관인	훈민정음체 2.0cm X 2.0cm		2024.7.1.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명 변경 (2024.7.1.)
	서울특별시 일반회계 도시외교담당관 일상경비출납원인	훈민정음체 1.8cm X 1.8cm		2024.7.1.	
	서울특별시 일반회계 도시외교담당관 수입금출납원인	훈민정음체 1.8cm X 1.8cm		2024.7.1.	
	서울특별시 일반회계 도시외교담당관 분임물품출납원인	훈민정음체 1.8cm X 1.8cm		2024.7.1.	

나. 직인폐기

소관부서	회계직인명	서체 및 규격	인영	직인 등록일자	사유
경제정책실 국제협력과	서울특별시 일반회계 국제교류과 분임징수관인	훈민정음체 2.0cm X 2.0cm		2023.7.17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명 변경 (2024.7.1.)
	국제교류과 일상경비출납원인	훈민정음체 1.8cm X 1.8cm		2023.7.17	
	국제교류과 수입금출납원인	훈민정음체 1.8cm X 1.8cm		2023.7.17	
	국제교류과 분임물품출납원인	훈민정음체 1.8cm X 1.8cm		2023.7.17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4-1980호

회계관계공무원 직인 폐기 및 등록 공고

「서울특별시 회계관계 공무원 직인 규칙」 제7조 및 제9조 규정에 의거 회계관계공무원 직인을 폐기 및 등록하고 같은 규칙 제11조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공고합니다.

2024년 7월 4일
서울특별시장

1. 직인 폐기 및 등록사유 : 2024. 7. 1.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명칭 변경
2. 직인 폐기 및 등록일자 : 2024. 7. 1.
3. 회계관계공무원 직인 폐기 및 등록내용

가. 폐기 직인

소관부서	직 인 명	서체 및 규격	인 영	폐기일자	비 고
서울특별시 문화본부 문화재정책과	문화재정책과 일상경비출납원인	훈민정음체 1.8cm×1.8cm		2024.7.4.	조직개편으로 인한 부서명칭 변경
	문화재정책과 분임물품출납원인	훈민정음체 1.8cm×1.8cm			
	문화재정책과 분임징수관인	훈민정음체 2cm×2cm			

나. 등록 직인

소관부서	직 인 명	서체 및 규격	인 영	폐기일자	비 고
서울특별시 문화본부 문화유산보존과	문화유산보존과 일상경비출납원인	훈민정음체 1.8cm × 1.8cm		2024.7.4.	조직개편으로 인한 부서명칭 변경
	문화유산보존과 분임물품출납원인	훈민정음체 1.8cm × 1.8cm			
	문화유산보존과 분임징수관인	훈민정음체 2cm × 2cm			

서울특별시교육청

[공 고]

◆ 서울특별시교육청공고 제2024-245호

서울특별시교육청 금고지정 공고

「시·도교육청 금고지정에 관한 예규」 및 「서울특별시교육청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3조 및 제15조에 따라 서울특별시교육청 금고업무를 취급할 차기 금고 지정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7월 4일
서울특별시교육감

1. 지정은행: 농협은행(주)

2. 약정기간: 2025. 1. 1. ~ 2028. 12. 31.(4년)

3. 금고의 주요업무

- 가. 교육비특별회계 각종 세입금의 수납 및 보관, 세출금의 지급
- 나. 세입세출외현금 및 각종 잡종금의 수납·보관 및 지급
- 다. 유가증권의 출납 및 보관
- 라. 지방채 및 일시차입금의 사무, 여유자금의 예치 및 관리
- 마. 교육전자금융서비스(e-교육금고) 제공
- 바. 세입·세출내역 전산 기록유지
- 사. 기타 금고업무 취급상 필요하다고 지정한 업무 등

4. 평가결과

순 위 \ 구 분	금융기관명	총 점	비 고
1순위	농협은행(주)	885.80	만점 900점
2순위	(주)우리은행	858.40	

구 고 시

◆ 중구고시 제2024-43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변 경인가 고시

1.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6-139호(2016.5.19.)로 결정되어 중구 고시 제2023-49호(2023.9.14.)로 결정(변경)되고 중구 고시 제2023-60호(2023.10.26.)로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도로)의 사업에 대하여 변경사항이 있어,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에 따라 실시계획변경인가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24년 7월 4일

중 구 청 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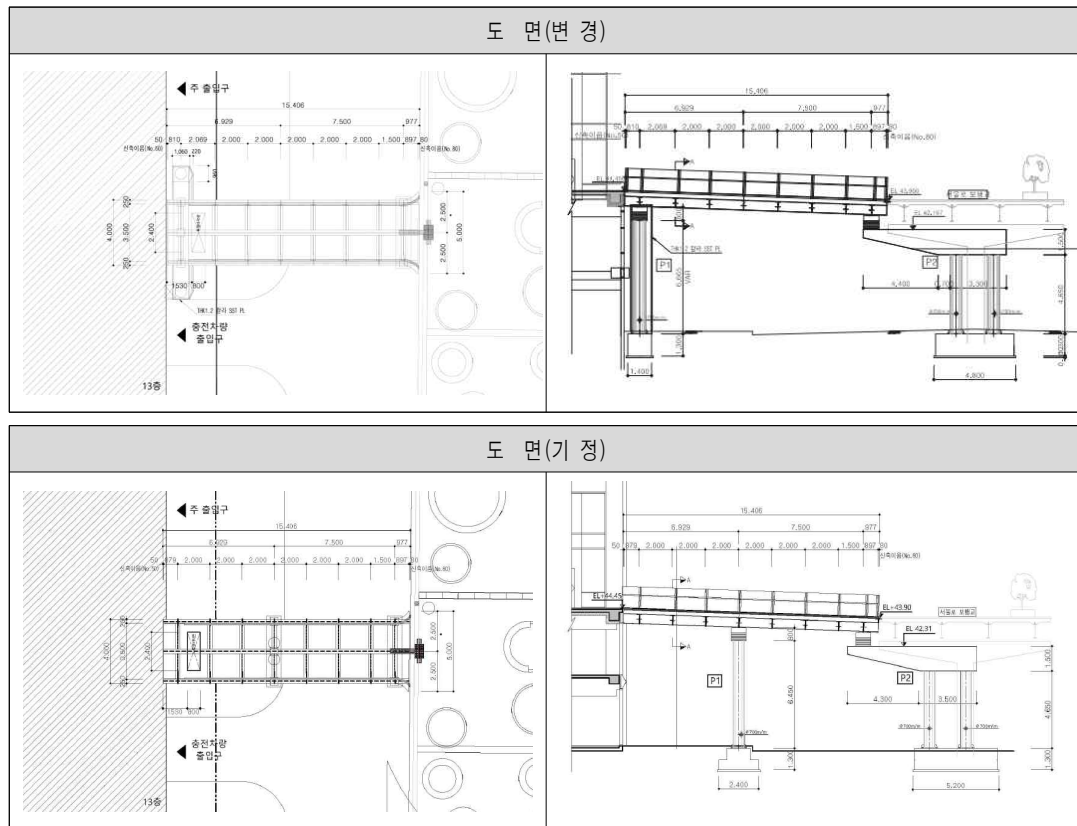
가. 사업내용

- 1) 사업시행지의 위치: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5가 84-17번지 일대(변경없음)
-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변경없음)
 - 종류: 도시계획시설(교통시설/도로) 사업
 - 명칭: 서울로7017(보행자 전용도로) 연결 보행자 전용 도로 조성
- 3) 사업시행규모 및 면적(변경없음)
 - 규모: L=15.41m, B=4~8m 보행자 전용 도로 개설
 - 면적: 61.60㎡
-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변경없음)
 - 성명: 신영부동산신탁(주) 대표이사 박순문
 - 주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8길 16, 8층(여의도동)
- 5) 사업의 착수 및 준공 예정일(변경)
 - 기정: 실시계획인가일 ~ 2024.05.31.
 - 변경: 실시계획인가일 ~ 2024.08.31.
- 6) 설계 상세 사항: 변경(관계도면 참고)
 - 변경 사유: 보행교 교각(P1) 기초부와 지하 매설물 간 간섭 및 교각(P2) 안전지대 표시선과의 간섭에 따른 위치와 규모 변경

나.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조서(변경없음)

연번	소재지	지목	이용 사항	면적(㎡)		소유자		소유권 외의 권리		
				지적	편입면적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종류 및 내용
1	남대문로5가 84-15	도	도로	15,607.4	48.41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	-
2	남대문로5가 84-17	주	대지	953.1	13.19	신영부동산신탁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8길 16,8층	-	-	-
합계		-		16,560.5	61.60	-	-	-	-	-

다. 관계도면



◆ 성북구고시 제2024-92호

도시계획시설(철도)사업 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1. 서울특별시고시 제1994-104호(1994.04.07.)로 도시계획시설(철도) 결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1998-151호(1998.05.06.), 제1999-23호(1999.02.05.), 서울특별시 성북구고시 제2019-66호(2019.04.18.)로 도시계획시설(철도) 결정(변경)된 「도시철도 6호선」 구간 중 '보문 정거장' 5번·6번 출입구 및 일부 환기구 시설과
2. 서울특별시고시 제2009-44호(2009.02.05.)로 도시계획시설(철도) 결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11-411호(2011.12.29.), 서울특별시 성북구고시 제2019-66호(2019.04.18.)로 도시계획시설(철도) 결정(변경)된 「우이~신설 도시철도」 구간 중 'L012 정거장' 비상 출입구 및 일부 환기구 시설에 대하여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및 제88조, 같은 법 시행령 제96조 및 제97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하고, 같은 법 제86조 및 제9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라 그 내용을 고시합니다.
4. 관련도서는 성북구청 주거정비과에 비치되어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02-2241-286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 7월 4일

성 북 구 청 장

가. 사업시행자: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문동1가 109번지 및 127-7번지 일대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도시계획시설(철도)사업

- 명 칭: 도시철도 6호선 및 우이~신설선 보문역 출입구(5번·6번·비상) 및 환기구 이설공사
다. 사업규모

연번	구 분	길이(m)	폭원(m)	높이(m)	면적(㎡)	비 고
1	6호선 5번 출입구	34.125	5.55	12.305	448.5	현 외부계단 변경 에스컬레이터
2	6호선 6번 출입구	18.286	4.20	11.305		-
3	6호선 환기구(#6206, 급기)	4.962	11.40	5.262	53.7	-
4	우이~신설선 환기구(급기, 배기)	3.191	9.90	7.742	26.3	-
5	우이~신설선 비상출입구	10.228	2.40	5.590	24.0	-
6	우이~신설선 본선환기구 L12S1(급기)	3.274	5.0	7.742	22.8	-
	계				575.3	

라. 사업시행자의 성명·주소

- 성 명: 보문제5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상재)
- 주 소: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문로 121, 2층(보문동2가)

마.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실시계획인가고시일로부터 2026.08.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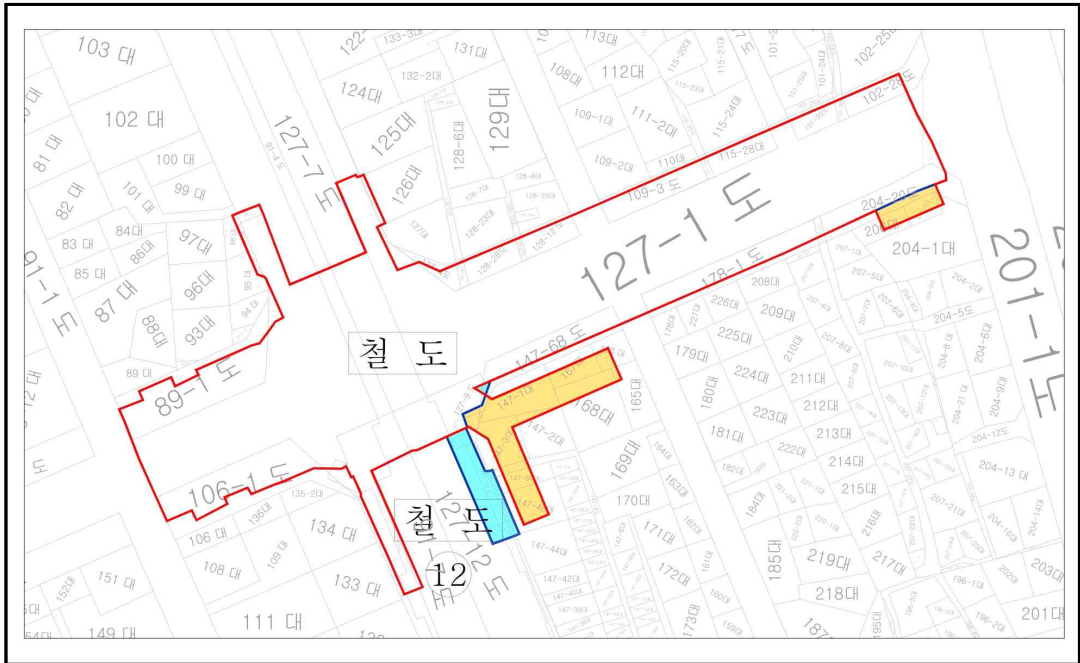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 외의 권리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붙임)

사.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준공 후 무상귀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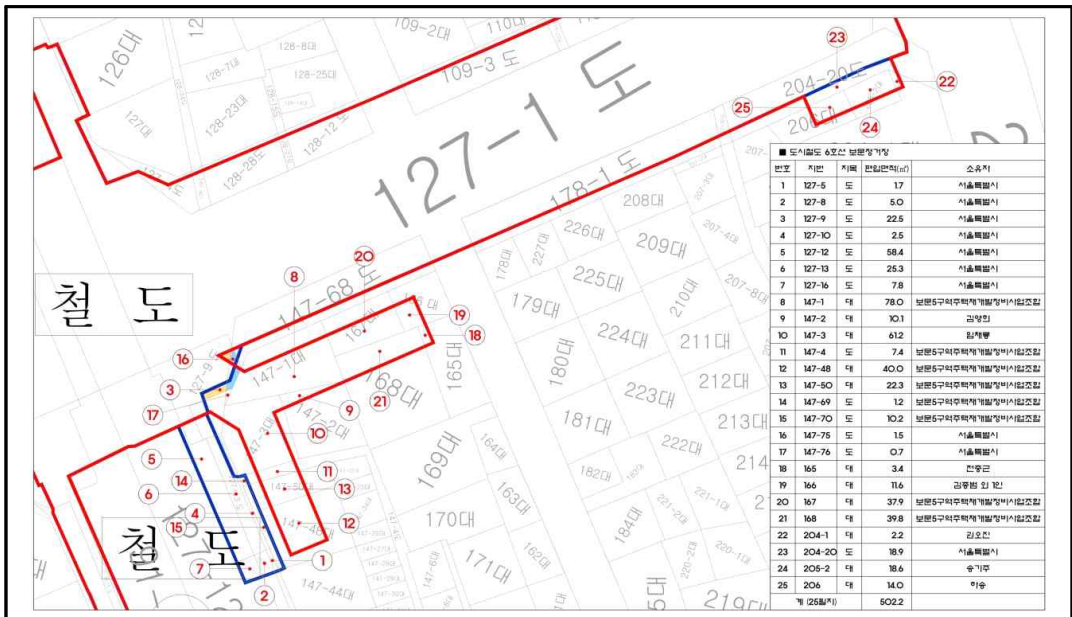
아.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성북구청 주거정비과에 비치

【붙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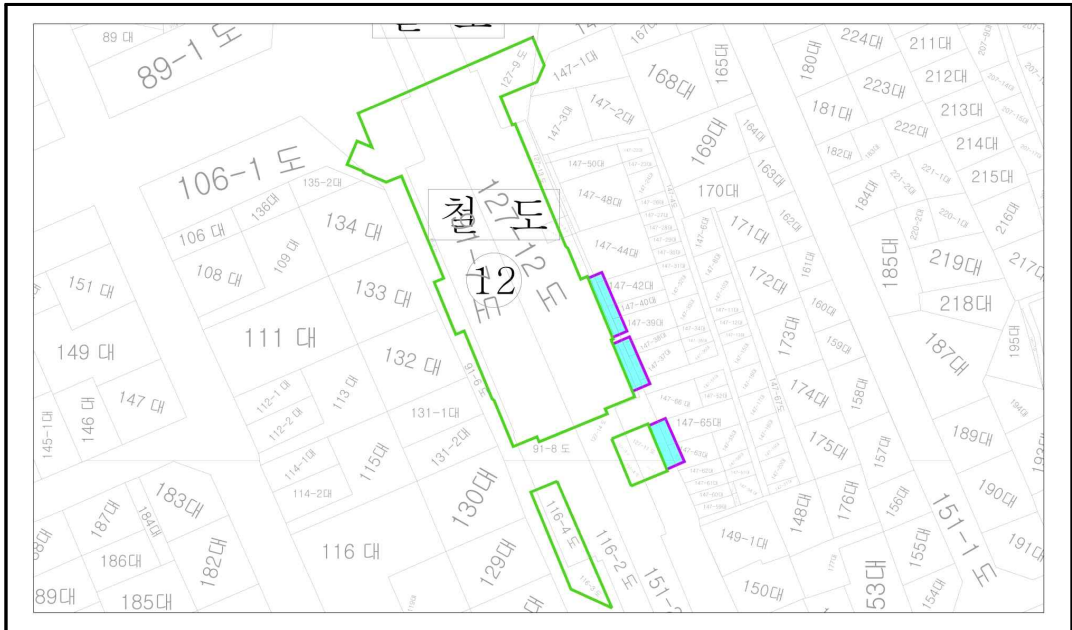
－ 지적도 (철도, 도시철도 6호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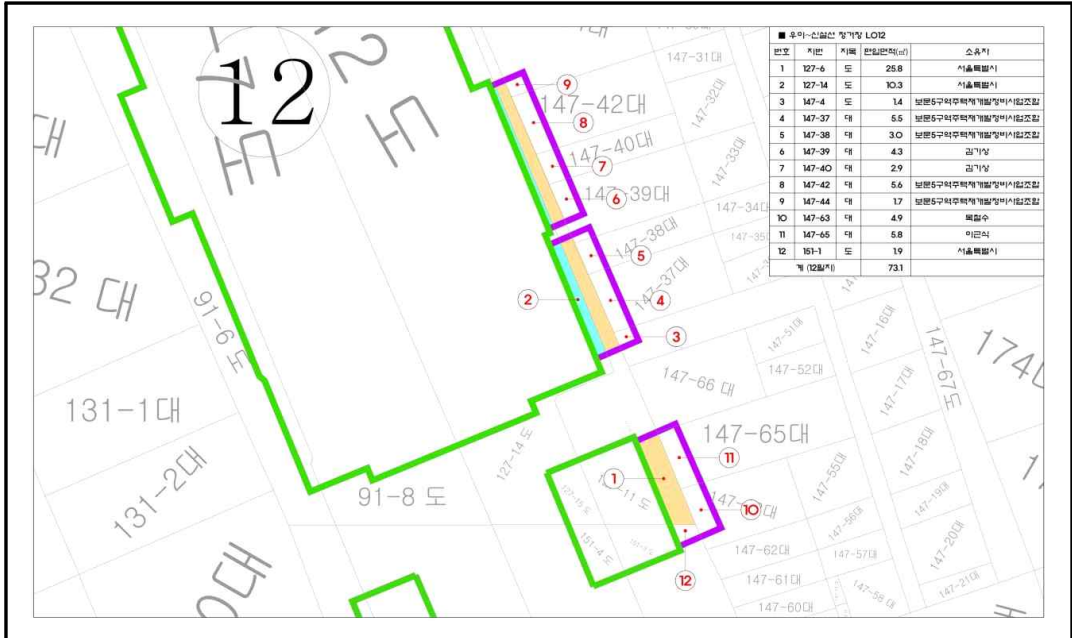
－ 수용할 토지 지적도 (철도, 도시철도 6호선)



- 지적도 (철도, 우이~신설선)



- 수용할 토지 지적도 (철도, 우이~신설선)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 건축물의 명세 및 소유권 외의 권리명세

가. 철도사업(도시철도 6호선 보문정거장)

구분	연번	권리의 소재지	토지						건축물				소유권이외의 권리			비고	
			지목	면적(㎡)		이용상황	용도지역 및 모든지구	소유자		용도 / 구조	동수 / 층수	연면적	소유자		권리의 종류		관리자
공부상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사용	계			2,002.60	502.2												
	1	보문동1가 127-5	도	1.7	1.7	도로	준주거	서울시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	-	-	-	-	-	-
	2	보문동1가 127-8	도	5.0	5.0	도로	준주거	서울시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	-	-	-	-	-	-
	3	보문동1가 127-9	도	70.0	22.5	도로	준주거	서울시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	-	-	-	-	-	-
	4	보문동1가 127-10	도	25.0	2.5	도로	준주거	서울시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	-	-	-	-	-	-
	5	보문동1가 127-12	도	604.3	58.4	도로	준주거	서울시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	-	-	-	-	-	-
	6	보문동1가 127-13	도	27.1	25.3	도로	준주거	서울시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	-	-	-	-	-	-
	7	보문동1가 127-16	도	7.8	7.8	도로	준주거	서울시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	-	-	-	-	-	-

구 분	연 번	권리의 소재지	토지						건물물				소유권이외의 권리			비고
			지목	면적(㎡)		이용상황	용도지역 또는지구	소유자		연면적	성명	주소	소유자	성명	주소	
	8	보문동1가 147-1	대	96.5	78.0	대지	준주거	성명	서울특별시 성북구 고려대로2길 8-1, 2층(보문동1가)	-	-	-	성명	-	-	-
	9	보문동1가 147-2	대	86.0	10.1	대지	준주거	김영희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문로 106-35(보문동1가)	-	-	-	-	-	-	-
	10	보문동1가 147-3	대	81.6	61.2	대지	준주거	임채룡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휘경동 118-22	-	-	-	-	-	-	-
	11	보문동1가 147-4	도	107.9	7.4	도로	준주거	성명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문로 121, 2층(보문동2가)	-	-	-	성명	-	-	-
	12	보문동1가 147-48	대	91.5	40.0	대지	준주거	성명	서울특별시 성북구 고려대로2길 8-1, 2층(보문동1가)	-	-	-	-	-	-	-
	13	보문동1가 147-50	대	41.8	22.3	대지	준주거	성명	서울특별시 성북구 고려대로2길 8-1, 2층(보문동1가)	-	-	-	-	-	-	-
사용																

구 분	연 번	권리의 소재지	토지					건축물				소유권 이외의 권리			비고
			지목	면적(㎡)	이용상황	용도지역 또는지구	소유자		연면적	성명	주소	소유자	성명	주소	
	14	보문동1가 147-69	도	1.2	도로	준주거	성명	주소	-	-	-	성명	-	-	-
	15	보문동1가 147-70	도	10.2	도로	준주거	보문제5구 영조로제 개별평비 사업조합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문로 121, 2층(보문동2가)	-	-	-	성명	-	-	-
	16	보문동1가 147-75	도	6.0	도로	준주거	성명	주소	-	-	-	성명	-	-	-
	17	보문동1가 147-76	도	0.7	도로	준주거	서울시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	-	성명	-	-	-
	18	보문동1가 165	대	70.7	대지	준주거	전충근	서울특별시 송파구 오금로 407, 8동 1007호(오금동, 쌍아아파트)	-	-	-	성명	-	-	-
	19	보문동1가 166	대	41.3	대지	준주거	김종범 외 1인	서울특별시 강동구 성안로 21, 802호(성내동, 광남캐스빌아파트)	-	-	-	성명	-	-	-

구 분	연 번	권리의 소재지	토지						건축물					소유권이외의 권리			비고	
			지목	면적(㎡)		이용상황	용도지역 또는지구	소유자		영도 / 구조	등수 / 층수	연면적	소유자		관리의 종류	권리자		
				공부상	편입			성명	주 소				성명	주 소		성명		주 소
사 용	20	보문동1가 167	대	56.7	37.9	대지	준주거	보문제5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서울특별시 성북구 고려대로2길 8-1, 2층(보문동1가)	-	-	-	-	-	-	-	-	-
	21	보문동1가 168	대	151.4	39.8	대지	준주거	보문제5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서울특별시 성북구 고려대로2길 8-1, 2층(보문동1가)	-	-	-	-	-	-	-	-	-
	22	보문동1가 204-1	대	200.1	2.2	대지	준주거	권오진	서울특별시 성북구 고려대로2길 37, 102동 1108호(보문동4가, 보문하우스토리)	-	-	-	-	-	-	-	-	-
	23	보문동1가 204-20	도	148.0	18.9	도로	준주거	서울시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	-	-	-	-	-	-	-
	24	보문동1가 205-2	대	28.1	18.6	대지	준주거	송기주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문사길 112, 102동 301호(보문동6가, 아남아파트)	-	-	-	-	-	-	-	-	-

구 분	연 번	관리의 소재지	토지						건축물					소유권이외의 권리			비고	
			지목	면적(㎡)		이용상황	용도지역 또는지구	소유자		영도 / 구조	등수 / 총수	연면적	소유자		권리의 종류	성명		주 소
				공부상	편입			성명 <td>주 소</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주 소									
	25	보문동1가 206	대	42.0	14.0	대지	준주거	허승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증길로32길 54, 지하01 호(북가좌동, 반석빌라)	-	-	-	-	-	-	-	-	-

나. 철도사업(우이~신설선 정거장 L012)

구 분	연 번	권리의 소재지	토지					건축물					소유권이외의 권리			비고			
			지목	면적(㎡)		이용상황	용도지역 또는지구	소유자		영도 / 구조	등수 / 총수	연면적	소유자		권리 종류		권리자	성명	주 소
				공부상	편입			성명 <td>주 소</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주 소										
	계			1,070.8	73.1														
사 용	1	보문동1가 127-6	도	56.2	25.8	도로	준주거	서울시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	-	-	-	-	-	-	-	-

구분	연번	권리의 소재지	토지						건축물				소유권이외의 권리			비고		
			지목	면적(㎡)		이용상황	용도지역 또는지구	소유자		용도 / 구조	층수 / 용수	연면적	소유자		권리의 종류		권리자	
				공부상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성명	주소
	2	보문동1가 127-14	도	63.5	10.3	도로	준주거	서울시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	-	-	-	-	-	-	-
	3	보문동1가 147-4	도	107.9	1.4	도로	준주거	보문제5구 연주택재 개발정비 사업조합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문로 121, 2층(보문동2가)	-	-	-	-	-	-	-	-	-
	4	보문동1가 147-37	대	45.3	5.5	대지	준주거	보문제5구 연주택재 개발정비 사업조합	서울특별시 성북구 고려대로2길 8-1, 2층(보문동1가)	-	-	-	-	-	-	-	-	-
	5	보문동1가 147-38	대	20.8	3.0	대지	준주거	보문제5구 연주택재 개발정비 사업조합	서울특별시 성북구 고려대로2길 8-1, 2층(보문동1가)	-	-	-	-	-	-	-	-	-
	6	보문동1가 147-39	대	42.0	4.3	대지	준주거	김기상	서울특별시 중구 세로로길 34, 910호(목정동, 목정아파트)	-	-	-	-	-	-	-	-	-
사용	7	보문동1가 147-40	대	19.8	2.9	대지	준주거	김기상	서울특별시 중구 세로로길 34, 910호(목정동, 목정아파트)	-	-	-	-	-	-	-	-	-

구 분	연 번	권리의 소재지	토지						건축물					소유권이외의 권리			비고	
			지목	면적(㎡)		이용상황	용도지역 또는지구	소유자		용도 / 구조	용수 / 층수	연면적	소유자		권리 이 종류	권리자		
				공부상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성명		주소
	8	보문동1가 147-42	대	45.0	5.6	대지	준주거	보문제5구 역주택재 개발정비 사업조합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문로 121, 2층(보문동2가)	-	-	-	-	-	-	-	-	-
	9	보문동1가 147-44	대	88.5	1.7	대지	준주거	보문제5구 역주택재 개발정비 사업조합	서울특별시 성북구 고려대로2길 8-1, 2층(보문동1가)	-	-	-	-	-	-	-	-	-
	10	보문동1가 147-63	대	33.0	4.9	대지	준주거	목철수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신봉동 911 신봉마을자이2차아 파트 220-1001	-	-	-	-	-	-	-	-	-
	11	보문동1가 147-65	대	56.5	5.8	대지	준주거	이근식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당로 116, 101동 903호(방학동 거성학마을아파트)	-	-	-	-	-	-	-	-	-
	12	보문동1가 151-1	도	492.3	1.9	도로	준주거	서울시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	-	-	-	-	-	-	-

◆ 강서구고시 제2024-53호

도시관리계획(가양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정정고시

건설부고시 제220호(1989.05.04.)로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1996-171호(1996.06.25.)로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된 ‘가양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서울특별시고시 제2022-96호로 결정(변경)된 고시의 내용에 측량에 의한 면적정정 사항이 있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을 결정(변경)하고, 같은 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4년 7월 4일

강 서 구 청 장

I. 결정(변경) 취지

서울특별시고시 제2022-96호(2022.03.03.)로 고시된 도시관리계획(가양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내용에서 측량에 의한 면적정정 고시를 하고자 함

II.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조서

①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 변경없음

②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1. 도시기반시설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변경

가. 공공문화체육시설

(1) 학교

■ 학교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			최초 결정일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①	학교	특수학교	가양동 1477	8,528.3	증)0.3	8,528.6	서고시 제2022-96호 (2022.3.3)	분할측량에 의한 면적정정

■ 학교 결정(변경)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시 설 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①	학교 (특수학교)	· 면적 증가 A = 8,528.3㎡ → 8,528.6㎡ (증 0.3㎡)	· 분할측량에 의한 면적정정

(2) 문화시설

■ 문화시설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시설의 종 류	위 치	면 적 (㎡)			최초 결정일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①	문화시설	도서관	가양동1477 →1476-3	6,685.4	감)0.3	6,685.1	서고시 제2022-96호 (2022.3.3)	분할측량에 의한 면적정정

■ 문화시설 결정(변경)사유서

도면표시 번 호	시 설 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①	문화시설 (도서관)	· 지번변경 가양동 1477 → 1476-3 · 면적 감소 A = 6,685.4㎡ → 6,685.1㎡ (감 0.3㎡)	· 필지분할 및 합병에 따른 지번 변경 · 분할측량에 의한 면적정정

※ 이 외 계획내용은 기존과 동일

III. 관계도면 : 붙임 참조

※ 첨부된 지형도면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또는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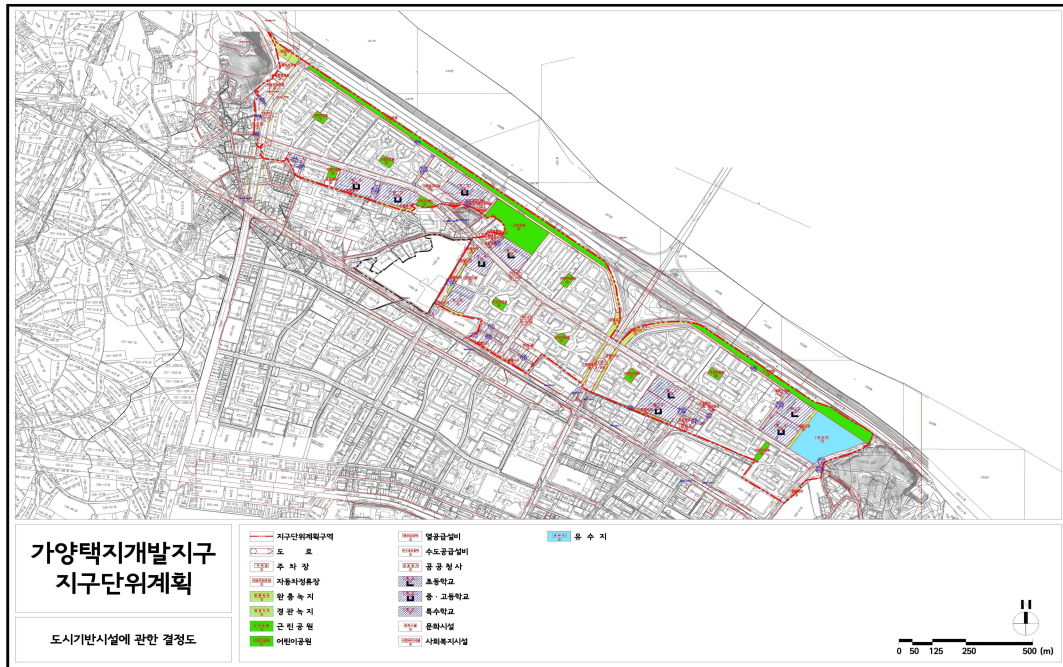
IV. 열람장소

○ 시민의 열람 편의를 위하여 강서구 도시계획과(☎02-2600-6844)에 관계도서를 비치하여 열람하고 있습니다.

※ 고시문 및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음(<https://www.eum.go.kr>) 및 서울도시계획포털(<https://urban.seoul.go.kr>)에 게시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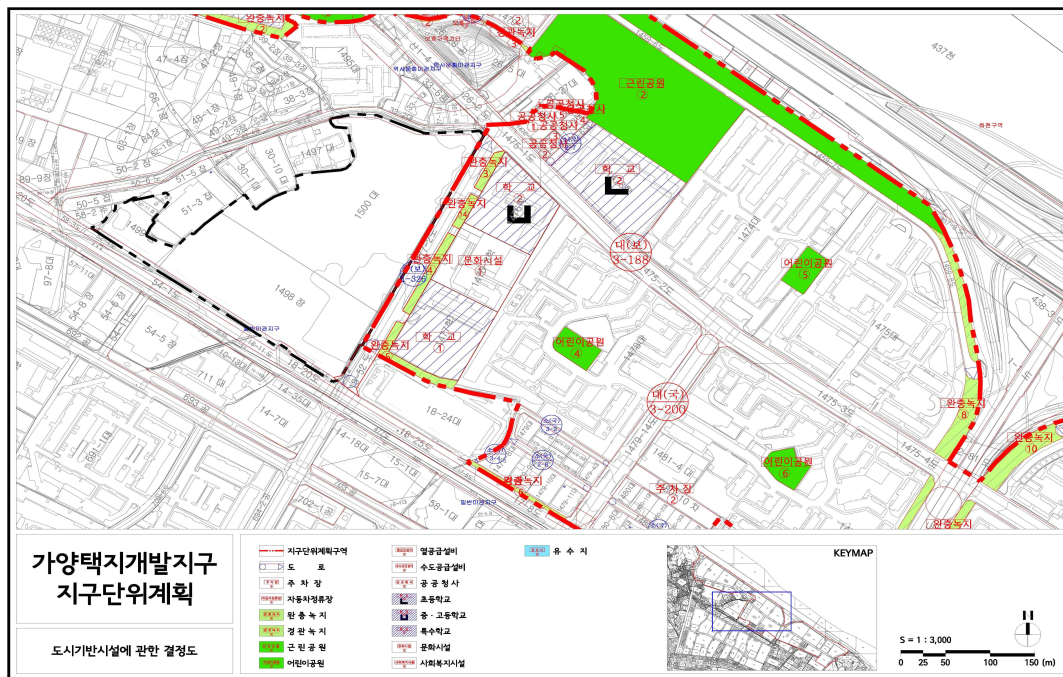
[붙임]

■ 도시기반시설에 관한 결정도



※ 분할측량에 의한 면적정정으로 도면 변경 없음.

■ 도시기반시설에 관한 결정도 - 상세도



◆ 서초구고시 제2024-134호

청계산근린공원2 조성사업(토지보상 및 조성) 실시계획(변경) 고시

1. 건설부고시 제465(1971. 8. 6.)호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도시자연공원) 결정되고, 서울시고시 제2014-156(2014. 4. 24.)호로 공원조성계획결정 및 지형도면작성 고시, 서울시고시 제2021-405(2021. 7. 29.)호로 공원조성계획(변경)결정된 서울특별시 서초구 원지동 산4-13번지 일대의 청계산근린공원에 대하여,
2.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사업을 시행하고자 서울특별시 서초구 고시 제2019-90(2019. 5. 16.)호 및 서울특별시 서초구 고시 제2022-218(2022. 12. 1.)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고시 제2023-181(2023. 12. 29.)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고시 제2024-88(2024. 5. 2.)호로 실시계획(변경) 고시한 사항을 변경하기 위하여 서초구 공고 제2024-1316(2024. 6. 13.)호로 열람공고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실시계획(변경) 고시합니다.
3. 토지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에게 개별 통지할 것이나, 미수령자에 대하여는 본 고시로 갈음하며 관계 도서는 서울특별시 서초구청 공원녹지과(02-2155-6870)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2024년 7월 4일

서 초 구 청 장

가. 사업 시행지의 위치

- 1) 변 경 전: 서울특별시 서초구 원지동 산4-13
- 2) 변 경 후: 서울특별시 서초구 원지동 산4-87
- 3) 변경사유: 도시계획선 분할 측량에 따른 토지이동(지번 분번)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1) 종 류: 도시계획시설사업(공원)
- 2) 명 칭: 청계산근린공원2 조성
- 3) 내 용
 - 가) 변 경 전: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토지보상
 - 나) 변 경 후: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토지보상 및 조성

다. 사업의 면적: 7,976㎡

라.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서초구 남부순환로 2584)

마. 시설관리청: 서울특별시청

바.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실시계획고시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사.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소재지, 지번, 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그 소유자, 권리자의 성명과 주소: 별첨 조서 참조

아. 고시방법: 서울시보 및 서초구청 홈페이지 게재

- 고시일: 2024. 7. 4.(목)

자. 기타문의: 서초구청 공원녹지과(☎2155-6870)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

○ 사 업 명: 도시계획시설[청계산근린공원2 조성(토지보상 및 조성)]사업

구분	소재지 지 번	지목	면 적(㎡)		소 유 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지적	편입 면적	주 소	성 명	지분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당초	원지동 산4-13	임	211,522	7,976	서울특별시 강남구 학동로68길29, 112동 *****호 (삼성동 힐스테이트)	이순*	7/10			
					서울특별시 강남구 학동로68길29, 112동 *****호 (삼성동 힐스테이트)	조은*	2/10			
					서울특별시 강남구 학동로68길29, 112동 *****호 (삼성동 힐스테이트)	이중*	1/10			
변경	원지동 산4-87	임	7,976	7,976	서울특별시 강남구 학동로68길29, 112동 *****호 (삼성동 힐스테이트)	이순*	7/10			
					서울특별시 강남구 학동로68길29, 112동 *****호 (삼성동 힐스테이트)	조은*	2/10			
					서울특별시 강남구 학동로68길29, 112동 *****호 (삼성동 힐스테이트)	이중*	1/10			

※ 위 토지조서는 등기부등본 상 소유자 기준이며 향후 보상 시 권리관계 및 물건(건물 등) 등을 확인하여 시행할 예정임

구 공 고

◆ 은평구공고 제2024-1276호

도시계획시설(불광근린공원)사업 실시계획인가를 위한 열람공고

1. 건설교통부 고시 제138호(1977.7.14.)로 도시계획시설(공원) 최초 결정되고, 서울특별시 은평구 고시 제16호(1997.5.6.)로 최종 결정되었으며, 서울시 고시 제2024-208호(2024. 4. 25.)로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된 불광근린공원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규정에 따라 도시계획사업(불광근린공원 조성사업) 실시계획을 작성하고 같은 법 제90조 규정에 따라 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열람공고 합니다.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원녹지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열람하오니 열람에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 기간 내에 의견서를 열람 장소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2024년 7월 4일

은 평 구 청 장

가.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1) 종 류: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 2) 명 칭: 불광근린공원 무장애숲길 조성사업

나. 사업시행지의 위치: 서울시 은평구 불광동 산58-3 일대

다. 사업의 규모 및 내용

- 1) 사업의 규모: 무장애길 B=1.8m, L=2.82km
- 2) 사업의 내용: 무장애테크길, 전망공간, 휴게쉼터 등 설치

라.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1) 시행자: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
- 2) 주 소: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로 195

마. 사업 착수일 및 준공예정일: 실시계획인가 고시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바. 위치도 및 조성계획도: 따로 붙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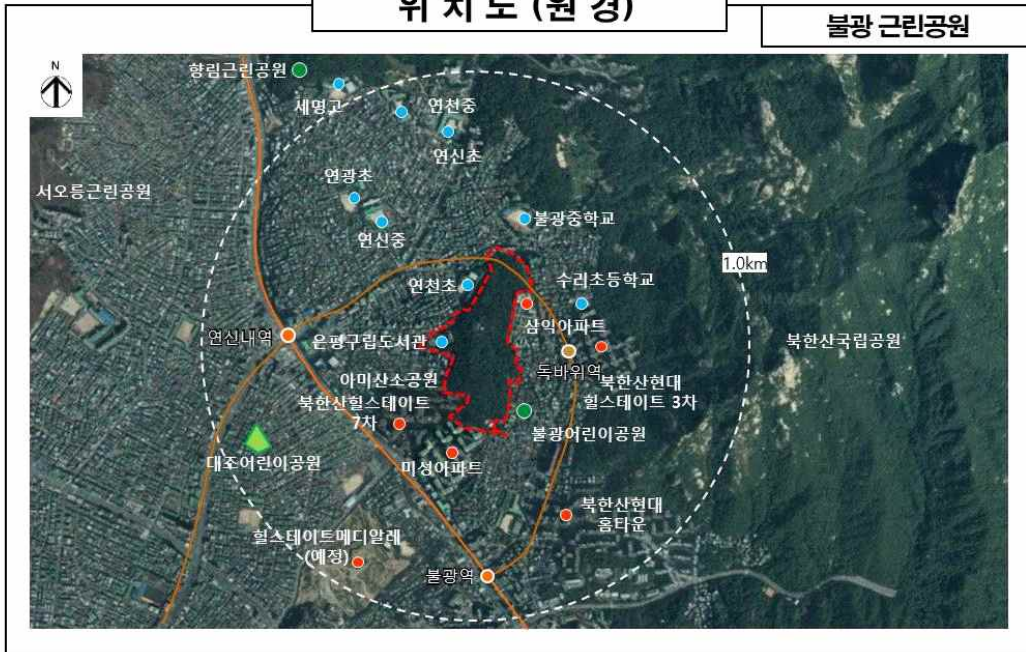
사. 도면 및 내역서: 생략(열람장소에 비치)

아. 열람일시: 공고일 다음날부터 14일간(09:00~18:00)

자. 열람장소: 서울시 은평구 공원녹지과(은평구 은평로 195 5층, ☎351-80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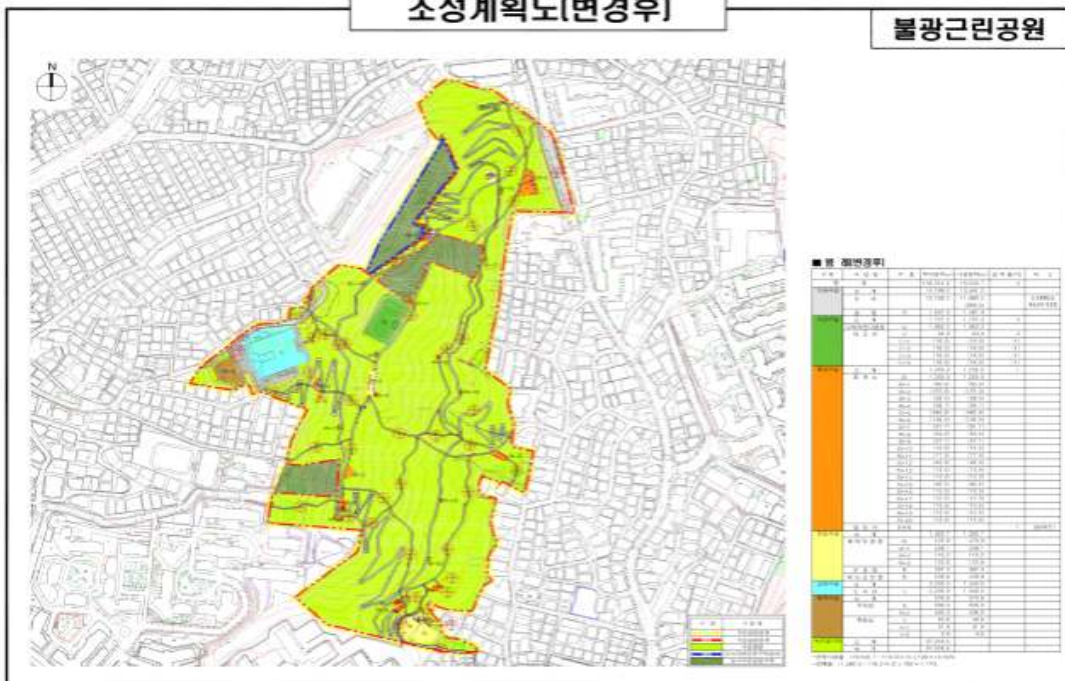
위 치 도 (원 경)

불광근린공원



조성계획도(변경후)

불광근린공원



사업소고시

◆ 미래한강본부고시 제2024-166호

하천점용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하천점용허가 하고, 하천법 제33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24년 7월 4일
서울특별시미래한강본부장

허가 받은자		점용허가(사용) 개요				허가 연월일
성 명	주 소	허가구역	점용면적	점용목적	점용기간	
서울시설공단	서울시 성동구 청계천로 540	서울시계내 한강 (아차산대교 인근)	308.09㎡ - 기선1척 부선1척	서울시계 내 아차산대교 정밀안전점검 중 선박운항	' 24. 6. 3. ~ ' 24. 6. 30.	' 24. 5. 30.

◆ 미래한강본부고시 제2024-167호

하천점용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하천점용허가 하고, 하천법 제33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24년 7월 4일
서울특별시미래한강본부장

허가 받은자		점용허가(사용) 개요				허가 연월일
성 명	주 소	허가구역	점용면적	점용목적	점용기간	
서울특별시 (교량안전과)	서울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계내 한강 (행주,가양,성산,원효,한강,동작,반포,한남대교 일원)	353.64㎡ - 기선1척 부선1척	서울시계 내 한강교량 우물통 보수공사 중 선박운항	' 24. 6. 7. ~ ' 24. 7. 31.	' 24. 6. 5.

◆ 미래한강본부고시 제2024-173호

하천점용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하천점용허가 하고, 하천법 제33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24년 7월 4일
서울특별시미래한강본부장

허가 받은자		점용허가(사용) 개요				허가 연월일
성 명	주 소	허가구역	점용면적	점용목적	점용기간	
서울특별시 (교량안전과)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110 서울시청	서울시계내 한강 (마포대교 일원)	380.46㎡ - 기선1척 부산1척	서울시계 내 마포대교 정밀안전점검 중 선박운항	' 24. 7. 1. ~ ' 24. 7. 31.	' 24. 6. 28.

◆ 미래한강본부고시 제2024-174호

하천점용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하천점용허가 하고, 하천법 제33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24년 7월 4일
서울특별시미래한강본부장

허가 받은자		점용허가(사용) 개요				허가 연월일
성 명	주 소	허가구역	점용면적	점용목적	점용기간	
그린글로벌(주)	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 3-4, ***	서울시계내 한강 (강동구 교덕동 678)	(선박4척) 802.54㎡	공사 투입을 위한 선박 정박대기장소	' 24. 6. 1. ~ ' 24. 9. 30.	' 24. 6. 7.

◆ 미래한강본부고시 제2024-175호

하천점용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하천점용허가 하고, 하천법 제33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24년 7월 4일
서울특별시미래한강본부장

허가 받은자		점용허가(사용) 개요				허가 연월일
성 명	주 소	허가구역	점용면적	점용목적	점용기간	
주식회사 한담	서울시 강서구 마곡서로 152 ***	서울시계내 한강 (강서구 개화동 168-2)	(선박3척) 406.77㎡	공사 투입을 위한 선박 정박대기장소	' 24. 7. 1. ~ ' 24. 12. 31.	' 24. 6. 25.

◆ 미래한강본부고시 제2024-176호

하천점용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하천점용허가 하고, 하천법 제33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24년 7월 4일
서울특별시미래한강본부장

허가 받은자		점용허가(사용) 개요				허가 연월일
성 명	주 소	허가구역	점용면적	점용목적	점용기간	
서울특별시 (교량안전과)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110 서울시청	서울시계내 한강 (가양대교 일원)	380.46㎡ - 기선1척 부선1척	서울시계 내 가양대교 정밀안전점검 중 선박운항	' 24. 6. 13. ~ ' 24. 6. 30.	' 24. 6. 7.

◆ 미래한강본부고시 제2024-177호

하천점용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하천점용허가 하고, 하천법 제33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24년 7월 4일
서울특별시미래한강본부장

허가 받은자		점용허가(사용) 개요				허가 연월일
성 명	주 소	허가구역	점용면적	점용목적	점용기간	
그린글로벌(주)	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 3-4, ***	서울시계내 한강 (강서구 개화동 166-1)	(선박13척) 3,715.48㎡	공사 투입을 위한 선박 정박대기장소	' 24. 7. 1. ~ ' 24. 9. 30.	' 24. 6. 27.

◆ 미래한강본부고시 제2024-178호

하천점용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하천점용허가 하고, 하천법 제33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24년 7월 4일
서울특별시미래한강본부장

허가 받은자		점용허가(사용) 개요				허가 연월일
성 명	주 소	허가구역	점용면적	점용목적	점용기간	
미래한강본부(치수과)	서울시 성동구 강변북로 257	서울시계내 한강 (행주대교 남단~ 잠실수중보)	3,695㎡ - 기선2척 부선11척	저수로 준설공사 중 선박운항	' 24. 6. 7. ~ ' 24. 6. 30.	' 24. 6. 7.

◆ 미래한강본부고시 제2024-179호

하천점용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하천점용허가 하고, 하천법 제33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24년 7월 4일
서울특별시미래한강본부장

허가 받은자		점용허가(사용) 개요				허가 연월일
성 명	주 소	허가구역	점용면적	점용목적	점용기간	
성남시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성남대로 1416번길 22	서울시계내 한강 (송파구 풍납동 386-1번지 일원)	4.65㎡ - 고무보트 1대	서울시계 내 한강취수장 오일펜스 철거 및 재설치 중 선박운항	' 24. 6. 21. ~ ' 24. 12. 13.	' 24. 6. 20.

◆ 미래한강본부고시 제2024-180호

하천점용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하천점용허가 하고, 하천법 제33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24년 7월 4일
서울특별시미래한강본부장

허가 받은자		점용허가(사용) 개요				허가 연월일
성 명	주 소	허가구역	점용면적	점용목적	점용기간	
서울특별시 (교량안전과)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10, 11층 교량안전과	서울시계내 한강 (동호대교 일원)	326.83㎡ - 기선1척 부산1척	서울시계 내 동호대교 정밀안전점검 중 선박운항	' 24. 6. 21. ~ ' 24. 7. 3.	' 24. 6. 17.

사업소공고

◆ 미래한강본부공고 제2024-171호

자연환경보전법 위반 과태료 부과 고지서 공시송달 공고

자연환경보전법 제16조의2 및 「서울특별시 자연환경보전과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제12조 규정을 위반한 행위자에게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에 따라 과태료 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 부재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2024년 7월 4일
서울특별시 미래한강본부장

1. 건 명 : 자연환경보전법 위반 행위자 과태료 부과 고지서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
2. 근 거 : 자연환경보전법 제16조의2 및 제66조, 「서울특별시 자연환경보전과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제12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13조
3. 위반내용 : 출입이 제한 또는 금지된 생태·경관보전지역 출입
4. 공시송달 대상

세목명	과세년월	통지번호	성명	주소	최초과세 금액(원)	사유
자연환경보전법 위반 과태료	2024-06	000001	이*주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커널로 2**, 4**동 9**호	1,000,000원	폐문 부재

※ 공고대상자가 납부기한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에 따라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하고,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과태료의 1.2% 증가산금이 가장 60개월간 가산됩니다. 아울러 국제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공고기간 : 2024. 7. 4. ~ 7.18. (14일간)
6. 납부기한 : 2024. 7.31.
7. 납부방법 : 고지서를 수령하여 시중은행(한국은행 제외) 납부 또는 전용계좌 납부 등
8.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미래 한강본부 환경수질과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9. 기타 자세한 내용은 서울특별시 미래한강본부(서울시 성동구 강변북로 257) 환경수질과로 문의 (☎02-3780-0792)

기 타

◆ 한강유역환경청고시 제2024-240호

하천점용(변경)허가 및 실시설계(변경) 인가 고시

하천법 제33조 등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변경)허가 등을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4년 7월 4일
한강유역환경청장

1. 하천의 명칭: 한강(국가하천)
2.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주식회사 엠디엠플러스 대표
 - 주 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06, 카이트 타워
3. 점용 위치 및 면적
 - 위 치 : 서울특별시 광진구 광장동 557
 - 면 적 : 3,698㎡
4. 점용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 광장동 한강호텔 주변 하천시설 및 환경정비공사
 - 개 요 : 홍수방어벽, 사면보호공, 환경정비 등
5. 공사기간 : (당초) 2021.12.27.~2024.6.30. (변경) 2021.12.27.~2025.8.14.

◆ 한강유역환경청고시 제2024-241호

하천점용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을 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4년 7월 4일
한강유역환경청장

1. 하천의 명칭 : 한강
2.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현대건설(주) 대표
 - 주 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75 계동 현대빌딩
3.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위 치 :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동 1331
 - 면 적 : 90㎡
4. 점용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 공사용 차량 진·출입로 개설
5. 점용기간 : 2024.6.25.~2025.3.30.



기관의 장	
선	
람	

공 람									